



2021 제주학연구센터 학술세미나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2021. 12. 17. ^금
13:30 ~ 17:30

살롬호텔 제주 대연회장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21 제주학연구센터 학술세미나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21 제주학연구센터 학술세미나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일시 | 12월 17일(금) 13:30 ~ 17:30

장소 | 샬롬호텔 제주 대연회장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일시 ▮ 12월 17일(금) 13:30 ~ 17:30

장소 ▮ 샬롬호텔 제주 대연회장

세부 일정

13:30~14:00	등록 개회식
14:00~14:10	사회 ▮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개회사 ▮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사회 ▮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4:10~15:50	발표1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홍기표(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발표2 ▮ 『承政院日記』에서 확인되는 한자 차용 표기의 解讀과 分析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표3 ▮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의 종류와 특징 이강욱((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번역자문위원 및 은대학당장) 발표4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경과와 서비스 현황 김영두(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5:50~16:10	휴식
	종합토론
	좌장 ▮ 박찬식(제주와미래 제주역사연구소장)
16:10~17:30	문숙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백종진(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양정필(제주대학교 교수) 양진석(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18:00~20:00	만찬

※ 학술세미나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목 차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5	
홍기표(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되는 한자 차용 표기의 解讀과 分析 35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문서의 종류와 특징 69	
이강욱((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번역자문위원 및 은대학당장)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경과와 서비스 현황 109	
김영두(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홍기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

홍기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차례

1. 머리말
2.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대비
3.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
4.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사료적 가치
5. 맺음말

1. 머리말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승정원에서는 왕에게 올리는 모든 문서와 왕이 신민에게 내리는 모든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 간에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 및 심의 결정과 경연 등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를 날짜별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승정원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초기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이 불타면서 200여 년간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32년간의 일기 역시 1624년(인조 2)에 있었던 ‘이괄의 난’ 때 대부분 유실되어 현재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순종 4) 8월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일기』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UNESCO)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총 3,245책에 2억 4천 250만 자가 기록된 단일기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편년체 역사 기록물이다. 888책 5천 400만 자의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도 무려 4배나 되는 분량이다. 『승정원일기』의 원본은 활자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초서(草書)로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된 것이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1961년부터 1977년까지 원본의 초서를 해서(정자체)로 고치고 구두점을 달아 영인본 144책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이 영인본의 한자를 전산 입력하기 시작해 2015년 12월 드디어 승정원일기 전 내용을 DB화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4년부터 『승정원일기』에 대한 한글 번역 작업에 들어가 2030년대 완역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인조(1623~1649), 고종(1864~1907), 순종(1907~1910) 때의 일기가 완역되어있다. 그리고 효종 즉위년(1649) 5월(13일~30일)과 영조 때의 일부 기간(즉위년 9월~13년 8월)이 번역되어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이리하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승정원일기』 한문 원문 전체에 대한 검색과 일부 왕대의 한글 번역까지 접할 수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역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다. 매년 연차별로 『승정원일기』에 실린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여 왕대별 역주서를 발간하였다. 서적 출간은 물론 그 내용을 ‘제주학아카이브’에 탑재하여 전자 문서로도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2017년에 첫 성과물로 『승정원일기』 효종대(1649~1659) 제주기사를 낸 데 이어, 2018년에 현종대(1659~1674) 제주기사, 2019년에 숙종대(1674~1720) 제주기사를 차례로 출간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는 『승정원일기』 경종대(1720~1724)와 영조대(1724~1776)의 제주기사 역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기사의 실체를 소개하고, 『승정원일기』에 실린 제주기사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를 점검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동안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의 역사적 사실들이 새로이 발굴되고 조명될 것이다. 본 작업이 향후 제주의 역사문화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조선 후기 인문 자연 전 분야에 걸친 제주상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대비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번역을 위한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

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로 제주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는 총 16,39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지막 순종을 제외한 인조에서 고종까지의 기사만 하더라도 16,351건에 달했다. 이는 동시기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 총 1,638건의 10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 사실을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표 1]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 현황

사서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승정원일기(인조~순종)	8,775	1,537	3,542	1,987	553	16,394
승정원일기(인조~고종)	8,741	1,532	3,538	1,987	553	16,351
조선왕조실록(인조~고종)	798	143	197	82	101	1,321

한편 현재 역주 완성된 효종, 현종, 숙종대의 제주기사 횟수만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효종~숙종)는 279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기사는 1,547건이다.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가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에 비해 거의 6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표 2]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효종, 현종, 숙종대 제주기사 현황

사서	효종	현종	숙종	계
조선왕조실록 제주기사	31	52	196	279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158	330	1,059	1,547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왕대별로 살펴보면 총 12명의 왕 중 5명의 왕대에서 1,000건이 넘는 기사가 확인된다. 다수 기사 순으로 살펴보면 정조(4,747), 영조(3,951), 고종(1,797), 순조(1,775), 숙종(1,132), 현종(1,052)의 순이다. 이 중 영조, 정조 때의 기사가 8,698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영정조와 순조 때를 합하면 10,473건으로 전체 기사의 2/3에 달한다. 또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8,775), 대정(3,542), 추자(1,987), 정의(1,537), 탐라(553)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특징은 ‘제주’가 절반이 넘는 다수의 기사가 수록되었으며, ‘추자도’에 대한 기사가 ‘정의현’의 기사보다 많다는 점이다. 또한 대정현의 기사가 정의현보다 두 배 이상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연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지만 유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표 3]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인조	302	20	26	2	3	353
효종	139	16	13	1	5	174
현종	213	29(1)	104	4	1	351(1)
숙종	877	116(1)	109	1	29	1,132(1)
경종	104	19	158	3	4	288
영조	2,090	432(2)	940	148	341	3,951(2)
정조	1,908	390(1)	1,691	631	127	4,747(1)
순조	1,183	125(1)	139	305	23	1,775(1)
헌종	321	171(1)	204	354	2	1,052(1)
철종	458	88	47	104	2	699
고종	1,122	118	107	434	16	1,797
순종	34	5	4			43
은대조례	5					5
은대편고	19	(1)				19(1)
계	8,775	1529(8)	3,542	1,987	553	16,386(8)

이에 비해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를 왕대별로 살펴보면 총 11명의 왕 중 4명의 왕대에서 겨우 100건이 넘는 기사가 확인된다. 다수 기사 순으로 살펴보면 영조(382), 정조(209), 고종(205), 숙종(196)의 순이다. 이 중 영조, 정조 때의 기사가 591건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며, 영정조와 고종, 숙종 때를 합하면 992건으로 전체 기사의 75%에 달한다. 또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798), 대정(197), 정의(143), 탐라(101), 추자(82)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특징은 ‘제주’가 절반이 훨씬 넘는 다수의 기사가 수록되었으며, 대정현의 기사가 정의현보다는 많은 기사를 수록하고 있어서 『승정원일기』의 수록과 대비하여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표 4] 『조선왕조실록』 왕대별 제주기사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인조	62	11	9	1	3	86
효종	18	5	4	1	3	31
현종	31	7	10	2	2	52
숙종	148	16	15	1	16	196
경종	9	7	5	1	1	23
영조	210	45	89	14	24	382
정조	89	22	33	22	43	209
순조	31	11	11	19	3	75
헌종	18	2	3	5		28
철종	25	4	4	1		34
고종	157	13	14	15	6	205
계	798	143	197	82	101	1,321

이제 역주가 완성된 효종, 현종, 숙종대의 제주기사에 대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는 총 174건으로 수집되었다. 이 중 중복 기사 27건을 제외하면 총 147건인데, 동일 날짜의 기사 중 주제가 다른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계산하면 총 158건으로 확인되었다. 제주기사가 139건으로 압도적 다수이고, 정의와 대정 기사가 각각 16, 13건으로 비슷하였다. 한편 동일시기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는 총 31건에 불과하다. 『승정원일기』의 기사가 『조선왕조실록』보다 약 6배나 많았다. 그만큼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가 다양한 제주 관련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효종대 제주기사를 두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표 5] 효종대 제주기사 비교(조선왕조실록 vs 승정원일기)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계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효종 즉위년(1649)		17		2								19
효종 1년(1650)		6			1	1					1	7
효종 2년(1651)	5	24	2	6		1			1	2	8	33
효종 3년(1652)	4	8	2	2	2	1			2	2	10	13
효종 4년(1653)	3	12			1	2					4	14
효종 5년(1654)	1	6	1	3		1					2	10
효종 6년(1655)	2	14				3	1	1			3	18
효종 7년(1656)		14		2								16
효종 8년(1657)	2	15				3				1	2	19
효종 9년(1658)		18				1						19
효종 10년(1659)	1	5		1							1	6
계	18	139	5	16	4	13	1	1	3	5	31	174

다음으로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는 총 331건이 확인되었다.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211), 대정(93), 정의(25), 추자(1), 탐라(1)의 순이었다. 탐라 기사 1건은 제주 기사와 중복된 사실이었다. ‘제주’ 기사가 거의 2/3에 해당하여 상당수를 차지했고, ‘대정’ 기사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대정현감의 임명과 정에서 왕과 대간 사이의 대립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는 『조선왕조실록』 현종대 제주기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현종대 제주기사를 검색한 결과 『승정원일기』는 331건인데 비해 『현종실록』은 38건, 『현종개수실록』은 45건에 불과했다.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면 『조선왕조실록』의 현종대 제주기사는 51건이다. 『승정원일기』의 기사가 『조선왕조

실록』보다 거의 7배나 되어서 다양한 제주 역사를 제공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현종대 제주기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현종대 제주기사 비교(조선왕조실록 vs 승정원일기)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계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현종 즉위년(1659)		6										6
현종 1년(1660)	2	10				3					2	13
현종 2년(1661)		5		3								8
현종 3년(1662)	1	14		2		1		1			1	18
현종 4년(1663)		3					1		1		2	3
현종 5년(1664)	6	16	1	1	1						8	17
현종 6년(1665)	3	17		6		2					3	25
현종 7년(1666)		14										14
현종 8년(1667)	1	17	1		5	78			1		8	95
현종 9년(1668)	1	11		4							1	15
현종 10년(1669)	1	14	1	3		1					2	18
현종 11년(1670)	2	27	1			3					3	30
현종 12년(1671)	7	13	1		1	2					9	15
현종 13년(1672)	6	27	1	5	1						8	32
현종 14년(1673)	1	15							1		1	16
현종 15년(1674)	1	2	1	1	1	3					3	6
계	32	211	7	25	9	93	1	1	2	1	51	331

마지막으로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이전 효종, 현종대 기사보다 최소 3배에서 10배에 해당하였다. 그 이유는 숙종의 재위 기간이 이전 왕대보다 훨씬 장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이 확인되었다.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876), 대정(109), 정의(115), 탐라(28)의 순이었다. 단일 기사에 두 개 이상 주제어가 들어간 중복된 경우는 총 69건이었다. 추자 기사는 1건 검색되었으나 지명이 아닌 식물 열매를 지칭한 내용이어서 제외하였다. ‘제주’ 기사가 거의 4/5에 해당하여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대정’과 ‘정의’ 기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조선왕조실록』 숙종대 제주기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숙종대 제주 기사를 검색한 결과 『승정원일기』는 1,059건인데 비해 『숙종실록』은 163건, 『숙종보궐정오』는 5건에 불과했다. 예컨대 ‘제주’ 기사는 876건vs145건, ‘정의’ 기사는 115

건vs16건, ‘대정’ 기사는 109건vs15건이었다. 『승정원일기』의 제주 관련 기사 분량이 『조선왕조실록』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승정원일기』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보다 제주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숙종대 제주기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숙종대 제주기사 비교1(조선왕조실록 vs 승정원일기)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계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1674년(숙종 즉위)		3		1								4
1675년(숙종 1)	9	41	1	2					(1)		10(1)	43
1676년(숙종 2)	3	27		5(1)		4(6)			(1)	(1)	3(1)	36(8)
1677년(숙종 3)	4	13				3(1)					4	16(1)
1678년(숙종 4)		14		3								17
1679년(숙종 5)	4	33	1(1)	3(2)		4					5(1)	40(2)
1680년(숙종 6)	5	32				6					5	38
1681년(숙종 7)	3	28	(1)	2	(1)	1(2)					3(2)	31(2)
1682년(숙종 8)	6	26	(1)	1	(1)						6(2)	27
1683년(숙종 9)	9	10	(1)		(1)						9(2)	10
1684년(숙종 10)	1	27		2		2(2)					1	30(2)
1685년(숙종 11)	2	20									2	22
1686년(숙종 12)	2	18		3		1(2)					2	23(2)
1687년(숙종 13)	1	22									1	23
1688년(숙종 14)		21							1		1	21
1689년(숙종 15)	4	44		5(2)		2(1)	(1)		(1)		4(2)	53(3)
1690년(숙종 16)	1	16								(1)	1	16(1)
1691년(숙종 17)	2	18				3					2	20
1692년(숙종 18)		8		2(1)	1	(1)					1	10(2)
1693년(숙종 19)	4	15	1	30(2)						(1)	5	50(3)
1694년(숙종 20)	5	31	(1)	1	1(1)	3(1)				(1)	6(2)	35(2)
1695년(숙종 21)	3										3	
1696년(숙종 22)	1	23	1	4							2	27
1697년(숙종 23)		13		3	1	12(1)					1	28(1)
1698년(숙종 24)		3				2						5
1699년(숙종 25)	1	6		4							1	10

[표 7] 속종대 제주기사 비교2(조선왕조실록 vs 승정원일기) ※ () 안의 숫자는 중복 건수임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합 계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실록	일기
1700년(숙종 26)	2	12		1	1	2					3	15
1701년(숙종 27)	9	18		(3)		1(3)					9	19(6)
1702년(숙종 28)	2	10		5	2	4					4	19
1703년(숙종 29)	8	26	1(1)	1(5)	(2)	4(6)			(1)	(2)	9(4)	31(13)
1704년(숙종 30)	1	36		2		3			2	1	3	42
1705년(숙종 31)	3	19	(1)	1	(1)	2(1)			(1)	1	3(3)	23(1)
1706년(숙종 32)	6	14		2							6	16
1707년(숙종 33)	2	20				2(1)					2	22(1)
1708년(숙종 34)	2	13							(1)		2	13(1)
1709년(숙종 35)	1	18		1(2)					1		1	20(2)
1710년(숙종 36)	2	11				1			1	(1)	3	12(1)
1711년(숙종 37)	1	13		3(1)		1(2)					1	17(3)
1712년(숙종 38)	2	14				(2)			1		2	15(2)
1713년(숙종 39)	6	28	(1)	3(1)	(1)	3(1)			(1)		6(2)	34(3)
1714년(숙종 40)	1	15				2(1)					1	17(1)
1715년(숙종 41)	1	23		(1)					4		1	27(1)
1716년(숙종 42)	13	30	(2)	1(1)	(1)	2(1)			1(2)	3(1)	14(5)	36(3)
1717년(숙종 43)	5	11							(1)		5(1)	11
1718년(숙종 44)	1	2		1		1			1	7	2	11
1719년(숙종 45)	6	25	(1)			2(1)					6(1)	27(1)
1720년(숙종 46)		6		(1)								6(1)
부록;묘지문									1		1	
부록;행장	1								(1)		1(1)	
합 계	145	876	5(11)	92(23)	6(9)	73(36)	(1)		7(9)	18(10)	163(30)	1,059(69)

이상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제주기사의 통계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제주기사의 수집 범위를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

라(耽羅)’의 5개 주제어로 한정하였다. 물론 위의 주제어가 들어가지 아니한 제주기사의 경우도 차후 상당수 발굴되리라 본다. 이 점은 본고가 갖는 한계성이기도 하다. 다만 완역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현 한국고전번역원의 『승정원일기』 번역작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제한적이거나 확실한 제주기사의 발췌를 통해 이를 역주하여 세상에 내놓는 작업이 제주사 연구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는 총 16,351건으로, 동시기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 총 1,638건의 10배에 해당한다. 다수의 제주기사가 수록된 왕대별 비교 역시 거의 10배에 해당하고 있다. 예컨대 정조(4,747 vs 209), 영조(3,951 vs 382), 고종(1,797 vs 205), 순조(1,775 vs 75), 숙종(1,132 vs 196) 때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 역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8,775 vs 798), 대정(3,542 vs 197), 정의(1,537 vs 143), 추자(1,987 vs 82), 탐라(553 vs 101)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결국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비해 압도적으로 다수이고, 그만큼 다양한 제주 관련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역주 작업의 진행이야말로 향후 제주사 연구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

3.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은 역주가 완성된 효종, 현종, 숙종대에 한해서 살펴본다. 이들 기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네 주제로 대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다시 여러 소주제로 나누어 도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각 왕대별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의 특징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는 총 15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치, 경제, 사회의 세 분야로 나누어보면 각각 80건, 58건, 20건의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세 분야는 다시 9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세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는 인사(36), 사법(20), 유배(5), 행정(19)의 4주제로 나누었고, 경제는 마정(50), 공물(8)의 2주제로 나누었다. 사회는 자연재해/구휼(2), 표류(5), 기타(13)의 3주제로 나누었다. 이상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의 횡수와 주제별 분류를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8]이다.

『승정원일기』의 효종대 제주 기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제주목사를 비롯한 삼읍 수령과 관련된 기사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제주목사, 정의현감, 대정현감 등의 관직제수나 수령 교체 및 추고 청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제주 삼읍 수령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고 청원은 주로 제주목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대부분은 종묘 등에 천신한 감굴류의 부패, 세공마 지연 운송, 진상마 부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추고란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히는 사안을 말한다. 둘째 마정에 대한 기록도 50건이나 소개되어 전체의 1/3에 달하고 있다. 매년 세공마 및 진상마 등에 대해 마필 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마의 관리 및 이송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한 건의 관련 기사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주 마정에 대한 연구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보다 깊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셋째 감굴, 추복 등의 제주 특산물에 대한 진상 기사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데 『승정원일기』에는 다수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표 8]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 주제별 분류

구분	주제	간략 내용	기사 횟수
정치	인사	관직제수(사은/하직 포함), 교체 청원 등	36
	사법	제주목사 등 추고, 치죄 등	20
	유배	제주/정의/대정 유배인, 이배	5
	행정	전 제주목사 동향, 안핵어사 장계 등	19
	소계		80
경제	마정	세공마, 진상마, 공마 운송/관리/분급	50
	공물	감굴, 추복 등	8
	소계		58
사회	자연재해/구휼	풍재, 수재 및 흉년	2
	표류	한인, 서양인	5
	기타	노비, 호적 등	13
	소계		20
총계			158

2)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의 특징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는 총 33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로 나누어보면 각각 224건, 56건, 31건, 19건의 사실이 확인된

다. 이들 네 분야는 다시 18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세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는 인사(171), 추고(19), 형사(8), 유배(7), 기타(19)의 5주제로 나누었고, 경제는 세공마(22), 체임진상마(9), 산마감목관(5), 진상1(5), 진상2(12), 기타(3)의 6주제로 나누었다. 사회는 진휼(9), 재해(5), 재난 극복(4), 표류인(5), 기타(8)의 5주제로, 문화는 제주시재(15), 기술(2), 기타(2)의 3주제로 나누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는 총 330건 중 정치 분야가 224건으로 2/3에 해당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사 분야 기사가 171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제주목민관 제수 관련 기사 71건과 교체 청원 및 서경 등과 관련한 기사가 100회에 해당한다. 제주목민관 제수 대상은 제주목사(18), 제주판관(19), 대정현감(15), 정의현감(13), 제주교수(3), 제주십약(2), 제주시재어사(1) 등이었다. 이들의 제수 기사는 그들의 사은, 하직, 가자 등과 관련한 기사까지 포함한 것이다. 예컨대 제주목사에 제수되면 이후 사은과 하직의 과정을 거쳐 임지인 제주로 출발하였는데, 동일인의 사은 또는 하직 기사가 수록된 경우가 많아서 그들이 서울을 떠난 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사 관련 기사 중 관직 제수(71건)보다는 오히려 교체 청원 및 서경 등과 관련한 기사가 100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667년(현종 8) 3월 16일부터 동년 7월 22일까지 5개월간(윤4월 포함) 대정현감에 제수된 안숙(安塾)에 대한 교체 청원 기사가 7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현종)과 양사(사헌부, 사간원) 관원간의 지루하면서도 치열한 대립 과정이 여실히 기사화됐기 때문이다. 현종에게 직언을 하여 미움을 받은 사간원 관리(정언) 안숙은 1667년 3월 14일 대정현감으로 좌천성 인사이동을 명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종은 관리 임명의 필수 과정인 서경(署經)도 생략하고 곧바로 부임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의 전 관리들은 돌아가며 거의 매일 같이 철회하라는 계문을 올렸다. 결국 이 논란은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현종이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종료되었다. 조선시대 언론을 관장하던 언관의 세력에 왕도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경제 분야 기사는 효종대의 제주기사와 비슷하게 세공마와 진상에 대한 사실이 대부분이다. 즉 중앙정부로 올려보내는 마정 관련 36건과 진상품 관련 17건의 기사가 그것이다. 마정 관련 기사에서는 제주목민관을 지내고 이임할 때는 반드시 체임진상마를 사복시로 올려보내는데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3필,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2필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만일의 후손으로 제주 산마장 감목관이 대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감목관이 교체될 때마다 역시 진상마 2필을 보냈던 사실도 확인된다. 이외에 세공마의 종류별 마필수, 운송로, 제주마 분급 규정, 제주마의 한성 주변 방목지 운용 등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상 기사에는 당시 제주 특산물의 다

양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알려진 감귤류(감자, 동정귤, 유감 등)와 표고, 추복, 감곽(미역) 외에도 결궁장피, 직모마장, 궁대(통개), 이년목, 왜저, 무회목, 무환자, 백랍, 치자, 오징어, 흑우 등의 진상품이 방물로 올려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진상 물품과 관련해서는 『탐라지』 등 제주 관련 지지서 등에 소개되어 있지만, 특정 시기(17세기 중후반) 제주 특산물의 종류와 비교 연구할 때, 그 수량의 정도 등을 연구할 때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1672년(현종 13) 윤7월 14일 기사에서 제주목사 윤계(尹堦)의 계문 가운데 정의현에 왜저(倭猪) 6백 근이 있다고 했는데 다만 거짓 장부만 있을 뿐이고 지금은 토산품이 없으니 필시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 탕감해 줘야 한다는 김수흥(金壽興)의 건의에 현종이 승낙한 내용이다. 산닥나무인 왜저는 한지 재료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창원도호부, 거제현, 고성현과 황해도의 풍천도호부에서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의 진상품 물목으로는 처음 확인되는데,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진상품에 올려 있다가 생산이 끊겨 더 이상 진상품으로 올릴 수 없게 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 분야 기사에서는 제주에서도 납속과 면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1672년(현종 13) 11월 18일에는 진흙미를 납속하여 면천의 혜택을 받는 기사가 있다. 당시 40석을 납속해야 면천이 가능한 사목이 있었음에도 20석을 내어 면천의 허락을 받으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673년(현종 14) 8월 14일 시비(寺婢) 승생(承生)은 납속으로 본인 면천 대신 시부모 증직을 청원하여 허락받는 사례가 등장한다. 다만 이때는 10석5두령의 액수로 면천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어서 당시 면천 지원자의 소속 및 성격에 따라 납속 액수가 달랐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 기사는 제주시재 관련 사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제주 유생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제주어사는 시재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에서 미리 홍문관 대제학에게 시제(試題)를 받고 내려갔으며, 시재 실시 후 그 결과(시권)를 다시 서울에 올려보내 역시 대제학의 성적 판정(과차)을 기다렸다. 그 후 급제자가 복시를 뛰어넘어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전시를 치르는 절차(전시직부)가 진행되며, 이들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규정 역시 소개되어 있다. 전시직부의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정기적 과거 시험인 식년시에만 적용되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다만 제주에서 올라온 시재급제자(제주거자濟州舉子)는 절해고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별시 및 증광시와 같은 비정기적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주의 ‘활’ 제작기술과 재질이 우수했으며, 제주향교의 위판이 오기되어 이를 바로잡는 조처도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 9]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 주제별 분류

구분	주제	간략 내용	기사 횟수
정치	인사	관직 제수(사은/하직 포함), 교체 청원 등	171
	추고	제주목사, 대정현감	19
	형사	일반 추안/추핵 처리	8
	유배	유배(정배) 및 유배인 이배	7
	기타	전 제주목사(판관) 실정 및 제주목사 장계 등	19
	소계		224
경제	세공마	마필수, 운송로, 분급, 방목지 선정 등	22
	체임진상마	제주목사/제주판관(3필), 정의현감/대정현감(2필)	9
	산마감목관	진상마(2필), 임명	5
	진상1	감귤류(감자, 동정귤, 유감 등)	5
	진상2	결궁장피, 직모마장, 궁대(통개), 이년목, 표고, 추복, 감곽, 왜저, 무회목, 무환자, 백랍, 치자, 오징어, 흑우	12
	기타	진상 감면/봉진관 추고/추자도 수세 성균관 귀속 청원	3
	소계		56
사회	진흙	진흙미 이송 및 충당, 진흙 책임자	9
	재해	천동/한재/전염병/지진해일	5
	재난 극복	제주선유어사 파견, 응행절목	4
	표류(인)	네덜란드인, 제주군관 일본 표류	5
	기타	노비신공 감면 및 면천 등	8
	소계		31
문화	제주시재	시권과차, 전시직부	15
	기술	‘활’ 제작	2
	기타	한라산 강향치제, 제주향교 위판 오기	2
	소계		19
총계			330

3)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의 특징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로 나누면 각각 693건, 190건, 127건, 49건의 사실이 확인된

다. 이들 네 분야는 다시 17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세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는 인사(356), 사법(167), 유배(131), 역모(16), 행정(14), 군사(9)의 6주제로 나누었고, 경제는 마정(116), 공물(65), 조세감면(9)의 3주제로 나누었다. 사회는 진휼(52), 표류(37), 흉전(14), 재난(11), 기타(13)의 5주제로, 문화는 과거(39), 의례(8), 기타(2)의 3주제로 나누었다. 이상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승정원일기』 속종대 제주기사의 주제별 분류

구분	주제	간략 내용	기사 횟수
정치	인사	의망, 임명, 교체, 포폄, 피험, 어사, 제주인 임명 등	356
	사법	제주목사 등 추고, 치죄, 조사 등	167
	유배	제주/정의/대정 유배인, 이배, 유배인 제주 민폐	131
	역모	과거 역모(길운절) 사례 인용, 제주유배인(장희재) 역모	16
	행정	제주인 상소, 역관 제주 배치 등	14
	군사	제주인 무과급제자 근무처, 조방장 임명 규정 등	9
	소계		693
경제	마정	세공마, 산마, 체임진상마, 점마, 공마 운송/관리/분급	116
	공물	가시목, 감굴, 궁대, 흑우, 전복 등	65
	조세감면	환곡 탕감, 노비 신공 감면 등	9
	소계		190
사회	진휼	제주 진휼곡 논의 및 운송	52
	표류	제주 표류 한인 송환, 안남 표류 제주인 송환	37
	흉전	선박 침몰 익사자 추모	14
	재난	역병, 폭풍우, 해일, 화재	11
	기타	추쇄, 기로, 노비, 격쟁 등	13
	소계		127
문화	과거	어사시제, 직부전시 등	39
	의례	한라산신제, 풍운뇌우제 논의 및 시행	8
	기타	굴림서원 사액 등	2
	소계		49
총계			1,059

『승정원일기』 속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 중 정치 분야가 693건으로 2/3에 해당한다. 제주 목민관들의 인사, 추고 및 치죄 청원, 유배 관련 기사가 대종을 이룬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사 분야 기사가 356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그 대다수(231건)는 제주목민관의 제수, 사은, 하직 기사이다. 제주목사(67건), 제주판관(46건), 대정현감(45건), 정의현감(40건), 제주교수(29건), 제주점마별감 및 산마감목관(4건)에 대한 순수한 임명 관련 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듯 순수 임명 관련 기사가 다수 수록된 배경에는 제주목민관 동일인의 ‘제수(선임)’와 ‘사은(선임 후 임금 면담 및 감사 인사)’ 및 ‘하직(임지 부임 인사)’ 기사가 이어져 수록됐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목사의 경우 최소한 ‘제수’ 기사만 40명에 이르는데, 실제 속종대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은 28명이다. 12명은 제수 이후 질병 또는 노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사직 상소를 제출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제주 목민관들의 의망(擬望) 및 서경(暑經) 등과 관련된 기사 20건, 가자·고과·표창 등 포폄 관련 기사 13건도 확인된다. 특히 제주목사의 의망과 관련한 기사가 10건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제주목사의 직급은 정3품이지만 여타 지역의 목사와 달리 제주목사만큼은 당상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목사 임명시 당상관으로 한정하면 그 대상 인물이 너무도 협소하거나 적절한 선임이 불가하여 당하관으로 추천 대상을 확대하여 의망을 올리고 그에 대한 임금의 재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임된 당하관의 제주목사는 곧바로 ‘가자(加資)’의 절차를 거쳐 당상관으로 임명하는 과정도 병행되었다.

사법 관련 기사는 167건이나 되어 인사 관련 기사 다음으로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제주 목민관들의 실정에 대한 추고 및 치죄(파직) 청원이 주류를 이룬다. 속종대 제주목사는 김흥운(金興運)부터 정동후(鄭東後)까지 28명이 재임했는데, 그 중 23명이나 추고를 당했다. 물론 대부분 정상참작에 의거 추고에만 그쳤는데, 심한 경우 파직 청원이 잇따르고 치죄까지 이른 사례도 확인된다. 예컨대 제주목사 소두산(蘇斗山), 윤창형(尹昌亨), 윤정화(尹鼎和), 이희태(李喜泰), 변시태(邊時泰)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1704년(숙종 30)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제주목사 이희태에 대한 추고 및 치죄 청원이다. 무려 23회에 걸쳐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호남 연안 포민(浦民)들의 제주 연해 투채(偷採) 행위에 대해 대응 미숙과 장계 과장 보고 때문이었다. 이미 이전 이형상(李衡祥) 목사 때도 관련 사례가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다.’라는 전투 장면을 연상하는 해적의 사례로 과장 보고를 했다. 변방 방비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십 차례의 치죄 청원이 잇따랐다.

유배 관련 기사도 131건이나 확인할 수 있어 속종대 치열했던 봉당정치의 난맥

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중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의 유배인 정배 사실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대정현 유배인으로는 유혁연(柳赫然), 민암(閔黯), 장희재(張希載), 오시복(吳始復), 송상주(宋尙周)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의현 유배인은 이입신(李立身), 이시중(李時中), 김선필(金善弼), 이의징(李義徵), 유항(柳沆), 한도장(韓道章) 등이 있다. 제주(목) 유배인으로는 이혼(李焄, 임창군), 이엽(李焄, 임성군)의 왕족과 송시열(宋時烈), 이현명(李顯命), 이성휘(李聖輝), 김춘택(金春澤) 등의 인물이 확인된다.

이들 중 특이 사항으로는 1676년(숙종 2) 제주에 유배된 왕족 이혼과 이엽이다. 이들은 소현세자의 손자들로 그 부친인 이석견(李石堅, 경안군) 역시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숙종의 후대(厚待) 명령이 내려지고, 이배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국 1682년(숙종 8)에는 해남현으로 이배 되었다. 1689년(숙종 15)에는 제주에 위리안치된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이 제주 산지천변에 유배되었는데, 그에 대해 다시 국문을 요청하는 청원이 계속되었고 결국 유배된 지 불과 백여 일 만에 다시 송환되었다. 송시열은 상경 송환 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운명하기에 이른다. 1701년(숙종 27)에는 대정현에 유배 중이던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에 대한 처형 명령이 내려져 그는 제주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유배인의 이배, 유배인들이 제주민에게 끼친 민폐 등의 사실도 확인된다. 1690년(숙종 16) 초에는 그 전해부터 이어진 흉년으로 인해 제주 유배인에 대한 육지 이배가 논의되어 결국 의금부 및 형조 소관 죄인 32명이 육지로 이배 되었다. 또한 1679년(숙종 5)에는 제주에 유배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민간에 끼치는 폐해를 방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안핵어사(이증)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는 일반 행정, 역모, 군사 부문에 대한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행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인의 상소와 제주에 역관을 배치한 사실이다. 1677년(숙종 3)에는 임금의 경연 석상에서 제주 출신 봉상시주부(정6품) 김계룡이 당시 윤창형 목사가 추진 중인 모슬진성, 화북진성의 축성 중지를 요청하는 건의를 하였다. 1680년(숙종 6)에는 제주에 역관으로 한학 및 왜학 각 1명씩 배치하였으며, 1687년(숙종 13)에는 제주 유학(幼學) 양응도가 진흙 요청 및 산마공마 경감 등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역모 관련 기사 중 특이 사항은 1701년(숙종 27) 제주 유배인 장희재(장희빈 오빠)의 서찰 관련 심문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군사 관련 기사로는 1705년(숙종 31) 제주 조방장(助防將) 임명 규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눈에 띈다.

경제 분야 기사는 세공마 및 체임진상마 운송 등 마정 관련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세공마 마필수, 운송로, 제주마 분급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에서 확인된 바로, 세공마는 통상 한 해에 3회(초운, 재운, 삼운)

약 500필 전후의 말이 사복시로 보내졌다. 하지만 600필을 상회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1686년(숙종 12) 668필, 1691년(숙종 17) 628필 등의 기사가 그것이다. 또한 세공마를 싣고 가는 재마선(載馬船)은 제주의 배뿐만 아니라 호남 여러 지역(흥양, 강진, 여산, 무안, 광양 등)의 배들도 동원되었음이 확인된다. 제주 목민관을 지내고 이임할 때 사복시로 올려보냈던 체임진상마는 현종대에 이어 숙종대에도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3필,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2필 상납했다.

공물 부문에서는 여러 감귤류의 진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유감, 당유자, 동정귤 등 다양한 감귤류의 진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종묘 천신용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운송 과정상 부주의로 인해 부패한 채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봉진관인 제주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추궁도 이어졌다. 그 밖에 제향용 제주 흑우(黑牛)의 진상과 관련해서도 수량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수/1년’을 봄(3월 20일 이전)에 올려보내고, 육지 이송 후 양육의 과정을 거쳐 제향에 올렸다는 점이다. 또 군기용 창병목의 제작을 위한 가시목과 기타 교자궁, 궁대통개, 백랍, 진피(약재), 전복 등의 공물 진상 사실이 확인된다.

사회 분야 기사는 진흙(51)과 표류(37) 관련 기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1686년(숙종 12), 1705년(숙종 31), 1713년(숙종 39)~1716년(숙종 42)은 제주에 대흉년으로 다수의 기민이 발생하자, 진흙굴 마련, 운송 등의 논의와 시행을 다루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려 있다. 특히 1715년(숙종 41)과 1716년(숙종 42) 두 해에 걸친 흉년은 제주에 다수의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제주별건어사(황구하)가 파견되고, 아사자들을 위로하는 어제제문(御製祭文)도 내려졌다.

표류 관련 기사는 숙종 연간 왜인 표류 및 송환 1건, 중국인 표류 및 송환 5건, 안남 표류 제주인 김태항(金泰瓚) 송환 1건 등의 사안이 여러 기사에 걸쳐 전한다. 왜인 표류는 1681년(숙종 7), 표류 제주인(김태항) 송환은 1689년(숙종 15) 기사에 전한다. 중국인 표류 송환 5건은 1682년(숙종 8), 1687년(숙종 13), 1692년(숙종 18), 1706년(숙종 32), 1713년(숙종 39)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규모는 1687년(숙종 13)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등주, 소주) 65명으로써 이들을 인솔하기 위한 역관이 파견되고 서울, 의주를 거쳐 중국 봉황성(鳳凰城)으로 인도되었다. 표류 제주인(김태항)은 중국 상선을 타고 송환되었는데, 조선 조정은 이들을 태우고 온 중국 상인들에게 총 2,000냥 전후의 은자(銀子)를 대가로 지불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도중 발생한 선박 침몰로 인해 그 익사자에 대한 흘전(추모) 거행 사례가 14건 기록되어 있다. 그중 1692년(숙종 18) 1월에 발생한 사건이 최대 참사로 확인된다. 당시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나던 대정현감 장후재(張後載)를 비롯 65인이 익사하여 이들을 추모하는 은전 실시를 전교로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역병으로 인한 재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1693년(숙종 19) 천연두로 약 2,000명, 1699년(숙종 25) 여역(전염 열병)으로 약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였다. 1714년(숙종 40)에는 전염병이 확산되자 조정에서 ‘형방패독산’ 등 다량의 의약 수송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 기사는 제주시제 및 급제자의 직부전시(문과 복시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전시에 응시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07년(숙종 33) 제주인 정창원(鄭敞遠), 오정빈(吳挺賓), 고만첨(高萬瞻), 1717년(숙종 43) 제주인 고만갑(高萬甲), 고처량(高處亮), 정창선(鄭敞選)의 전시직부 사실이 확인된다. 중요한 사실은 1701년(숙종 27) 제주에서도 문무과 초시를 시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절목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시취 인원은 전라도 초시의 일부 정원을 떼어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뽑도록 하였다. 또한 제술 과목은 ‘표(表)’를 제외한 ‘부(賦)’와 ‘책(策)’으로 시취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와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띈다. 조선왕조는 명산대천에 정기적으로 제례를 지내는 규정인 사전(祀典)이 있는데, 여기에 한라산신제는 그동안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목사 주관하에 산천단(제주시 아라동)에서 거행되었으며, 한라산 정상에서는 더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어사가 파견될 경우는 한라산 정상에서 한라산신제를 거행하도록 제문과 향축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1601년(선조 34) 김상헌(金尙憲)이 어사로 내려왔을 때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예가 그의 『남사록(南槎錄)』에 전한다. 결국 1703년(숙종 29) 한라산신제를 사전에 포함하여 치악산 등의 제례와 동일하게 지낼 것을 논의한 후, 이를 명문화한 사실이 전한다. 또한 풍운뇌우제는 1703년 이형상 목사 때 폐지되었다가 1719년(숙종 45) 정동후 목사에 의해 복설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1682년(숙종 8)에는 제주 유생들이 사현(四賢;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을 모신 제주의 굴림서원에 사액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승낙한 기사가 전한다. 이른바 제주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굴림서원’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다.

4.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의 사료적 가치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 역주는 향후 제주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특히 제주에 파견된 목민관(목사, 판관, 현감 등)들의 제수 및 교체 등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마정, 진상 등의 경제 분야 역시 그 내용과 물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재해와 진흙 및 납속과 면천 등의 사회상 부문은 당시 제주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이 확인된다. 제주에서 시행되는 과거와 그 급제자들이 서울에 올라가 최종 과거에 응시하기까지 구

체적 정황 역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를 통해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번역이 완료된 효종, 현종, 숙종대의 기록을 놓고 보아도 그동안 역사적 편린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운용 과정과 실태 등을 세밀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단절적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풍부한 스토리가 입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조선 시대 제주 역사의 실체를 자세히 규명하려면 반드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를 정독한 후에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방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승정원일기』가 갖는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의 사료적 가치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에서는 제주목사 직임의 중요성, 제주 세공마의 운송 과정 등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먼저 제주목사의 직임이 육지의 여타 목사와는 차원이 다른 막중한 자리임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제주가 바다 건너 먼 변방의 섬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요인이 개입된 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목사의 임명에 관한 한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효종이 제주목사 선임의 고충을 토로하는 다음 사실들이 이를 방증한다.

“제주는 바다 밖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인지라 더욱 예사로이 파견할 수 없으니 잘 가려 뽑아 다시 의망(擬望)하라.”(1649년/ 효종 즉위, 6월 23일)

“탐라는 아득히 바다 밖에 있어 왕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다. 탐관오리가 그 욕심에 따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제멋대로 행한다. 원통함이 있어도 떨 수 없고, 병폐가 있어도 구할 수 없으니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사의 순시 또한 이를 수 없다. 아! 이 땅의 백성은 유독 나의 백성이 아닌가? 염려되고 근심된다. 일찍이 즉위한 초에 특별히 문관을 가려서 보냈는데 지금 운운하는 바가 있다.”(1651년/효종 2, 4월 25일)

“제주는 임무가 막중한 곳이어서 일반(육지)의 목사와 비할 바가 아니다. 예전부터 문무관리 중에 청렴결백한 자를 골라 파견한 것이 무릇 우연이 아니다.”(1658년/ 효종 9, 2월 2일)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에서는 특히 마정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들이 전한다. 연례 제주 공마의 시한과 그 이유, 운송 과정, 운송 후 육지 방목처 확정, 분급 대상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시기 『조선왕조실록』에는 전혀 기록되지 아니한 사실들로서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있기에 그 사

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먼저 제주 공마의 운송 시한은 이른 가을부터 늦어도 음력 7월 10일 이전까지였다. 그 이유는 서울을 비롯한 육지에서 말먹이인 풀이 무성할 때 와야 했기 때문이다. 즉 풀이 시들고 마르는 늦가을 이후에 도착하면 말이 비틀고 여위어 죽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제주나 육지에서 운송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엄중하였다.

“세공마는 전례대로 초가을 풀이 아직 마르지 않을 때 올라 온 뒤 전곶(箭串, 서울 독섬)에 방목하였다가 각 고을에 분양해야만 쓰러져 죽을 염려를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예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길에 지체하게 한 관리를 경기, 충청, 전남의 3도 감사에게 조사하여 찾아내고 추고하도록 명하십시오.”(1655년/효종 6, 8월 20일)

“바다(제주)를 건너올 때는 반드시 초여름을 틈타 7월 10일 이전에 상납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올해는 가을이 이미 깊어진 뒤에 비로소 올라왔으니 풀이 말라죽는 때가 되어버려 전곶에 방목하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목사 구의준(具義俊)을 엄중히 추고해야 합니다.”(1657년/효종 8, 8월 25일)

“예전에는 공마가 반드시 풀이 잘 자란 때인 이른 가을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찌하여 지금에야 비로소 올라왔는가?”(1658년/효종 9, 8월 28일)

특히 연례 공마의 운송을 지체한 지역과 그 지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마가 강진에 도착하여 서울까지 운송하는데 지체한 지역의 수령과 담당 관리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복시의 건의를 효종이 승인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마가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견마군 차출과 말먹이(풀)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했으며, 이를 어겨도 처벌이 뒤따랐다.

“연례 공마를 필히 초여름에 하는 것은 물과 풀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인데 연로(沿路)의 각 읍이 착실히 호송하지 않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서 몰고 온 색리를 심문하니, 강진(康津)에 내렸을 때 수령이 공석이어서 모래사장(沙場)에 머물며 밤낮으로 굶주려 서 있던 것이 12일이었고, 문의(文義)에 도착해서는 견마군(牽馬軍)을 징발할 수 없어 5일을 지체하였고, 청주(淸州)에 이르러서는 물에 막혀 9일을 지체하였는데, 진위(振威)에 도착해서는 견마군을 결정하는 일로 8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먼 길을 끌어 보내는 말에 대해 즉시 번갈아 교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머무르는 날을 당해서는 또한 쉼야 할 풀을 준비하지 않아 굶주려 야윈 것이 심히 놀랄 만합니다. 문의, 청주, 진위 등의 관아 수령을 무겁게 처벌하고, 강진은 과연 수령이 공석이었으니 향소(鄕所)와 색리(色吏)를 잡아 가두어 심문한 후에 아뢰게 하여 훗날의 경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1653년/효종 4, 8월 5일)

한편 제주 세공마가 서울에 도착한 뒤의 방목처는 서울의 독섬이었다. 간혹 경북궁에 잠시 풀어놓았던 적도 있었는데, 경북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기 때문에 당시 넓은 들판으로 변해 가능한 일이었다. 이곳에 제주의 세공마를 임시로 방목하였다가 분급 규정에 따라 각 관아 및 지방으로 보냈다. 하지만 제주의 세공마가 늦게 올라올 경우, 서울 독섬의 풀도 이미 말라버려 방목하기가 어려워지자 경기 장봉도 및 강화도 등지에 옮겨 방목하기도 하였다.

“(제주의) 말들은 우선 전곶(箭串, 독섬)에 풀어놓았다가 이후에 임금께서 볼 장소로 붙잡아 왔습니다. … 전에 혹 경북궁(景福宮) 담장 안에 풀어놓은 때도 있었으니, 지금 전례에 따라 우선 경북궁 안에 풀어놓아 길음으로써 (다시) 붙잡아 이동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혹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알았지만, 경북궁 안에 제멋대로 풀어놓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전교하였다.”(1651년/효종 2, 7월 5일)

“금번 본 관아(사복시) 검정 이성휘(李星徽)가 그 형세를 두루 살펴보고 와서 말한 바를 들어보니 ‘강화 장봉도(長峯島, 용진군 북도면 장봉리/강화도와 영종도 사이)가 비록 바다 가운데에 있는 수십 리의 땅이라도 조류를 타고 왕래하는 수로가 편리하고 합당하며 네 산이 둘러서 있고 지세가 편평하며 물과 풀이 풍족하여 백성이 살면서 농사짓고 밥먹고 살만한 곳 또한 많다.’라고 합니다. … 제주(濟州)의 암말을 이 섬에 옮겨 방목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1657년/효종 8, 7월 13일)

“본 관아의 강화 북일장(北一場, 강화 화도면 장화리)의 말을 장봉도(長峰島)로 옮겨 방목하고 제주(濟州)의 암말을 북일장에 방목하는 일로 계사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1658년/효종 9, 8월 11일)

제주 세공마의 분급 대상은 금군, 훈련도감, 어영청 등의 중앙군과 경기, 충청, 황해, 강원 등의 4도에도 분양하도록 하였다. 다만 분급 순서가 중앙군에 먼저 지급되었고, 그 후에 각 지방에 지급되었다. 중앙군 중에서도 훈련도감이나 어영청보다는 금군이 우선순위에 있었음도 확인된다.

“각 관아에 분양할 말은 올라오는 데 따라 곧 금군, 훈련도감 마대(馬隊), 어영별초에 분급하라고 이미 전교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좌우금군에 먼저 분급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골라 취하도록 하여 지급할 것이 38필, 훈련도감 마대에 24필, 어영별초에 10필 등 합계 72필입니다.”(1657년/효종 8, 8월 11일)

“지난해 분급에서 남은 말 중 전곶(箭串, 독섬)에 방목한 것과 금번 제주마(濟州馬) 중 먼저 245필을 골라 경기, 충청, 황해, 강원 등 4도에 분양하고 어영청 무사 또한 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바람대로 가려 지급하겠습니다.”(1657년/효종 8, 9월 5일)

2)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의 사료적 가치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에서는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목사를 비롯한 삼읍 수령이 교체될 때는 항상 체임진상마를 2~3필 올려 보냈는데,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3필,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2필이었다. 또 김만일(金萬鎰)의 후손들이 대대로 산마장감목관을 역임하였으며, 이들도 교체시에는 2필의 진상마를 올렸다. 한편 제주 선유어사가 시재할 때 급제한 제주인들은 차후 왕이 주관하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전시직부). 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과거시험인 식년시(子/卯/午/酉年)에서만 부여되었으며 부정기시험인 별시나 증광시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별시의 경우에도 임금의 특명으로 전시직부를 치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제주목사를 비롯한 제주 삼읍 수령들의 임명 조건과 관련해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무기류 제작과 관련하여 제주 지역의 재료와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 특히 제주 목민관 임명과 관련하여 정밀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주목사 및 판관과 정의 및 대정현감 등에 대한 개별적 임명과정에서 그들의 자격 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들이 적시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조선 시대 제주 목민관 임명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승정원일기』의 기사들을 두루 섭렵한 뒤에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제주목사의 임명조건과 관련한 사실이다. 제주목사는 청렴 근면한 자를 선임해야 하며, 타 지역의 목사와 달리 당상관으로 뽑아 파견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사헌 조복양과 집의 이후가 아뢰기를, ‘제주라는 고을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데 물산이 매우 많아 평소에 이익이 되는 소굴이라 불립니다. 예부터 꼭 청렴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뽑았으니 그 뜻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였다(1662년/현종 3, 12월 16/18/19/22일).”

“좌의정 김수항이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는 전례에 따라 당상관으로 뽑아 파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1673년/현종 14, 2월 19일).”

위에서 제주목사는 당상관 정3품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상관이란 국정

을 논의할 때 대청[堂]에 올라 왕과 함께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위 관직을 말한다. 즉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은 품계의 사람들이다. 문신은 정3품의 통정대부 이상, 무신은 절충장군 이상이다. 이 때문에 정3품 당하관(통훈대부) 이하의 관리가 제주목사에 임명되면 항상 정3품 당상관(통정대부)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주는 ‘가자(加資)’가 함께 이루어졌다. 1672년(현종 13) 2월(18일) 제주목사에 제수되면서 곧바로 통정대부로 가자된 윤계(尹堦)와 1673년(현종 14) 2월(20일) 역시 제주목사에 제수된 김흥운(金興運)을 통정대부에 가자한 사실이 그것이다.

한편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문무관을 서로 엇갈려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확인된다. 즉 목사나 판관 중 1인은 항상 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제주의 학문 권장과 특히 소과(승보시) 시행을 주관할 책임자 선임 때문이었다. 아래에 관련 사실을 소개한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목사·판관을 아울러 문신으로 엇갈리게 임명하여 목사·판관 중에 항상 문관 한 사람은 남아있게 해서 향교 교수관과 더불어 해마다 승보시를 시행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방도를 없애 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일러 조치케 하라.’고 하였다(1664년/현종5, 3월 26일).”

또한 제주 출신은 제주 수령에 임명할 수 없다는 상피제 규정 적용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제주 뿐 아니라 조선시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관리 임명의 원칙이었는데 역시 제주에서도 적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관련 기사를 소개한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 유옥과 정의현감 김여한은 모두 본도 해읍(海邑)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이 섬 안으로 부임 받았으니 세상 논의가 모두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감 유옥과 정의현감 김여한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갈아 임명할 것을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665년/현종6, 6월 10일).”

이상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에서는 제주목사를 비롯한 제주 삼읍 수령의 임명과 관련한 여러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 사실로 요약된다. 첫째, 제주목사는 청렴 근면한 자로 선임해야 한다. 둘째, 타 지역의 목사와 달리 제주목사는 정3품의 당상관으로 임명했다. 셋째,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문무관을 서로 엇갈려 임명한다. 넷째, 제주 출신은 제주 수령에 임명할 수 없다는

상피제 규정이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제주가 무기 제작과 관련한 재료 및 기술이 뛰어난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도 특이하다. 훈련도감의 창자루 제작은 매년 제주의 이년목을 베어 진상선에 올려 같이 보냈다는 기사 및 활의 제작과 재질은 제주가 매우 우수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다음에 소개한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창자루로 합당한 이년목을 훈련도감에서는 매년 제주에서 가져다 씁니다. … 이후 진상선이 올라 올 때 베어 가지고 신고 오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1667년/현종 8, 3월 3일).”

“유혁연이 말하기를, ‘제주에서 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정밀합니다. 활의 재질도 또한 좋습니다.’라고 하였다(1669년/현종 10, 1월 23일).”

당시 지중추부사로 어영대장을 겸임하고 있던 유혁연(柳赫然)은 창자루 및 활의 재료와 관련하여 제주의 이년목과 (녹)각이 좋은 재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활 제작과 관련해 제주 장인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마, 추복(전복), 감굴류 외에 무기 제조와 관련한 재료까지 제주의 진상물목이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의 사료적 가치

『승정원일기』 숙종대 제주기사에서는 굴림서원의 설립, 한라산신제의 사전 등록, 제주 세공마의 운송 등에 대해 그 구체적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당시 제주의 인구까지 기록하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제주 최초의 서원인 ‘굴림서원(橘林書院)’의 사액(賜額) 과정을 소개한 기사이다. 1682년(숙종 8) 6월 23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 유생들의 사액 청원에 대해 처음 해당 부서에서는 반대하여 허락하지 않았지만, 당시 우의정이었던 김석주(金錫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액 허가가 이루어졌다.

“가만히 들으니, 제주 유생들이 네 신하의 서원에 대해 사액을 청하는 문제로 멀리서 와서 상소를 올렸는데, 해조(該曹)에서 첩설(疊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입계(入啓)하여 윤희 받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중략) 또한 향사하는 4인으로 말하자면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 대사헌 송인수(宋麟壽),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 참판 정온(鄭蘊)입니다. 이 네 신하는 모두 문학과 명절(名節)이 있었는데, 본디 사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다 밖 사람들도 또한 존경하고 사모하

여 향사하는 곳을 만들어 표준으로 삼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지의 주현(州縣)에 부산하게 중첩으로 설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한라산신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1703년(숙종 29) 8월 7일 기사에 영의정 신완(申琬)이 해외 명산인 한라산이 사전(祀典)에 누락 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실어야 한다는 건의가 처음 등장한다. 결국 한 달 뒤인 동년 9월 5일 기사에 의하면 사전에 수록되어 치악산(雉嶽山)의 예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였다.

“대신들의 의견을 아뢴 일로 전교하시기를,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인데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못했음은 흠결(欠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의정의 의견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지금 제주(濟州) 한라산(漢拏山)의 제례(祭禮)와 축문식(祝文式)은 치악산(雉岳山) 등의 제례에 따라 거행하게 하는 것이 형편상 합당할 듯합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세공마의 운송 시한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효종대 『승정원일기』에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684년(숙종 10) 7월 23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 세공마의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0일 이전까지였다. 그 이유는 제주마가 상경하여 분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목할 때 최소한 풀이 시드는 계절로 접어들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다음 1688년(숙종 14) 8월 3일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전에는 제주에서 공마(貢馬)를 올려 보내는 것이 8,9월 풀이 다 시든 때여서 죽게 할까하는 근심이 많이 있었다. 때문에 효종 때 이래로 특별히 정신을 차리도록 질책하고, 여러 차례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 후에는 매년 7월 안에는 거의 다 올라왔다.”

제주 세공마 운송시 육지 여러 군현의 선적들이 제주로 향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689년(숙종 15) 7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호남 지역에서 제주 세공마 운송을 위해 제주로 배를 보내야 했던 지역은 순천, 장흥, 광양, 나주, 영광, 무장, 진도 등 일곱 곳이었다.

“제주마를 세공하는 법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도 각 읍이 삼가 거행하지 않았으니 심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배를 늦게 댈 순천·광양 등의 읍과 사공의 수를 적게 보낸 장흥·영광·무장·광양·진도·순천 등 읍의 담당 아전들을 본도 감사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게 하고, 배를 처음부터 대지 않은 나주목사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

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희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호남 지역의 여러 배들이 제주 세공마를 운송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적재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의 큰 배가 대량으로 운송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음도 확인된다. 1708년(숙종 34) 1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송정규(宋廷奎)의 상소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대개 육지 읍의 배들은 비록 매 척에 35필까지이지만, 제주의 큰 배는 7,80필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숙종대 제주 인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1676년(숙종 2) 1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제주의 인구는 대체로 3만 남짓이며, 바로 전해에 발생한 대흥년 때문에 1만여 명이나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뒤인 1694년(숙종 20) 11월 8일 기사에 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인구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온 섬이 비록 세 고을로 이루어졌지만, 지방이 협소한 데다 인민(人民)도 적다. 민호(民戶)의 수는 합하여 거의 8,850여 호에 이르고, 민구(民口)의 수는 남녀(男女)와 장약(壯弱)을 합하여 거의 44,820여 구이다.”

5. 맺음말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역주는 전국적으로 지방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작업이다. 역량 있는 역주자 및 교열자를 확보하여 미번역된 제주 기사에 대한 역주 사업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우리나라 정사 중 가장 세밀한 내용까지 수록된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일기』 중 ‘제주’ 지방의 기사만 발췌하여 엮는 작업도 의미가 크다 할 터인데, 미번역된 왕대까지 역주하여 성과를 내고 있으니 감회가 남다르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전자문서(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로 쉽게 접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 크다.

제주학연구센터는 향후 영정조,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왕대별로 지속적인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역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승정원일기』의 제주 기사는 『조선왕조실록』보다 10배 전후의 많은 사실이 담겨 있고, 그동안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도 세밀히 기록되어 전한다. 이를 통해 제주 역사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당대 제주 사회의 면모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

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대별 지속적인 역주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 역사문화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본 역주 사업은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제주의 인문자연 전 분야에 걸쳐 심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따끔한 질책을 가감 없이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 주시면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전진할 것이다.

『承政院日記』에서 확인되는 한자 차용 표기의 解讀과 分析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承政院日記』에서 확인되는 한자 차용 표기의 解讀과 分析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차례

- 1. 序
- 2. 『承政院日記』의 한자 차용 표기
- 3. 한자 차용 표기의 解讀과 分析
 - 3.1 建築 관련 어휘
 - 3.2 服飾 관련 어휘
 - 3.3 飲食 관련 어휘
 - 3.4 그릇[器皿] 관련 어휘
 - 3.5 道具 관련 어휘
 - 3.6 馬政 관련 어휘
 - 3.7 其他 어휘
- 4. 마무리

1. 序

이 발표는 조선 후기의 역사 자료 가운데 하나인 『承政院日記』의 濟州 記事에서 확인되는 한자 차용 표기에 대해서 살펴서 그 概略을 살펴보고, 一部를 解讀하고 分析하여 보이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承政院日記』는 조선 시대 王命의 出納을 담당하던 承政院에서 거의 매일 이뤄졌던 政事와 그와 관련된 논의, 관련된 문서와 사건 등을 기록한 일기 형 문서로서,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이때의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다 소

실되고, 오늘날 전하는 것은 인조 원년(1623)부터 고종 31년(1894)까지 272년간의 것뿐이다. 3,243책으로, 1999년 4월 9일에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고,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으로 지정되었다.

지난 몇 년간 이 『承政院日記』 가운데 濟州 관련(핵심어 : 濟州, 大旌, 旌義, 耽羅, 楸子) 記事를 공동으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자 차용 표기와 관련된 것을 추려서 이 발표문에 담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 차용 표기가 한정적으로 쓰여서, 가능하면 『承政院日記』 전체에 나타나는 한자 차용 표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일부를 해독하고 분석하여 보이려고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자 차용 표기는 固有語의 地名이나 物名, 그리고 借用語의 馬政 관련 어휘 따위(말 이름, 말 길마 관련 이름, 말 길마를 맬 때 쓰는 어휘 따위) 등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한자음 그대로 읽어 버리거나, 그것을 오늘날 한자음대로 읽고 번역한다든가 하게 되면 원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 뜻을 왜곡하여 전하게 된다.

가령 한자 차용 표기 가운데 落只와 落으로 표기된 것이 있다. 落只는 현대국어 접미사 ‘-지기’에 대응하는 옛말 ‘-디기’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로, ‘그 정도 양 또는 그만한 분량의 씨앗이나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논밭의 넓이’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落只’는 ‘디기>지기’로 읽어야 하고,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

한편 落只는 ‘只’를 생략하여 ‘落’으로만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디기>지기’로 읽어야 하고,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 落只(디기>지기)나 落(디기>지기) 앞에는 石, 斗, 升, 畝 등이 쓰여 石落只(또는 石落), 斗落只(또는 斗落), 升落只(또는 升落), 畝落只(또는 畝落) 등으로 쓰인다. 이때 石, 斗, 升, 畝는 모두 우리말 ‘섬, 말, 되, 홑’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그러므로 石落只와 石落은 ‘섬디기>섬지기’,¹⁾ 斗落只와 斗落은 ‘말디기>말지기>마지기’(제주방언에서는 ‘마지기’로 말해지지 않고 ‘말지기’로 말해졌다.), 升落只와 升落은 ‘되디기>되지기’, 畝落只와 畝落은 ‘홑디기>홑지기’ 등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각 ‘섬지기, 마지기(또는 말지기), 되지기, 홑지기’ 등으로 읽고 번역해야지, ‘두락지’(또는 두락), ‘승락지’(또는 승락), ‘석락지’(또는 석락), ‘홑락지’(또는 홑락) 등으로 읽어 버리거나,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

石落只·石落(섬디기>섬지기)는 법씨 또는 산도 한 섬의 모 또는 씨앗, 보리씨와 좁씨 한 섬의 씨앗을 심거나 뿌릴 만한 넓이의 논밭으로, 한 마지기의 열 배로, 지방마다, 그리고 논밭의 좋고 나쁨에 따라, 논은 약 2,0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넓이를 말하고, 밭은 약 1,000평 정도의 넓이를 말한다. 밭이 안 좋으면 1,500평 또는 2,000평에도 이른다.

斗落只·斗落(말지기>마지기)는 법씨 또는 산도 한 말의 모 또는 씨앗, 보리씨와 좁씨 한 말의 씨앗을 심거나 뿌릴 만한 넓이의 논밭으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평~150평 정도이다. 升落只·升落(되지기)는 법씨 또는 산도 한 되의 모 또는 씨앗, 보리씨와 좁씨 한 되의 씨앗을 심거나 뿌릴 만한 넓이의 논밭으로, 한 마지기의 10분의 1 정도 된다. 畝落只·畝落(홑지기)는 법씨 또는 산도 한 홑의 모 또는 씨앗, 보리씨와 좁씨 한 홑의 씨앗을 심거나 뿌릴 만한 넓이의 논밭으로, 한 되지기의 10분의 1 정도 된다.

이와 같이 이 발표문은 고유어의 한자 차용 표기를 誤讀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2. 『承政院日記』의 한자 차용 표기

『承政院日記』에 한자 차용 표기가 쓰인 문장 몇을 보이고,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 兵曹正郎任述書啓. 臣敬奉聖旨, 馳往于溫陵洞口外看審, 則自陵洞口外路, 至木甘峴東五里許, 兩寺洞前路割入畝五合落只田一畝, 太種五升落只, 又於路邊有巖石橫路不可作路, 故就下邊陳荒處治道, 則粟田所傷, 不過七畝, 太種一斗落只, 而兼司僕看審中所謂四斗畝割入厓, 則今不入於治道中, 行至百餘步, 路左畝割入三升落只, 又於路右, 粟田割入二畝, 太種幾至三升落只, 而又於路下畝割入五合落只. 以上割入畝合四升落只, 割入田合一斗八升落只. 自木甘峴至高陽郡五里許內, 木甘村前路割入畝四升落只, 下木甘前路割入田一畝, 太種一斗落只, 又其下割入畝一升落只. 外木甘宮村前路右邊割入太田一畝三升落只, 又左邊粟田一畝, 太種五升落只, 而穀已成熟, 刈取不遠, 又其下太田割入一畝一升落只, 又其下粟田割入一畝, 太種一升落只. 又木甘村洞口外路右邊太田割入二畝五升落只, 右邊木花田一畝, 太種三合落只. 以上割入畝合五升落只, 割入田合二斗六升三合落只, 而以上十里內畝穀, 則幾盡發穗, 田穀則早穀外, 姑未成熟矣, 敢啓. 傳曰, 知道. 所入田粟太豆, 分付畿營, 從實報戶曹, 雖成熟前, 依下教, 令民取食, 其代, 亦令戶曹上下.

<『承政院日記』 895책 영조 15년(乾隆4/1739) 8월 정해(13일)>

- 李弘胄, 以司僕寺言啓曰, 慶尙監司狀啓, 禮曹缺傳曰, 令司僕寺兩色月羅馬, 極擇缺急急下送, 以副其望事, 傳教矣. 前送兩馬, 一則赤多月羅, 一則鐵青驄, 皆非純

1) 『承政院日記』 인조 13년(1635) 11월 기사(23일) 조를 보면, 石落을 “石落(석락)”으로, 石을 “石(석)”으로 번역하였다. 石은 ‘섬’으로, 石落은 ‘섬지기’로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色白馬，以此送去，亦無不可。雖或未盡，且本道方爲廣求云，乘船日迫，必已措得矣。所請加羅驪馬及兩色花馬中，加羅驪馬則內立邊馬中，亦有體大有才者，花馬則有貿送之教。故花馬二匹，各給百兩銀子，已爲貿得，四馬中擇送之意，敢啓。傳曰，知道。

<『承政院日記』 53책 인조 14년(崇禎9/1636) 9월 을사(4일)>

- ……仍加遺衣七稱，上綴龍袍【肩龍】加文刺具，中綴道袍擎衣具，下綴軍服快子腰帶【胸龍】具。三重棺衣，左右髮扇縫綴，而上黼・次黻・次靈爲之……。

<『承政院日記』 2676책 고종 1년(同治3/1864) 4월 정축(6일)>

- 禮曹啓曰，臣李大成，進詣永昭殿奉審，則正殿東邊簷下二處，西邊衝椽蓋板一處滲漏，殿後面方草一立剝落，中排設廳及左右行閣・玄明門・紫極門・武德門・安香廳・典祀廳諸處滲漏，齋室廚間椽木七箇，腐傷破落，果如本殿參奉所報，而卽今雨勢如此，姑待少晴，擇日舉行，何如？傳曰，允【以上禮曹臚錄】

<『承政院日記』 469책 숙종 38년(康熙51/1712) 6월 기사(17일)>

- ……饌品各色餅一器，白雪只・密雪只・石茸雪只・辛甘菜雪只・荏子雪只・密粘雪只・雜果粘雪只・盒餅荏子粘雪只，各色造岳，各色花煎，山蔘雜果蔘糕，當歸菜煎，菊花菜煎高八寸五分，畫唐大楪藥飯一器，畫唐大碗餅匙一器，畫唐大碗水麵一器，畫唐大碗饅頭果一器高八寸五分，畫唐中楪三色軟絲果一器高九寸，畫唐中楪三色梅花强精一器高九寸，畫唐中楪雜糖茶食一器高六寸，畫唐中楪棗卵一器高六寸，畫唐中楪各色倭糖一器高五寸，畫唐中楪各色唐糖一器高五寸，畫唐中楪李實一器高六寸，畫唐中楪林檎一器高七寸，畫唐中楪六月桃一器高七寸，畫唐中楪覆盆子一器高四寸，畫唐中楪西果一器，畫唐中楪眞菰一器高五寸，畫唐中楪桃煎一器高四寸，畫唐中楪覆盆子膏一器高四寸，畫唐中楪各色正果一器高四寸，畫唐中楪水正果一器，畫唐湯器梨熟一器高五寸，畫唐中楪水霜花一器，畫唐中楪各色切肉一器高八寸五分，畫唐中楪片肉一器高六寸，畫唐中楪各色煎油魚一器高六寸，畫唐中楪魚膾一器，畫唐中楪生鰓膾一器高四寸，畫唐中楪熟鰓炒一器高六寸，畫唐中楪軟猪炙一器，畫唐中楪軟雉炙一器，畫唐中楪家獐蒸一器，畫唐中楪鮓魚白熟一器，畫唐中楪軟鷄蒸一器，畫唐中楪蔘鰓熟一器高六寸，畫唐中楪錦中湯一器，畫唐大碗醋鷄湯一器，畫唐大碗白清一器，畫唐甫兒芥子一器，畫唐甫兒醋醬一器，畫唐甫兒燒酒一鐺……

<『承政院日記』 1746책 정조 19년(乾隆60/1795) 6월 정유(18일)>

- 行左承旨李書九啓，臣於本月二十九日，陪奉香祝，當日馳詣弘陵，奉安于香大廳，仍詣陵上奉審，則曲牆頽圯處，自寅方至辰方，內高爲四尺，外高爲三尺五寸，內廣爲四十尺二寸，外廣爲四十一尺五寸，丁字閣西北簷，雜像一箇破無，碑閣東西角外

簷滲漏，仰粉土間間剝落，香大廳牆垣五處崩頽，盥洗位手巾一件，雨傘一柄，小鍬沙用蓋具一坐，柳箕一部，行子布二件，沙磁碗一立，沙大貼二立，沙貼匙五立，水刺間守僕房諸執事房窓戶塗紙竝破，仍詣昌陵奉審，則陵上無頃，丁字閣殿內樽罍四件渝破，月廊西簷角夫防草瓦二張，女防草瓦一張破傷，碑閣無頃之意，敢啓。傳曰，知道。

<『承政院日記』 1811책 정조 23년(嘉慶4/1799) 7월 30일 병술 9/26 기사>

- ……下都監，都監回啓，乙丑年黃海道分定段，石瑛燈二部，大節墨二百五十笏，中節墨二百笏，紫硯八面，塗柳筭六十三部，柳筭一百五十部，大束蓑四十艮衣，小束蓑四十艮衣，三甲所二百艮衣，條所二百艮衣，熟麻一百斤，黃蜜一百斤，菉豆五石，眞油三石，生鰓四百四十八介，生豬六十口，柏子六石，榛子一石十斗，黃角八石。而今番分定段，黃角五石五斗，石瑛燈二部，大節墨三百笏，中節墨二百笏，黃蜜二十八斤，眞油二石五斗，丁粉則我國只產於殷栗……。

<『承政院日記』 42책 인조 12년(崇禎7/1634) 3월 임자(26일)>

- ……申九月分，毓祥宮內人房，乘夜所偷有蓋大盒一坐，有蓋中盒一坐，涼盆一坐，有蓋周鉢二坐，大楪二坐，助治甫兒一箇，錚楪五箇，鍾子一箇，錚盤一坐，周𪔐一箇，養齒器一箇，青銅火爐一坐，鍬大也一坐，小大也一坐，有蓋大溺江一坐，合捧價七十五兩五錢，賣於鉢里廛市民朴永錫處，匙箸三件，藏置矣家，而雖死杖下，此外無行賊處，亦無同黨指告者云矣……。

<『承政院日記』 2790책 고종 10년(同治12/1873) 윤 6월 정해(11일)>

石，斗，升，合，石落，石落只，斗零落只，斗落，斗落只，升落，升落只，合落，合落只，負，庫，加羅馬，驪馬，驪雄馬，加羅驪馬，驪台星，驪台星雄馬，月羅馬，青月羅馬，黑月羅馬，大月羅馬，兩色月羅馬，仇郎(一馬)，仇郎雄馬，赤多馬，赤多雄馬，青驄，鐵青驄，雇騾，禾加文刺，腰帶，帶，黑帶，帖裏，帖裏衣，胡帖裏，白帖裏 黑帖裏 青帖裏 黑紗帖裏，天翼，段衣，障衣・長衣，快子，倒衣，上倒衣，下倒衣，中衣，道服，道袍，赤𪔐，袂赤𪔐，襦赤𪔐，赤莫，中赤莫，擎衣，裏衣，衫兒，把持，袂把持

門隻，𪔐迪耳，道里，內道里，防草，坊草，唐坊草，女防草，夫防草，方草，夫方草，防草瓦，女防草瓦，女夫防草瓦，莫沙，女莫沙，竹石，欄干竹石，春舌，班子，簷下，朴工，朴工活只，瓦，夫瓦，女瓦，活只，會簷

雪只，白雪只，密雪只，石茸雪只，辛甘菜雪只，荏子雪只，密粘雪只，雜果粘雪只，助岳，𪔐非大貼，銀大貼，沙大貼・砂大貼，大楪，砂大楪，鍬大楪，大楪紋，大貼紋，分兒，砂分兒，角砂分兒，鍾子，甫兒，助治甫兒，涼盆，貼匙，沙貼匙・砂貼匙，楪匙，砂楪匙，東海，沙東海，罍，圓罍，方罍，鼎罍，付銅耳・羊鼎耳

蓑 束蓑，所，三甲所，條所，周𪔐，大也，鍬大也，水刺，水刺間，引導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建築 관련 어휘, 服飾 관련 어휘, 飲食 관련 어휘, 그릇〔器皿〕관련 어휘, 道具 관련 어휘, 馬政 관련 어휘, 其他 어휘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 서너 개씩의 한자 차용 표기 어휘를 선정하여, 그것을 고유어에 대응시켜 해독하고,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한자 차용 표기의 解讀과 分析

『承政院日記』 12책 인조 4년(天啓6/1626) 4월 경진(8일) 기사를 보면, “……且大輦體重, 擔軍多至二百餘名, 躡踏之際, 結木把子, 難保其完全, 臣等極爲憂慮, 咸欲以肩輦, 觀勢替陪, 敢此預稟……”이라는 문장이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承政院日記』 번역본에는 “……또 대여(大輦)는 몸체가 무거워서 담군(擔軍)이 2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밟고 다닐 때에 나무를 묶은 파자(把子)가 완전하기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니, 신들은 극히 우려됩니다. 모두들 형세를 보아 견여(肩輦)로 바꾸어 모시고자 하므로 감히 이렇게 미리 여쭙니다……”라고 번역하였다. 엄연히 현대국어에 ‘바자’(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받쳐림 엮거나 걸어서 만든 물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파자(把子)’라고 번역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木把子는 ‘나무 바자’, 또는 ‘나무로 만든 바자’, 또는 ‘싸리(柎木)로 만든 바자’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번역이다.²⁾

『承政院日記』 674책 영조 4년(雍正6/1728) 11월 병인(20일) 기사를 보면, “……端午, 大殿白苧布帖裏二次, 白苧布裏衣二次, 中宮殿白苧布衫兒二次, 白苧布赤尓二次減……”라는 문장이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承政院日記』 번역본에는 “……단오에는 대전의 백저포 철릭(白苧布帖裏) 2차(次)와 백저포 이의(白苧布裏衣) 2차, 중궁전의 백저포 삼아(白苧布衫兒) 2차와 백저포 치마(白苧布赤尓) 2차를 감하고……”라고 번역하였다. 帖裏를 ‘철릭’으로, 赤尓을 ‘치마’로 번역한 것은 제대로 된 것이지만, 이 문장의 ‘次’는 ‘감’의 옛말 ‘굶’(옷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피륙)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裏衣는 현대국어 ‘속옷’의 옛말 ‘솥옷’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白苧布는 ‘흰 모시’의 한자 표기이다. 그러므로 “白苧布裏衣二次”를 “백저포 이의(白苧布裏衣) 2차”로 번역하는 것보다 “흰 모시(로 만든) 솥옷 2벌 감”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³⁾

2) 『承政院日記』 고종 8년(1871) 7월 신해(23일) 조의 “柎木把子”는 “싸리나무 바자”로 번역하였다. 그러니까 把子를 번역자에 따라 ‘把子(파자)’로 번역하거나 ‘바자’로 번역하는 등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그것을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이다.

3) 『承政院日記』 656책 영조 4년(雍正6/1728) 2월 무신(27일) 기사에는 裏衣를 ‘속옷’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번역도 있다는 것이다. 『承政院日記』 2676책 고종 1년(同治3/1864) 4월 정축(6일) 기사를 보면, “……仍加遺衣七稱, 上綴龍袍【肩龍】加文刺具, 中綴道袍·斡衣具, 下綴軍服·快子·腰帶【胸龍】具……”라는 문장이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承政院日記』 번역본에는 “…… 유의(遺衣) 7벌을 더하였다. 위에는 철룡포(綴龍袍)-견룡(肩龍)이다-에 문자(文刺)를 더한 것으로 하고, 가운데는 철도포(綴道袍)에 창의(斡衣)를 갖춘 것으로 하고, 아래에는 철군복(綴軍服)에 쾌자(快子)와 요대(腰帶)-흉룡(胸龍)이다-를 갖춘 것으로 하였다……”라고 번역하였다. 加文刺이 한자 차용 표기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옛말이나 현대국어의 ‘더그레’(세 자락의 옷깃)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는지 “문자(文刺)를 더한 것”과 같이 엉뚱하게 번역해 버렸다.

이상과 같이 『承政院日記』에는 한자 차용 표기가 이외로 많이 쓰였는데,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1 建築 관련 한자 차용 표기

○ …… 今十七日丑時, 風雨暴作, 丁字閣前面東邊窓戶回隻塗紙, 盡爲風雨所破, 夫莫沙二十張, 夫瓦七張, 亦爲落破, 紅門左邊柱, 亦爲折仆. …….

<『承政院日記』 335책, 숙종 15년(1689) 5월 계축(18일)>.

○ …… 蠶壇碑閣西邊春舌滲漏, 追慕洞碑閣四面牆垣, 夫防草陸張, 女防草貳張, 夫瓦陸張, 中門夫防草參張, 夫瓦貳張破傷, 流霞亭正堂北邊, 大女夫瓦各七張, 風遮草芑五浮, 條所五把, 千慕堂北邊會簷常女瓦七張, 夫瓦四張, 萬懷堂常女瓦七張, 夫瓦三張, 四面牆垣, 常女夫瓦各二十張破傷雨漏處, 三庫以上破傷處, 分付各該司, 卽速修改之意, 敢啓. …….

<『承政院日記』 1461책 정조 4년(1780) 3월 병오(27일)>.

3.1.1 瓦[디새>지새>지와], 防草·莫沙[막새], 莫沙瓦[막새디새>막새지새>막새지와] 夫瓦[수티새>수지새>수키와], 女瓦[암디새>암지새>암키와] 夫防草·夫莫沙[수막새], 女防草·女莫沙[암막새]

瓦는 현대국어 ‘기와’(한옥 지붕을 이는 데에 쓰기 위하여 흙으로 만들어 굽고

번역하였다. 그러니까 裏衣를 번역자에 따라 ‘이의’로 번역하거나 ‘속옷’으로 번역하는 등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그것을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이다.

식혀서 만든 건축 자재. 수키와와 암키와가 있음.)에 대응하는 옛말 ‘디새⁴⁾>지새>지와’를 한자를 빌려 쓴 표기이다. 夫瓦는 ‘수티새⁵⁾·수디새>수지새’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女瓦는 ‘*암티새·암디새⁶⁾’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女瓦와 夫瓦를 아울러서 女夫瓦로 썼다.

防草와 莫沙는 옛말과 현대국어 ‘막새’(기와가 쪽 이어져 형성된 기왓등이나 기왓골의 끝에 드림새를 붙여 만든 기와)⁷⁾를 한자를 빌려 쓴 표기이다. ‘막새’의 ‘새’는 ‘기와’의 옛말 ‘디새’의 ‘새’와 같은 것이다. 夫防草와 夫莫沙는 ‘수막새’, 女防草와 女莫沙는 ‘암막새’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莫沙瓦는 ‘막새디새>막새지새>막새기와’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夫莫沙瓦는 ‘수막새디새>수막새지새>수막새기와’, 女莫沙瓦는 ‘암막새디새>암막새지새>암막새기와’를 쓴 것이다.

3.1.2 大樑(대들보), 樑(보·들보), 道里(도리), 朴工·樸工(박공), 班子·斑子(반즈), 𩑦迪耳(돌쩌귀), 門隻(문짝), 屯太(둔테), 門屯太(문든테), 杖夫(당부>장부)

『承政院日記』 355책 숙종 20년(康熙33/1694) 조의 “御門西邊大樑棟上四箇退出” 등에서 확인되는 大樑은 ‘대들보’(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위하여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르는 큰 들보)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承政院日記』 239책 현종 15년(康熙13/1674) 조의 “今番則柱樑雖差小於上年, 楸長, 亦以二十餘尺爲之” 등에서 확인되는 楸는 ‘보’ 또는 ‘들보’(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질러 도리와는 ‘ㄴ’ 자 모양, 마룻대와는 ‘十’ 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의 한자 차용 표기로 쓰였다.

『承政院日記』 247책 숙종 1년(康熙14/1675) 윤 5월 무신(21일) 조의 “正殿外前面道里及樑間沙壁, 處處浮起細拆” 등에서 확인되는 道里는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斗拱은 ‘두공’(큰 규모의 목조 건물에서, 기둥 위에 지붕을 받치며 차례로 짜 올린 구조)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사전에는 이에 대응하는 한자로 枋拱, 枋工, 杜空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자 차용 표기인데, 마치 본디 한자인 듯이 기록해 놓았다.

4) ‘디새’는 ‘달+새’의 변음이다. 瓦 디새 와 仰瓦 암 童瓦 수 猫頭 마고리 又 花頭 <『訓蒙字會』(1527) 중:9>.

5) 甌 今俗呼甌瓦 수티새 <『四聲通解』(1517) 상:2>. 수디새 암디새 <『翻譯朴通事』(1510년대)』 상:68ㄴ>. 흔 막새와 수디새와 암디새오 <『朴通事諺解』(1677) 상:60ㄴ>. 瓦 수디새 <『譯語類解』(1690) 상:17ㄱ>. 瓦 수지새<『方言類釋』(1778) 유부:21ㄱ>. 瓦 수지새 <『蒙語類解補』(1790) 15ㄱ>.

6) 수디새 암디새 두 그릇 축두는 다 청류리오 <『翻譯朴通事』(1510년대)』 상:68ㄴ>. 흔 막새와 수디새와 암디새오 <『朴通事諺解』(1677) 상:60ㄴ>. 仰瓦 암디새 <『譯語類解』(1690) 상:17ㄱ>. 仰瓦 암지새 <『方言類釋』(1778) 유부:21ㄱ>.

7) 猫頭瓦 막새 <『譯語類解』(1690) 상:17ㄱ>, 花頭瓦 막새 <『譯語類解補』(1775) 13ㄱ>, 猫頭尾 막새 <『方言類釋』(1778) 신부:26ㄴ>.

斑子和 班子는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의 옛말 ‘반즈’⁸⁾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承政院日記』 1191책 영조 37년(乾隆26/1761) 3월 갑진(5일) 조의 “樓下門隻𩑦迪耳一介折落”에서 확인되는 門隻은 ‘문짝’⁹⁾>문짝’(문틀이나 창틀에 끼워서 여닫게 되어 있는 문이나 창)의 한 자 차용 표기이고, 𩑦迪耳는 ‘돌쩌귀’(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조서 후기 儀軌류에서는 𩑦迪耳 외에도 𩑦赤耳, 道乙迪耳, 道乙的耳 등으로도 쓰였다.

『承政院日記』 1191책 영조 37년(乾隆26/1761) 3월 갑진(5일) 조의 “前庫門屯太一介腐傷” 屯太和 門屯太는 ‘둔테’(문장부를 끼는 구멍이 뚫린 나무. 주로 두꺼운 널빤지로 되어 있다.)와 ‘문둔테’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家禮諺解』(1632)에서도 ‘둔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도 ‘둔테’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3.1.3 簷下(첨하), 會草音·回楚音(회춤)·會簷·回簷(회침)

簷下는 현대국어 ‘처마’(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에 대응하는 옛말 ‘첨하’¹⁰⁾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첨하’는 중국어 檐牙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첨하’를 쓴 簷下는 조선 후기 儀軌류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다. 簷下는 簷으로만 쓰이기도 했다.

會草音·回楚音·會簷·回簷은 현대국어 ‘회침’(처마가 ‘ㄱ’ 자 모양으로 꺾이어 굽은 곳)에 대응하는 표기로, 비표준어로는 ‘회춤, 회침’ 등으로도 말해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회침’은 한자어 會檐으로 쓰고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會檐이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承政院日記』에서 會簷과 回簷 외에 會草音·回楚音 등으로 네 개의 차자로 표기되었는데, 조선 후기 儀軌류와 謄錄류에서는 會草音과 會簷·回簷 외에도 會次音으로도 표기되었다. 會草音과 回楚音은 당시 한자음으로 해독해서 읽으면 ‘회춤’ 정도가 될 것이고, 會次音은 ‘회춤>회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會簷과 回簷은 ‘회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의 옛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 방언과 함남 방언에 ‘골목’을 ‘회춤’, ‘회추막’이라 하고, 전라도와 충청도 방언에 ‘고

8) 浮蓬 초개집의 역거 띄워 얹 반즈. <『譯語類解』(1690) 상:19>.

9) 扉 문짝 비 <『訓蒙字會』(1527) 중:4>.

10) 솟섬의 불을 노화시매 섬을 잡아 니티며 첨하가 초의 불서 ㄴ려져더라. <『癸丑日記』(1613) 하:30>. 滴水簷 첨하 <『譯語類解』(1690) 상:18>.

비'의 방언으로 '회춤' 등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고유어에 '굽은 곳' 정도를 뜻하는 말로 '회춤>회춤·회침'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1.4 기타

活只〔활기〕

『承政院日記』숙종 24년(康熙37/1698) 6월 병오(3일) 조의 “正殿樑上左邊活只塗灰一處剝落”과 『承政院日記』숙종 43년(1717) 6월 무자(5일) 조의 “永寧殿正殿前面東邊活只端莫沙三四張”에서 ‘活只’는 ‘활기’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이 ‘활기’는 현대국어에서 ‘활개’(윗부분 끝이 모이고 아래가 양쪽으로 벌어진 물건. 또는 그런 모양.)라 하고 있으나, 옛말에서는 ‘활기’¹¹⁾라 했다.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奎14832/1683)에 闊塔로 쓰이고, 『思陵封陵都監儀軌』(奎1482/1698)에 闊階로 쓰이고, 『肅宗祔廟都監都廳儀軌』(奎13551/1722)와 『英祖貞純后四尊號莊祖獻敬后再尊號都監儀軌』(奎13311/1783),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奎13736/1890) 등에 活只로 쓰이고, 『垂恩廟營建廳儀軌』(奎13631/1764)와 『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 권2(奎13590/1757) 등에 活岐로 쓰이고, 『仁元王后山陵都監儀軌』(奎13560/1757)과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奎13809/1843) 등에 闊只로 쓰이고, 『英祖魂殿都監儀軌』(奎13584/1776)에 滑只로 쓰이고,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권(奎13556/1801)에 活其와 活其木으로 쓰이고, 『華城城役儀軌』(1801)에 闊皆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활기’라 하고, 이것을 반영하여 活只 또는 闊只, 滑只, 活其, 活岐 등으로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기’가 17세기부터 ‘활개’ 또는 ‘활개’로 소리가 변하기 시작하여, 이것을 반영하여 闊階 또는 闊塔, 闊皆로 쓰기도 하였다. ‘활기’가 변한 ‘활개’가 그대로 현대국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抹樓〔말루〕

抹樓는 현대국어 ‘마루’(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에 대응하는 옛말 중 하나인 ‘말루’¹²⁾(‘말루’는 경기방언, 강원방언, 충청방언 등에 남아 전하고 있음.)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11) 무로 보히 블 브터 물어듀문 네 활기 疾苦를 가줄비시고(棟梁爆摧, 譬四支疾苦) <『法華經諺解』(1463) 2:125>.

12) 니인은 노쇼 업시 하 두려 마로 아래 숨으며 <『계축일기』(1613) 상:26>. 地塘板 마루 地平板 마루 <『譯語類解』(1690) 상:16ㄴ>. 底塘板 마루 <『蒙語類解』(1790) 상: 26ㄴ>.

3.2 服飾 관련 한자 차용 표기

『承政院日記』에서 服飾 관련 어휘 가운데, 고유어의 한자 차용 표기는 赤古里〔저고리>저고리〕, 赤衫·的衫〔적삼>적삼〕, 赤𦍇·裳〔치마〕, 襦赤𦍇〔한치마>한치마〕 또는 中赤莫〔둥치막>둥치막>중치막〕, 把持〔바디>바지〕, 襦把持〔한바디>한바지〕, 端衤·多壬〔다님〕, 羅兀〔너울〕 등이 있고, 차용어의 한자 차용 표기는 加文刺〔더그레〕, 帖裏·天翼·天益〔털릭〕 등이 있고, 혼종어의 한자 차용 표기는 長衣·障衣〔당옷>당옷>장옷〕, 氍衣·敝衣〔창옷>창옷〕, 周衣〔두루마기〕 등이 있다.

○ …… 實梓宮衣櫛置簿. 玉色大段中赤莫. 玉色開具袖中赤莫. 草綠開其袖中赤莫. 紫的花方袖中赤莫. 多紅宋錦段中赤莫. 多紅開其袖赤〔中〕赤莫. 豆綠宮綃袴子. 多紅廣織狹袖. 松花色廣織狹袖. 松花色葡萄文大段中赤莫. 朱黃中赤莫. 石染色稀文廣織中赤莫. 松花色綾中赤莫. 宮綃中亦莫. 藍綾中赤莫. 玉色綾中赤莫. 藍開其袖中赤莫. 藍方紗袖衣. 玉色花方袖中赤莫 二. 多紅綾背子. 藍方紗袖袂道袍. 草綠大段背子. 藍宮綃道袍. 草綠縷飛背子. 寶羅大段背子. 草綠大段赤古里. 多紅大段背子. 粉紅大段背子. 朱黃大段背子. 朱黃大段赤古里. 多紅賞賜段赤古里. 多紅賞賜段赤古里. 多紅大段背子 四. 粉紅稀文大段背子. 粉紅稀文綾背子. 松花色大段赤古里 二. 玉色綾赤古里 二. 紫的綾中赤莫. 朱黃大段中赤莫. 寶羅大段中赤莫. 松花色賞賜段中赤莫. 松花色大段中赤莫. 草綠大段中赤莫 二. 草綠雲文大段中赤莫. 草綠大段中赤莫 六. 藍廣織道袍 七. 鴉青道袍. 草綠大段背子 三. 松花色大段背子 二. 寶羅大段背子 二. 玉色綾背子. 松花色花方袖背子. 玉色大段中赤莫. 藍開其袖中赤莫. 玉色方紗袖中赤莫. 藍方紗袖中赤莫 三. 玉色方紗袖中赤莫. 寶羅大段赤古里. 玉色大段赤古里. 多紅廣織道袍內供藍廣織. 藍廣織道袍. 玉色花絲袖中赤莫. 玉色方紗袖中赤莫. 玉色綾赤古里. 玉色合絲袖赤古里. 玉色花方袖赤古里. 藍方紗袖中赤莫. 玉色方紗袖中赤莫 二. 藍花紗袖中赤莫 二. 玉色花方袖中赤莫. 藍方紗袖中赤莫. 多紅吐袖直領內供多紅吐袖. 藍方絲袖中亦莫. 玉色方紗袖中赤莫. 草綠方紗袖中赤莫. 多紅廣織道袍. 多紅大段道袍. 多紅袞龍袍 二. 草綠方紗袖中赤莫. 藍方紗袖中赤莫. 松花色背子. 草綠雲文段背子. 松花色大段中赤莫. 玉色大段中赤莫. 松花色縷飛冬衣. 藍花方紗中赤莫. 草綠方紗袖中赤莫. 藍廣織道袍 二. 紫的吐袖道袍. 鶴羅道袍 二. 藍雲文段中赤莫. 玉色龍文段中赤莫. 寶羅龍文段中赤莫. 玉色無文段中赤莫 二. 玉色有文段中赤莫. 黑色雲文段龍袍. 藍方紗袖背子. 松花色方絲袖背子. 藍大段赤古里. 草綠雲文段赤古里. 藍大段赤古里. 藍花文段赤古里. 藍有文段赤古里 五. 玉色大段中赤莫. 松花色中赤莫. 草綠絲綃赤古里. 多紅則烏紗縷飛袴 二. 松花色花絲袖中赤莫. 藍方絲袖背子. 寶羅赤古里. 藍方絲袖中赤莫 二. 多紅宮綃袂道袍. 藍方紗袖道袍. 藍方紗袖中赤莫 二. 錦袖道袍. 藍方紗袖道袍. 藍方紗袖中赤莫. 玉色花方袖中赤莫 三. 松花色方紗袖赤古里. 藍宮綃中

赤莫. 眞紅雲文段袞袍無胸排. 藍方紗紬道袍 五. 藍方紗紬袂道袍. 多紅宮綃道袍. 方紗紬道袍. 方紗紬袂道袍. 多紅大段道袍.

<『承政院日記』 572책, 경종 4년(雍正2/1724) 8월 기해(29)>.

- …… 大殿黑熊皮靽鞋一部, 中宮殿白唐皮草鞋一部, 世子宮黑熊皮靽鞋一部, 嬪宮白唐皮草鞋一部減. 端午, 大殿白苧布帖裏二次, 白苧布裏衣二次, 中宮殿白苧布衫兒二次, 白苧布赤亓二次減. 冬至, 大殿白吐紬袂把持一次, 中宮殿草綠吐紬襦赤亓一次, 紫的吐紬襦赤亓一次, 間色吐紬襦赤亓一次, 自上減下矣. …….

<『承政院日記』 674책, 영조 4년(雍正 6/1728) 11월 병인(20일)>.

- 襲小斂衣褂, 白貢緞赤衫, 白貢緞牽只, 白貢緞裏衣, 白貢緞行纏, 白貢緞足巾, 藍緞腰帶, 玉色緞端袿, 玉色袼羅緞長衣褂, 甫羅桃榴緞同衣褂, 大紅雲紋緞龍袍, 藍桃榴緞廣袖, 草綠桃榴緞廣袖, 藍萬壽紋緞鑿衣【付接】, 冒羅翼善冠【樑次鴉青合絲參朶】雅靑紗綉巾, 帳帽, 冒緞握手【內拱紅員緞】, 充耳, 玉帶【表次大紅貢緞, 內拱黑貢緞】, 珮玉【大紅貢緞】, 靴【黑貢緞白貢緞甲精具】, 赤鳥【紅貢緞】, 藍貢緞五囊【內拱大紅貢緞】, 眞紅桃榴紋緞覆衾【內拱白貢緞】, 絳紗袍【常時進御件】, 佩玉, 中單, 紫的單襯衣, 冒羅遠遊冠, 大紅雲紋緞龍袍, 藍雲紋緞加文刺, 草綠桃榴緞快子【付接】, 軍服一襲, 大紅緞帖裏, 大紅雲紋甲紗帖裏, 緞快子二件, 大紅道袍, 藍道袍, 質殺, 大紅緞褥. 倒衣, 大紅雲紋甲紗龍袍, 大紅道袍三件, 藍道袍三件, 藍鑿衣二件.

<『承政院日記』 2308책, 순조 34년(道光 14/1834) 11월 병자(15일)>.

3.2.1 赤古里(저고리), 縷非赤古里(누비저고리)

赤衫·的衫(적삼), 赤亓·裳(치마), 中赤莫(등치막>중치막), 把持·袴(바디>바지)

赤古리는 현대국어 ‘저고리’(한복 윗옷의 하나)의 옛말 ‘저구리’의 변음 ‘저고리’¹³⁾를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縷非赤古리는 현대국어 ‘누비저고리’의 옛말 ‘누비저고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赤衫과 的衫은 현대국어 ‘적삼’(윗도리에 입는 홑옷.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에 대응하는 옛말 ‘적삼’¹⁴⁾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13) 한저구리 <『翻譯老乞大』(1510년대) 하:50ㄱ-51ㄱ>. 小襖子 저구리 옷 <『譯語類解』(1690) 상:45>. 掛子 긴 저고리 <『譯語類解補』(1775) 28ㄱ>. 갓저고리 毛襦 <『國韓會語』(1895) 11>. 저고리 上衣 <『國韓會語』(1895) 255>. 현대 국어 ‘저고리’의 옛말인 ‘저구리’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18세기에는 제2음절의 모음 ‘ㄱ’이 ‘고’로 바뀐 ‘저고리’가 나타난다. ‘저고리’는 처음이었던 ‘ㅈ’이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으로 바뀌어 ‘저’와 ‘저’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19세기 문헌에 ‘저고리’로 나타나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14) 이눈 어루 할미 적삼 비러 할미 나홀 절후다 닐을 디로다(此可謂借婆衫拜婆年) <『金剛』

赤亓·裳은 현대국어는 물론 중세국어 ‘치마’를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赤의 현대 한자음은 ‘적’이고, 중세국어 한자음은 ‘적’이지만, 중국 한자음 ‘적’이나 ‘chi’의 영향, 그리고 몽골어 ‘치’의 영향으로 ‘치’로도 쓰였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국어 ‘조라치’에 대응하는 말을 쓴 詔羅赤·照刺赤¹⁵⁾·照羅赤 등에서 확인되는 ‘赤(치)’이다.

中赤莫은 현대국어 ‘중치막’(벼슬하지 아니한 선비가 소창옷 위에 덧입던 옷옷)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로, 평북방언에서 ‘등치막’을 확인할 수 있고, 中의 중세한자음의 ‘등>등’이기 때문에 ‘등치막>등치막’을 거쳐 방언에서는 ‘등치막’, 표준어에서는 ‘중치막’으로 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572책 경종 4년(雍正2/1724) 8월 을미(25일) 조 기사를 보면, “次鋪紫的寶羅草綠榆綠中衣【諺所謂中赤莫也】”라 했는데, 이것은 中衣(등의>중의: 남자의 여름 홑바지)를 세속에서 中赤莫(등치막>중치막)이라 한다고 한 것이다.¹⁶⁾

把持와 袴는 현대국어 ‘바지’의 옛말 ‘바디’¹⁷⁾를 한자를 빌려 쓴 표기이다. 單把持와 單袴는 ‘홑옷-->홑옷-->홑-->홑-->홑바지’, 袂把持는 ‘겹바디>겹바지’, 襦把持는 ‘할바디>하바지’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3.2.2 加文刺, 帖裏·天翼·天益, 帖裏衣

加文刺¹⁸⁾은 조선시대에 군사, 나장 따위의 겉옷 또는 옷옷, 또는 公服이나 團領 안에 받쳐 입는 옷옷을 이르는 ‘더그레’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사전에도 ‘더그레’라 하고 있지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도 ‘더그레’라고 하였다. 이 ‘더그레’는 중세 몽골어 ‘degelei’에서 들어온 차용어이다.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1671)을 보면, 加文刺 2벌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다음과 같다.

加文刺二次 所入 多紅雲紋大段十九尺 紅眞絲一錢二分 白眞絲一里 同正白綃長一尺五寸廣二寸五分 十一升多紅吐紬三十五尺 內拱多紅鼎紬三十八尺 紅眞絲一錢四分

經三家解』(1482) 3:12>.

15) 照刺赤은 照刺赤으로 잘못 이해하고 쓴 사전도 보인다. 이것은 水刺을 水刺로 잘못 이해하여 쓴 것과 같은 것이다.

16)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본을 보면 中赤莫을 ‘중치막’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중치마’로 번역한 것도 있으나, 현대국어에 ‘중치마’는 없다. 『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儀軌』(奎13516/1632) “布衣各一次中赤亓”라고 하여, 이 中赤亓는 中赤莫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袴 바디 고 <『新增類合』(1576) 상:31>.

18) 加文刺을 加文刺로 잘못 이해하여 쓰거나, ‘가문척’ 또는 ‘가문자’라 읽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다. 加文刺의 현대 한자음은 ‘가문랄’이고, 이것은 ‘더그레’를 쓴 것이기 때문에 ‘더그레’로 번역해야 한다.

紅鄉絲五分 同正白綃長一尺五寸廣二寸五分【以上尙衣院】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1671)>

『承政院日記』에서 帖裏를 天翼 또는 天益으로도 표기하였다. 帖裏는 帖裡로도 표기되었는데, 현대국어 ‘털릭’(무관이 입던 公服. 直領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에 대응하는 옛말 ‘털릭’¹⁹⁾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이말은 중세 몽골어 terlig에서 기원한 것이고 한다. ‘털릭’이 근대국어에서 ‘*털릭’으로 변한 뒤에 현대국어 ‘철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世宗實錄』부터 『純宗實錄』까지 帖裏로 표기되고, 『景宗實錄』 4권 경종1년 6월 갑오(4일) 조부터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高宗實錄』 등에 가끔 天翼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宣祖實錄』부터 『光海君日記』, 『純祖實錄』 등에서 간혹 天益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세국어 ‘털릭’이 근대국어 시기에 ‘*턴릭>*천릭>*천익>*천익’ 정도로 발음되어, 帖裏가 天翼 또는 天益으로까지 쓰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承政院日記』 경종 4년(雍正2/1724) 8월 병신(26일) 조에서도 “貼裏, 俗所謂 天翼”이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帖裏는 帖裏衣라고도 썼다. 『承政院日記』 144책 ‘효종 8년(順治14/1657) 1월 계축(10일)’ 조에 “我國帖裏衣, 初與胡帖裏, 同其制”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처음에 몽골(또는 원나라)에서 기원하여 들어왔을 때는 복제가 비슷했으나, 나중에는 조금 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1671)을 보면, 帖裏 2벌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다음과 같다.

帖裏二次 所入 草綠雲紋匹段二十三尺七寸 內拱多紅綃二十三尺七寸 紅紬絲一淺五分 腰線色絲一兩五淺五分 中綿子一斤九兩 月々只紫的絲五分 草綠眞絲一淺五分 十一升 軟草綠吐紬四十五尺 內拱紅鼎紬四十七尺九寸 中綿子一斤九兩 草糸絲一淺八分 紅紬絲一淺八分【以上尙衣院】 楮注紙二卷【長興庫】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1671)>.

3.2.3 端衽 · 多壬

『承政院日記』에서 확인되는 端衽 또는 多壬은 현대국어 ‘대님’(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매는 끈)에 대응하

19) 네 다홍 비젯 금으로 흥비 뽀 털릭과 밧고져 내 털리기 어느 네 슈질흔 털리게 미츠료. (胸背帖裏對換着 我的帖裏怎麼赶上你的綉帖裏 你的大紅織金胸背帖裏對換着) <『翻譯朴通事』(중종 때) 상:72>.

는 옛말 ‘다님’²⁰⁾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奎13923/1786)에는 單衽, 『禮葬廳謄錄』(奎13013/1898)에는 多任으로도 표기되었다.²¹⁾

3.2.4 기타

羅兀(너울)

羅兀은 현대국어의 ‘너울’(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에 쓰는 물건)에 대응하는 말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家禮諺解』(1632)에서 ‘너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으니, 적어도 17세기부터 ‘너울’이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宣祖實錄』 162권 ‘선조 36년(1603) 5월 정사(2일)’ 조 기사와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奎13061/1638)과 『肅宗仁顯后嘉禮都監都廳儀軌』(奎13084/1681),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奎13109/1744) 등에서 汝火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太宗實錄』 15권 ‘태종 8년(1408) 5월 계유(25일)’ 조 기사와 『中宗實錄』 39권 ‘중종 15년(1520) 5월 무술(11일)’ 조 기사, 그리고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奎13062/1645) 등에서 羅火로 쓴 것으로 볼 때, ‘너울’은 원래 ‘*너블>*너블’을 거쳐 ‘너울’로 정착한 것으로 추측된다.

羅兀의 兀은 현대 한자음은 물론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의 한자음이 ‘울’이었지만, ‘羅兀(너울)’의 ‘울’의 한자음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3.3 飲食 관련 한자 차용 표기

○ ……其中𩵓麪·𩵓蒸及挾卓所排, 則返虞後無進用之事, 而魂宮初虞祭爲始. 元床器數中, 細麪一器, 獐肉湯·軟肉湯·生鮮湯各一器, 獐肉炙·生鮮炙·生雉炙各一器, 獐肉熟片·獐頭熟片·獐內熟片各一器, 煎油魚·氷煮片是醋薑各一器, 墓所元床器數中, 細麪·煎蒸·雜湯·菜各一器進用云…….

<『承政院日記』 677책 영조 5년(雍正7/1729) 1월 계해(18일)>

○ ……又命都監設氷于堂中, 仍行襲奠, 攸司進禮饌, 藥果三器, 中朴桂二器, 紅散子

20) 小帶子 다님 𩵓 <『譯語類解』(1690) 상:45ㄱ>. 腿帶 다님 𩵓 <『譯語類解補』(1775) 28ㄴ>. 腿帶子 다님 𩵓 <『方言類釋』(1778) 유부:23ㄴ>.

21) 조선시대 의궤류에서 多任板(다림널/다림판)과 多任鐵(다림쇠), 多任漚(다림줄) 등에서 확인되는 多任은 ‘다림’의 한자 차용 표기로 쓰였다

一器, 白散子一器, 松古餅一器, 山蔘餅一器, 自朴餅一器, 煎蒸一器, 雜湯一器, 茶
糲一器, 實柏子一器, 實胡桃一器, 實榧子一器, 黃栗一器, 大棗一器, 清酒一瓶. 已
上奉常寺進排 黃燭三丁. 義盈庫進排.
<『承政院日記』1600책, 정조 10년(乾隆51/1786) 5월 계축(11일)>.

○ 大嬪宮祭品別單, 四享祭, 小朴桂一器, 紅散子一器, 白散子一器, 餅二器【切餅實
煮】湯二器【豆泡生鮮】片肉一器【猪肉】炙一器【猪肉】, 細糲一器, 醋薑一器, 實
果三器, 清酒一瓶, 鬱金酒一瓶, 白幣一端, 四燭二丁. 四名日祭, 藥果一器, 餅一器
【霜花】, 飯一器, 糲一器, 湯三色【卜只煎蒸白蒸】, 菜二器【藁古菩萁】, 炙一器【豆
泡】, 芥醬一器, 實果三色, 清酒一瓶, 四燭二丁. 忌辰祭, 小朴桂一器, 紅散子一器,
白散子一器, 餅二器【切餅實煮】, 飯一器, 細糲一器, 湯三器【卜只煎蒸豆泡】, 菜三
器【藁古菩萁加土里】, 炙一器【豆泡】, 芥醬一器, 實果三色, 清酒一瓶, 四兩燭二丁.
<『承政院日記』1691책, 정조 15년(乾隆56/1791) 6월 경오(27일)>.

3.3.1 粿(걸국수), 細粿(실국수), 粿蒸(걸)

현대국어 ‘국수’에 대응하는 옛말은 ‘국수’²²⁾로 실현되고, 방언에서는 ‘국수, 국
쉬, 국시’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한자로는 麵 또는 麪, 糲, 面 등으로 썼다.
『承政院日記』에서는 粿만 확인되나,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奎13919/1645)
에는 粿로 쓰이고, 『眞宗殯宮都監儀軌』(奎14857/1728)에는 巨乙糲로 쓰이
고, 『孝宗寧陵遷陵都監嬪殿所儀軌』(奎13533/1673)에는 粿로 쓰이고, 『仁宣后
殯殿都監儀軌』(奎13535/1674)에는 舉乙糲로 쓰인 것으로 보아, 粿와 粿, 粿, 粿, 舉乙糲, 巨乙糲, 粿, 粿 등은 모두 “*걸국수>*걸국수”의 한자 차용
표기로 보인다.²³⁾
그러나 현대 국어사전이나 음식 용어 사전, 한국한자어사전, 옛말 사전 등에서

22) 우리 고령 사료문 존 국수 머기 닉디 못ㅎ애라.(我高麗人不慣喫濕麵) <『翻譯老乞大』
(1510년대) 상:60>.
寒食麵 한식날 밍근 밀ㄱ국수 <『東醫寶鑑』(1613) 1:24ㄴ>.
제물엿 갈국수와 ㅁ국수와 象眼 ㄱㅅ 棋子和 柳葉 ㄱㅅ 棋子和(水滑經帶面 掛面 象眼棋子 柳葉棋子)
<『朴通事諺解』(1677) 하:32>.

23) 『承政院日記』번역본(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U0_A05_01A_18A_00210)에서는 현대 한자음 그대로 ‘걸면, 걸증’으로 번역하
였다.
<『承政院日記』1076책 영조 27년(건륭16/1751)> 11월 정축(15) 조를 보면, “凡奠所謂
粿, 純色, 而至於細粿, 卽湯粿, 而今日羹羹卽湯粿, 而斂前則白粿, 故意或粿, 誤盛磁
器”(무릇 제사를 지낼 때는 소위 粿를 純色으로 하고 細粿에 이르러서는 곧 湯粿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羹羹에는 湯粿으로 하고, 斂 전에는 白粿으로 하였으니, 고의로
혹 粿를 잘못하여 磁器에 담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어휘를 찾을 수가 없다.
이 ‘粿·粿’과 관련된 것으로 粿·粿이 있다. 粿은 현대국어 ‘찜’(1. 여러
가지 양념을 한 고기나 채소를 찌거나 국물이 바득하게 삶은 음식. 2. 찌거나 국물
이 바득하게 삶은 음식을 나타내는 말)에 대응하는 옛말은 ‘찜’²⁴⁾을 쓴 것이다.
『承政院日記』에서는 粿만 확인되나, 『眞宗殯宮都監儀軌』(奎14857/1728)에는
巨乙蒸으로 쓰이고, 『孝宗寧陵遷陵都監嬪殿所儀軌』(奎13533/1673)에는 粿로
쓰이고, 『仁祖長陵遷陵都監都廳儀軌』(奎14597/1731)에는 舉乙蒸 등으로 쓴 것으
로 보아, 粿와 粿, 舉乙蒸, 巨乙蒸 등은 모두 “*걸찜>*걸찜”의 한자 차용 표기
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 국어사전이나 음식 용어 사전, 한국한자어사전, 옛말 사전 등에서
이에 대응하는 어휘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음식들은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承政院日
記』1077책 영조 27년(乾隆16/1751) 12월 갑인(23일) 조에, “祭物中粿·粿名
號, 亦怪異矣(제물 가운데 粿와 粿이라 부르는 것도 괴이하다.)”라고 하고,
“上命書傳教曰, 凡大小祭奠, 所謂粿·粿, 此後竝除事, 既承慈旨, 分付該曹(上
命을 書傳으로 교시하기를, 무릇 대소의 祭奠에 있어서, 소위 粿와 粿은 이후
에 모두 없애라고 하였다. 이 慈旨를 받르어 該曹에 분부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러니까 18세기 중반부터 祭奠에 粿와 粿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문제가 이 粿와 粿에 보이는 ‘粿’이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만든 것을 뜻하
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자료에서도 이 어휘들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細粿은 현대국어의 ‘실국수’에 대응하는 옛말 “*실국수”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細粿의 한자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일부 방언에서는 ‘세면’ 또는 ‘시면’ 등으로 말
해지고 있고, 絲粿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사면’으로 전해지고 있다.

3.3.2 朴桂(박계), 中朴桂(등박계>중박계), 散子·餠子(산조), 味子(미조), 助岳(조약)

『承政院日記』를 보다 보면, 조선시대 우리 떡 이름 가운데 朴桂와 中朴桂·中
桂, 小朴桂·小桂 등으로 쓰인 것이 있다. 이들의 현대 한자음은 각각 ‘박계, 중박
계·중계, 소박계·소계’이다.

24) 奇特한 지조와 큰 그르시 다 흘러가 물에 빠는 迷惑한 소니며 밥 니르는 주으린 아비
드외눗다(奇才茂器, 皆流爲蒸砂迷客, 說食飢夫) <『능엄경언해』1:3>. 七月ㅅ 옛셋날 더운
氣運이 빠는 돛호미 ㅅㅅ외니(七月六日苦炎蒸) <『杜詩諺解-초』10:28>. 싱선 ㅅㅅ니와 쇠
고기 구으니와(蒸鮮魚 爛牛肉) <『翻譯朴通事』(1517) 상:5>.
술위에 실여 저자해 아츰미 드리 가 있다가 아니 한 수시에 저기로니 죠치로니 열치로니
달힘 ㅅㅅ미로니 가지가짓 일흠 가고 <『七大萬法』(1569) 13>.

현대 국어사전에서 이들에 대응하는 어휘를 찾아보면, ‘중배끼·중박기, 中桂, 中桂果’가 등재되어 있고, 이들의 표준어는 ‘중배끼’(유밀과의 하나. 밀가루를 꿀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네모지게 잘라 기름에 지져 만든다.)로 등재되어 있다.

散子和 餸子是 현대국어 ‘산자’(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납작하게 만들어 말린 것을 기름에 튀기고 꿀을 바른 후 그 앞뒤에 튀긴 밥풀이나 깨를 붙여 만든 유밀과의 하나. 흰색과 붉은색의 것이 보통이며, 제물(祭物)에도 쓴다.)에 대응하는 옛말 ‘산즈’²⁵⁾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색깔에 따라 紅散子和 白散子 등으로 나뉜다.

味子是 한과의 하나인 옛말 ‘미즈’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색깔에 따라 紅味子和 白味子, 赤味子 등으로 나뉜다. 味子是 다른 자료에서는 味子兒(赤味子兒, 白味子兒, 油沙味子兒, 松古味子兒, 栗味子兒 등)로도 표기되었다.

助岳은 현대국어 ‘주악’(웃기떡의 하나. 찹쌀가루에 대추를 이겨 섞고 꿀에 반죽하여 깨소나 팔소를 넣어 송편처럼 만든 다음, 기름에 지진다.)에 대응하는 옛말 ‘조악’²⁶⁾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조악’에는 大棗助岳, 甘苔助岳, 黃助岳 등이 있었다.

3.3.3 雪只(설기), 自朴餅(*자배기떡>*자배기떡), 松古餅(*송고떡>*송고떡), 氷煮(빙자), 實煮-·實煮餅(빈자-·빈자떡)

현대국어 ‘떡’에 대응하는 옛말은 ‘씩’²⁷⁾인데, 한자로 쓸 때는 餅으로 썼다.

雪只는 현대국어 ‘설기’에 대응하는 근대국어 ‘설기’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근대국어에서는 ‘설교’²⁸⁾라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承政院日記』 1746책 정조 19년(건륭60/1795) 6월 정유(18일) 조에 ‘白雪只·密雪只·石茸雪只·辛甘菜雪只·荳子雪只·密粘雪只·雜果粘雪只·盒餅荳子粘雪只’를 확인할 수 있고, 『園幸乙卯整理儀軌』(奎14532/1795)에서도 ‘白雪只·密雪只·石耳雪只·辛甘草雪只·荳子雪只·密粘雪只·雜果粘雪只·荳子粘雪只’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18세기 말에는 ‘설교’가 ‘설기’로 소리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5) 葡萄糖纏 깨 못친 포도 빗 산즈 <『漢清文鑑』(1779) 15:21>.

26) 餃子 조악 <『漢清文鑑』(1748)상:59>. <『漢清文鑑』(1779) 12:47>

27) 餸 씩소 산……餸 씩소 함 <『訓蒙字會』(1527)』 중:10>.

28) 雪糕 설교 <『譯語類解』(1690) 상:51>.

근대국어 시기의 자료에서, 雪糕는 현대국어 ‘설기’(시루떡의 하나. 멥쌀가루를 쪄를 얇게 잡아 쪄마다 고물 대신 흰 종이를 깔고, 물 또는 설탕물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찌낸다.)에 대응하는 근대국어 ‘설교’의 변음인 ‘설기’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白雪糕는 ‘빅설교’의 표기로, ‘백설기’의 이전 말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 사전에는 白雪糕가 시루떡의 하나라고만 되어 있는데, 『承政院日記』 159책 현종 즉위년(順治16/1659) 12월 기축(3일) 기사 등에서 확인되는 白雪糕는 藥劑의 하나로 쓰였으니 주의해야 한다.

自朴餅은 ‘*자배기떡>*자배기떡’ 정도의 고유어를 한자를 빌려 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다른 儀軌류에서는 自朴餅 외에도 煮朴餅으로도 쓰였다. 自朴과 煮朴은 현대국어 ‘자배기’(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를 쓴 것으로, 이 ‘자배기’는 自朴只, 煮朴只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떡은 ‘자배기’ 모양으로 만든 떡으로, 찹쌀가루(粘米)에 물을 넣어 반죽하고, 꿀(淸蜜)과 참깨(眞荳), 대추, 콩가루 따위를 넣어 자배기 모양의 團飡로 만들어 낸 후 참기름(眞油)에 부쳐 낸 것을 이른다.

『仁元王后進香臚錄』(奎12993/1757)에 따르면, 재료에 따라 찹쌀가루만 넣은 白米自朴餅, 찹쌀가루와 唐米가루를 섞은 唐米自朴餅, 찹쌀가루에 감태가루를 넣은 甘苔自朴餅, 찹쌀가루에 송기자루를 넣은 松古自朴餅, 찹쌀가루에 은행을 넣은 銀杏自朴餅 등이 있었다. 『日省錄』(奎12811) ‘1795년 1월 갑진(21일) 조를 보면, 대추(大棗)를 넣은 大棗自朴餅도 보인다.

『承政院日記』에서는 松古餅과 松糕餅, 松膏餅 등 세 표기가 아울러 보이는데, 이것은 현대국어 ‘송기떡’에 대응하는 옛말 ‘*송고떡>*송고떡’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송기’는 소나무의 속껍질로, 찹쌀가루와 함께 섞어서 떡이나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현대 국어사전에는 ‘송기(松肌)’와 ‘송고(松膏)’, ‘송기떡(松肌-)’과 ‘송기병(松肌餅)’만 등재되어 있고, 충남방언으로 ‘송고떡’, 강원방언으로 ‘송구떡’ 등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자료를 보면, 松古餅 또는 松膏餅 등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송고떡’이라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송기떡’은 ‘송고떡’의 변음으로 추정된다.

『承政院日記』에서는 氷煮와 實煮는 각각 현대국어 ‘빈대떡’의 ‘빈대’의 옛말 ‘빙자’와 ‘빈자>빈자’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日省錄』(奎12811) 1795년 1월 갑진(21일) 조를 보면, ‘彬煮’로도 쓰였다. ‘빈대떡’의 ‘빈대’는 중국어 한자어 ‘餅餌’가 들어와서 『譯語類解』(1690/상:51)에서 한자어 餅餌에 대응하는 ‘빙자’를 확인할 수 있다. 氷煮는 바로 ‘빙자’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고, ‘빙자’가 나중에 ‘빈자>빈자’로 바뀌면서 이것을 반영한 차자표기가 實煮와 彬煮이고, 이 ‘빈자>빈대’가 나중에 ‘빈대’로 변하고, 여기에 우리말 ‘떡’이 덧붙은 말이 현대국어 ‘빈대떡’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眞宗殯宮都監儀軌』(奎14857/1728)와 『承政院日記』 677책 영조 5년(雍正7/1729) 1월 계해(18일) 조에 氷煮로 쓰이고, 『承政院日記』 1691책 정조 15년(乾隆56/1791) 6월 경오(27일) 조에 實煮로 쓰이고, 『文祖追崇都監儀軌』(奎13396/1835)에는 實煮餅으로 쓰였다. 또한 彬煮 등으로 쓰였다. 이로 보아 18세기 중반까지는 ‘빙자’라 하여 氷煮로 쓰이고, 18세기 중후반부터 ‘빙자’가 ‘빈자’로 소리가 변하여 이것을 반영하여 實煮 또는 彬煮 등으로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3.3.4 기타

煎油兒·煎油魚는 현대국어 ‘저냐’(얇게 저민 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섞워 기름에 지진 음식)에 대응하는 옛말 ‘전유○>전유어’ 등에 대응하는 한자표기이다. 다른 자료에서는 煎油花로도 표기되었다.

𩵑非蒸은 현대국어 ‘갈비찜’에 대응하는 옛말 ‘갈비뽕’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ト只는 현대국어 ‘볶이’에 대응하는 옛말 ‘볶기’ 또는 ‘볶이’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한자로는 炒로 썼다.

3.4 그릇(器皿) 관련 한자 차용 표기

○ ……其所失之物, 非但鉢盤·大楪各一…….
 <『承政院日記』 1115책 영조 31년(건륭20/1755) 1월 무자(14일)>

○ ……從享位白沙盞二箇·白砂碗三箇·白砂大接一箇破傷, 趁卽改備修補之意, 分付各該司, 何如…….
 <『承政院日記』 1412책 정조 2년(乾隆43/1778) 1월 임오(21일)>.

○ ……牛鼎·猪鼎各一, 羊鼎二耳竝破, 大鼎一, 肩華各五箇, 匕二箇, 曲水, 油芑三浮, 圓羃十箇, 方羃七箇, 篚四箇, 鼎羃二箇, 沙磁碗三立, 沙大貼一立…….
 <『承政院日記』 1575책 정조 9년(乾隆50/1785) 1월 무인(28일)>

○ ……甲礪砂鉢永麵一器, 甲礪砂鉢藥果一器高八寸…….
 <『承政院日記』 1746책 정조 19년(건륭60/1795) 6월 정유(18일)>

○ ……砂分兒三箇, 砂碗五箇, 砂大楪五箇, 砂楪匙五箇, 壇上方甌十立, 甲黃幕一浮三十一幅內半幅…….
 <『承政院日記』 1758책 정조 20년(嘉慶1년/1796) 1월 병자(29일)>

3.4.1 沙鉢·砂鉢(사발), 大貼·大楪(대접), 大接(대접>대접), 貼匙·楪匙(접시), 接匙(접시>접시)

沙鉢과 砂鉢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까지 ‘사발’(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위는 넓고 아래는 좁으며 굽이 있다.)이라 했는데, 이 ‘사발’을 한자를 빌려 쓴 것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어에서는 ‘사발’을 碗 또는 大碗이라 했다.

大貼은 현대국어 ‘대접’(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 국이나 물 따위를 담는 데 쓴다.)에 대응하는 옛말 ‘대접’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함북 방언과 중국 길림성 방언에서 ‘대접사발’을 확인할 수 있고, 평북방언에서 ‘대접’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儀軌류를 살펴보면, 17세기 자료는 물론 18세기, 19세기 자료에서도 大貼으로 쓴 것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방언에서 ‘대접>대접>대접’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大貼의 근대국어 시기 한자음은 ‘대텃’이지만 ‘대접’을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텃’이 근대국어 시기에 ‘대텃’을 거쳐 ‘대접’으로 소리가 바뀌었다.

大楪과 大接이 바로 그 ‘대접’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그런데 楪의 현대 한자음은 ‘접’이지만, 중세국어 시기와 근대국어 시기의 한자음은 ‘텃’²⁹⁾이었으므로, 大楪도 원래 ‘대텃’을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貼匙는 현대국어 ‘접시’(운두가 낮고 납작한 그릇. 반찬이나 과일, 떡 따위를 담는 데 쓴다.)에 대응하는 옛말 ‘텃시’³⁰⁾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이 ‘텃시’는 중국어 楪子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大貼의 貼과 같이 貼匙의 貼도 현대 한자음은 ‘첩’이고,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 한자음은 ‘텃’이지만, ‘텃’을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4.2 鍾子【종즈】, 分兒【푼○>푼ㅅ】, 砂分兒【사푼ㅅ>사푼즈】

鍾子是 현대국어 ‘종지’(간장·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종발보다 작은 그릇)에 대응하는 옛말 ‘종즈’³¹⁾의 한자 차용 표기로, 중국어 鍾子の 한자음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종지’에 대한 다른 방언으로 ‘종제기’(또는 종재기: 강원, 경기, 경상, 전북, 제주, 충청)가 전하는데 이것도 ‘종즈’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分兒는 현대국어 ‘푼주’(아가리는 넓고 밑은 좁은 너부죽한 사기그릇)에 대응하는 옛말 ‘푼○>푼ㅅ>푼즈’³²⁾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푼자’는 비표준어로 되어 있다. 砂分兒는 현대국어 ‘사기그릇’(고령토, 장식, 석영 따위의 가루를 빚어서 구워 만든, 희고 매끄러운 그릇. 또는 그 재료로 만든 물건)에 대응하는 옛말 ‘사푼즈’에 바로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국어에서 ‘푼주’ 또는

29) 楪 텃시 텃 木楪·瓮楪 <『訓蒙字會』(1527) 중:6>. 楪 텃시 텃<『倭語類解』(숙종 때) 하:14>.

30) 이 아히를 사발·텃시 주워 가져가게 ㅎ라(與這小的碗楪將去) <『翻譯老乞大』(1517) 상:45>. 초긔 사텃시·나모텃시·웃칠흔 텃시(瓷楪子·木楪子·漆楪子) <『翻譯老乞大』(1517) 하:33>. 楪 텃시 텃 木楪·瓮楪 <『訓蒙字會』(1527) 중:6>. 楪 텃시 텃<『倭語類解』(숙종 때) 하:14>.

31) 鍾子 종즈 <『譯語類解』(1690) 하:13>.

32) 磁盆 사푼즈 <『漢清文鑑』(1748)하:15>.

‘푼자’라고 하고 있으니, ‘사푼즈’는 ‘사푼주’ 또는 ‘사푼자’라 할 듯하나, 현대 국어 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다.

分兒와 砂分兒의 兒은 현대 한자음은 ‘아’이지만, 옛 한자음은 ‘으’ 또는 ‘ㅅ’로 실현되었다.

3.4.3 東海(동히>동히), 陶東海(딜동히>딜동히), 所羅(소라)

東海는 ‘동이(질그릇의 하나. 흔히 물 길는 데 쓰는 것으로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³³⁾의 옛말 ‘동히>동히’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고, 陶東海는 ‘질동이’의 옛말 ‘딜동히>딜동히’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所羅는 ‘소래(운두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독의 뚜껑이나 그릇으로 쓴다.)’의 옛말 ‘소라’³⁴⁾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크기에 따라 大所羅, 中所羅, 小所羅 등으로 쓰였다.

3.4.4 기타

沙用은 현대국어 ‘새옹(놋쇠로 만든 작은 솥.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바닥이 편평하며 전과 뚜껑이 있다. 흔히 밥을 지어서 그대로 가져다가 상에 올려 놓는다.)’의 옛말 ‘새옹>사옹’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耳膳은 ‘귀때가 달린 복자(기름을 되는 데 쓰는 그릇. 모양이 접시와 비슷하고 한쪽에 귀때가 붙어 있다.)’로, ‘귀복즈’³⁵⁾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水甕은 ‘물독’(물을 담아 두는 독)의 옛말 ‘물독>물독’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3.5 道具 관련 한자 차용 표기

○ ……壇上黃幕一浮三十一幅三十尺道里具, 竝改染, 二幅改備, 黃帳一浮三十四幅七

33) 𣎵독이 업거든 𣎵해 내야 동히로 둑고 <『救急簡易方』(1489) 1:112ㄴ>. 동히로 머리 우희 므를 이느니 <『飢譯老乞大』(1510년대) 상:36ㄴ>. 盆 동히 분 <『新增類舍』(1576) 상:27ㄱ>. 여닐굽 소솥 글혀 즈의 업시호고 삼분지일만 동히에 붓고 <『諺解痘瘡集要』(1608) 하:44ㄴ>. 𣎵 말을 물 두 동히에 달혀 𣎵 동히에 니르게 호야 <『馬經諺解』(17세기) 하:116ㄴ>. 瓦盆 동히 <『蒙語類解』(1790) 하:10ㄴ>.

34) ㅅㅍ 파 힌 민 열 줄기를 거웃 조쳐 구리 소라에 므레 글혀 <『救急方諺解』(1466) 하:91>. ㅼ을 ㅅㅍ기 기름 ㅅㅅ기 다몬 소라를 ㅅㅅ쳐 𣎵오디 <『七大萬法』(1569) 22>. 세슈 드리우올 시 저므니는 소라를 받들고(進盥, 少者奉漿) <『小學諺解』(1586) 2:3>. 洗臉盆 세슈소라 瓦盆 𣎵소라 <『譯語類解』(1690) 하:13>.

35) 明流子 복즈 <『漢清文鑑』(1779) 11:39>.

尺四寸道里具, 竝改染, 一幅改備, 內簷黃帳二浮各十一幅八尺四寸道里具, 竝改染, 一幅改備, 四十帳付油遮日一浮道里具改備, 白布遮日一浮五十幅六十尺道里具改備, 白木內揮帳二浮各十四幅四十五尺道里具內 六幅改備, 白木外揮帳二浮各十四幅六十五尺道里具內 四幅改備, 黃綿絲中束蓑二艮衣, 小束蓑二艮衣, 三甲所一艮衣, 廣別大束蓑一艮衣, 大束蓑二艮衣, 中束蓑二艮衣, 小束蓑三艮衣, 從享位油遮日二十帳付二浮道里具內 一浮中束蓑一艮衣, 登軒架白布遮日二浮各二十五幅二十五尺內 十幅中束蓑一艮衣, 典祀廳二十張付油遮日一浮道里具, 小束蓑一艮衣, 九幅白木袱一件, 三甲所十艮衣, 鎌子二箇, 木把槽一部奉室風遮草茈二浮, 御齋室風遮草茈二浮, 典祀廳仰遮油茈一浮竝破, 趁卽改備修補之意, 分付各該司, 何如…….

<『承政院日記』1686책 정조 15년(乾隆56/1791) 1월 신축(26일)>

3.5.1 把子(바즈), 木把子(나모바즈) / 杷槽·把槽(바조), 木杷槽·木把槽(나모바조)

『承政院日記』에서 “且大輦體重, 擔軍多至二百餘名, 躡踏之際, 結木把子, 難保其完全(大輦가 무거워서 멜꾼이 많게는 200여 명이 이르러서 짓밟을 때 木把子를 엮어서 그것이 완전하기를 보전하기 어려워서)”, “難備之物, 計數積置, 其餘雜木及破毀把子……(갖추기 어려운 물품을 헤아려 쌓아두고, 그 나머지 雜木과 부서진 把子……)”, “各處橋梁造排, 露梁浮橋用餘長木三千十四箇, 把子十三浮……(각처 橋梁을 만들어서 놓았는데, 露梁의 뜬 다리는 쓰다 남은 長木 3,014개, 把子 13뿔……)”, “垣牆把子應撤處, 一百七十二間……(담울타리 바자를 당연히 없앤 곳이 172칸이고……)”, “令紫門, 爲先以把子圍排……(紫門監으로 하여금 먼저 바자울로 설치하게 하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把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把子는 모두 현대국어 ‘바자’(대, 갈대, 수수깡, 싸리, 나무 따위로 받쳐엮거나 걸어서 만든 물건. 울타리나 울을 만드는 데 쓰인다.)에 대응하는 옛말 ‘바즈’³⁶⁾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것은 근대국어에서 ‘바조’ 또는 ‘바조울’이라 하다가, 현대국어의 ‘바자’와 ‘바자울’로 이어졌다. 把의 현대 한자음은 ‘파’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우리말 ‘바’의 한자 차용 표기로 많이 쓰였다. 子의 현대 한자음은 ‘자’이지만, 중세국어 한자음은 ‘즈’여서, ‘즈’의 한자 차용 표기로 많이 쓰였다.

특히 이때의 把子和 木把子는 헤아리는 단위의 말로 浮(쑤>뿔)(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을 헤아릴 때 쓰는 말)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여러 儀軌류를 살펴보면, 木把子도 部나 坐, 介, 浮 등으로 헤아렸는데, 浮로 헤아린 것은 주로 柎木(뉴목: 감탕나무)으로 만들어서 門扉(문비: 문짝) 등으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36) 더 西南 모해 바즈문 남녁 조고맷 𣎵문이 그라(那西南角上芭籬門南邊小板門兒便是 <『飢譯老乞大』(1517) 하:1>. 芭 바조 파 籬 바조 리 <『訓蒙字會』(1527) 중:4>. 芭籬 바조울 <『물보』(조선 후기) 하:5>.

『明溫公主房喪葬禮騰錄』(古4255-3/1833)에서 확인할 수 있는 柎木把子圍는 ‘柎木’으로 만든 바조울(바자울)’을 쓴 것이다. 『仁嬪上諡封園都監儀軌』(奎13493/1755)의 “假家材木編結木把子散子等物”에서 확인할 수 있는 木把子是 假家 材木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把子와는 다른 표기인 杷槽·把槽, 木杷槽·木把槽는 주로 나무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물통을 뜻하는 ‘바조’의 표기로 쓰였다. 현대국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말이 없다.

『承政院日記』에서 “典祀廳仰遮油芑一浮, 祭器修正木杷槽一箇, 竝破, 改備……(典祀廳에 별이나 비가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치는 油芑 1부, 祭器를 修正하는 木把槽 1개가 모두 부서져서 고쳐서 갖춰야 하고……)”, “齋室風遮草芑三浮, 木把槽一坐, 竝破(齋室의 風遮인 草芑 3부)”, “典祀廳二十張付油遮日一浮道里具, 小束蓑一良衣, 九幅白木袱一件, 三甲所十良衣, 鎌子二箇, 木把槽一部, 奉室風遮草芑二浮, 御齋室風遮草芑二浮, 典祀廳仰遮油芑一浮 竝破……(典祀廳……木把槽 1부……등이 모두 부서져서……)” 등에서 확인되는 木把槽와 木杷槽는 나무를 이용하여 ‘바조’ 형태로 만든 물통을 이르는 ‘*나모바조’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라 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에서는 주로 把槽와 杷槽, 木把槽와 木杷槽로 쓰였으나, 조선 후기의 의궤류에서는 이들 외에도 波槽·把曹·波漕·杷槽·破槽, 木把曹·木波槽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크기에 따라 大把槽·大波槽, 中把槽·中波槽, 小把槽, 大木波槽, 中木波槽, 길이에 따라 長把槽 등으로 쓰였다. 이것을 받치는 것은 ‘받침’이라 했는데 所枕으로 표기하였다. 이때의 木把槽·木杷槽는 헤아리는 단위의 말로 箇[개] 또는 坐[좌], 浮[부], 部[부] 등을 썼다.

조선 후기 儀軌류에서 木波槽桶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무를 ‘바조’로 엮어 만든 물통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는 木把槽나 木波槽로 쓰인 것이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木把槽桶이나 木波槽桶을 뜻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尊崇都監儀軌(1747)』 ‘乾隆十六年二月日’ 조의 “玉塊引鉅時 所用木把子七部”의 木把子은 木把子桶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3.5.2 加乃(가니>가내), 加乃杖夫(가넛장부>가넛장부)

『承政院日記』 ‘1740책 정조 19년(건륭60/1795) 1월 경술(27일)’ 조의 “罄懸絲二把加乃杖夫”에서 ‘加乃杖夫’를 확인할 수 있다. 加乃是 현대국어 ‘가래’(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에 대응하는 옛말 ‘ㄱ래>가래’³⁷⁾의 한자 차용 표기 가운

37) ㄱ래 爲楸 <『訓民正音諺解』(1446) 56>. 楸 ㄱ래 楸 <『訓蒙字會』(1527) 상:6ㄱ>. 楸木 皮 ㄱ래나못 집집 <『東醫寶鑑』(1613) 3:43ㄱ>. 山核桃 가래 <『蒙語類解補』(1790) 23ㄱ>. 楸목 楸木 가래 <『韓佛字典』(1880) 611>

데 하나이다. 杖夫는 현대국어 ‘장부’(가래의 자루와 넓죽한 바닥)에 대응하는 ‘장부’³⁸⁾의 한자 차용 표기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 후기에 의궤류에서는 ‘加乃, 加來, 加羅 / 𨔵乃, 木𨔵乃, 𨔵乃丈夫 / 加乃杖夫, 加乃丈夫·加乃長夫, 加來丈夫, 加羅杖夫·加羅丈夫·加羅杖扶’ 등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加的 한자음은 ‘가’이지만, 한자 차용 표기로 쓸 때는 우리말의 ‘가’나 ‘ㄱ’을 쓸 때 쓰기도 했다. 乃의 현대 한자음은 ‘내’이지만, 옛 한자음은 ‘니’여서, 來(리>래)나 羅(라)를 대신하는 글자로 쓰이기도 했다.

3.5.3 周𨔵(주격), 銀周𨔵(-주격)

『承政院日記』에서 확인되는 周𨔵은 현대국어 ‘주걱’의 옛말 ‘죽>주게>주걱’(음식을 저어 섞는 데 쓰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³⁹⁾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銀周𨔵은 銀으로 만든 주걱을 쓴 것이다. 조선 후기 다른 자료에서는 木周𨔵, 鍤周𨔵, 鑄周𨔵 등도 확인되고 있다.

3.5.4 廣屎·光屎·鑛屎(광히), 廣伊(광이)

『承政院日記』에서 확인되는 廣屎·光屎·鑛屎와 廣伊는 현대국어 ‘괘이’(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의 옛말 “*광히” 또는 ‘광이’⁴⁰⁾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조선 후기 다른 자료에서는 𨔵伊(大𨔵伊, 中𨔵伊, 小𨔵伊) / 串𨔵伊, 廣𨔵伊, 冲𨔵伊·衝𨔵伊, 平𨔵伊, 作耳𨔵伊 // 光屎 / 廣光屎, 串光屎, 直光屎, 衝光屎 // 廣耳, 光耳, 光伊 / 葉廣耳, 曲廣耳, 冲廣耳, 尺廣耳, 項鳥廣耳 / 葉光耳, 曲光耳, 尺光耳, 冲光耳 / 冲光伊, 尺光伊, 項鳥光伊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3.6 馬政 관련 한자 차용 표기

- …… 令司僕寺兩色月羅馬, 極擇缺急急下送, 以副其望事, 傳教矣. 前送兩馬, 一則赤多月羅, 一則鐵青驄, 皆非純色白馬, 以此送去, 亦無不可. 雖或未盡, 且本道方爲廣求云, 乘船日迫, 必已措得矣. 所請加羅驪馬及兩色花馬中, 加羅驪馬則內立邊馬中, 亦有體大有才者, 花馬則有貿送之教. 故花馬二匹, 各給百兩銀子, 已爲貿得.

38) (참고) 轉軸 문장부 <『漢清文鑑』(1779) 9:71>.

39) 𨔵 爲飯杓 <『訓民正音諺解』(1446) 용자례>. 銅杓 𨔵 주게 <『譯語類解』(1690) 하:13>. 笊簍 주걱 <『物譜』(조선 후기) 하:13>.

40) 삶과 광이를 가져다가 흙을 피여 예서 흙 니기라(將鐵杓和泥來掘土 這裏和泥) <『朴通事諺解』(1677) 하:5>. 鐵鍋 광이 鐵頭 上土 <『譯語類解』(1690) 하:8>. 鍤鍬 褲 삶과 광이 주걱 드리는 구무 <『漢清文鑑』(1779) 10:37>

四馬中擇送之意，敢啓. …….

<『承政院日記』 53책 인조 14년(1636) 9월 을사(4일)>.

○ ……色則月羅·加羅·紫驪·古羅之無毛里者，以此形色中二匹，極擇待令之意，分付兩道及訓練都監，何如…….

<『承政院日記』 511책 숙종 44년(康熙57/1718) 12월 정사(14일)>.

3.6.1 加羅馬〔가라말〕, 赤多馬〔절다말〕, 月羅馬〔월라말〕, 月羅雌雄馬〔월라--♂
♀〕, 仇郎馬〔구령말〕, 仇郎驕馬〔구령-말〕

『承政院日記』에서 月羅馬, 月羅雌雄馬, 靑月羅馬, 赤多月羅, 靑黑月羅雄雌馬 등으로 쓰인 馬名에서 月羅는 현대국어 ‘월라마(털빛이 얼룩얼룩한 말)’와 옛말 ‘월라말’⁴¹⁾에서 확인되는 ‘월라’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제주방언에서는 ‘월레말’이라 하고 있는데, 이때의 ‘월레’도 ‘월라’에 대응하는 말이다.

『承政院日記』에서 赤多馬, 赤多月羅 등으로 쓰인 馬名에서 赤多是 현대국어 ‘절따말’(몸 전체의 털색이 밤색이거나 불그스름한 말)의 ‘절따’와 옛말 ‘절다말’⁴²⁾의 ‘절다’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 말은 중세 몽골어 je’erde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承政院日記』에서 靑驄, 鐵靑驄 등으로 쓰인 靑驄은 현대국어 ‘청총마(靑驄馬: 회색 털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말)’과 옛말 ‘총이말’, ‘털청총이말’, ‘텅청총’⁴³⁾ 등의 ‘총이>총이, 청총, 청총이’ 등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라고 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에서 加羅馬, 加羅驪馬 등으로 쓰인 加羅는 현대국어 ‘가라말(털빛이 온통 검은 말)’과 옛말 ‘가라말’⁴⁴⁾의 ‘가라’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가라’는 중세 몽골어 qara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承政院日記』에서 仇郎馬, 仇郎驕馬 등으로 쓰인 仇郎은 현대국어 ‘구령말(털빛갈이 밤색인 말)’과 옛말 ‘구령말’⁴⁵⁾의 ‘구령>구령’을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구령>구령’은 중세몽골어 küreng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41) 花馬 월라말 <『譯語類解』(1690) 하:28>.

42) 赤馬糞【절다말 똥】<『救急簡易方』 2:102>. 절다말(赤馬) <『翻譯老乞大』 하:8>. 紅馬 절다말 <『漢清文鑑』(1779) 14:21>.

43) 흔 디튼 총이마리 잘 드로디(一箇黑鬃靑馬快走) <『翻譯朴通事』(1517) 상:62>. 이 총이마리 나히 연멘고(這箇靑馬多少歲數) <『翻譯老乞大』 하:8>. 가리온총이말(黑鬃靑馬) <『朴通事諺解』(1677) 상:55>. 털청총이말(靑白馬 <『노걸대언해』 하:8>. 靑驄馬 털총이 <『譯語類解』(1690) 하:28>. 흔 구장 술진 털청총광 간자말 타고(騎着一箇十分脰鐵靑玉面馬) <『翻譯朴通事』(1517) 상:29>.

44) 가라말(黑馬) <『翻譯老乞大』 하:9>. 黑馬 가라말 <『譯語類解』(1690) 하:28>.

45) 구령말(栗色馬) <『翻譯老乞大』 하:9>.

『承政院日記』에서 古羅로 쓰인 馬名은 현대국어 ‘고라말(등마루를 따라 검은 털이 난 누런 말)’ 또는 옛말 ‘고라말’⁴⁶⁾의 ‘고라’를 한자를 빌려 쓴 것이다. ‘고라’는 중세몽골어 qula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紫驪는 현대국어 ‘자류마’(밤색의 털이 난 말)와 옛말 ‘즈류말’⁴⁷⁾의 ‘즈류>자류’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3.6.2 禾〔슈>수〕

『承政院日記』에서 馬나 進上馬를 언급하면서 禾毛色, 馬匹禾毛色, 仇郎驕馬禾八, 雄馬禾六, 禾五六, 官牛禾老, 瘦瘠禾少六十八疋, 禾老常馬, 禾老體大雄馬, 禾老病馬 등의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쓰는 禾는 말의 나이를 이룰 때 쓰는 고유어 ‘슈>수’를 한자를 빌려 쓴 한국한자이다.

이 禾는 중국 한자에서 예로부터 禾가 벼가 여물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그린 글자로, ‘벼’나 ‘곡식’, ‘모’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말 이빨의 수를 뜻하는 ‘슈>수’를 뜻하는 한자로도 쓰였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쓰인 吏文에 쓰인 어휘를 일부 정리한 『行用吏文』을 보면 “禾 슈 俗稱馬齒曰禾 一禾二禾是也”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禾를 ‘슈’로 읽고 말 이의 수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에서 한 살짜리 말을 금승말 또는 금싱말이라 하고, 두 살짜리는 ‘이수메(이쉬메·이수매)’, 세 살짜리는 ‘삼수메·삼쉬메(삼수매)’, 네 살짜리는 ‘스수메·스쉬메(스수매)’, 다섯 살짜리는 ‘오수메·오쉬메(오수매)’ 등으로 불렀는데, 여기에서 확인되는 ‘수’가 바로 근대국어의 ‘슈’에서 이어진 것이고, 이것을 한자로 쓴 문서에는 禾二, 禾三, 禾四, 禾五 등으로 썼다.

3.7 其他 어휘

『承政院日記』에 들어있는 吏讀文에서도 조선시대 일상적인 吏讀文에서 확인되는, 加于, 今如, 段, 同, 等, 等是如, 良中, 白齊, 是白去乙, 是白遣, 是白沙餘良,

46) 그 흔 고라마리 이쇼디 지조논 도커니와(那裏有一箇土黃馬 好本事) <『翻譯朴通事』(1517) 상:62>. 고라말(土黃馬) <『翻譯老乞大』(1795) 하:9>. 黃馬 고라말 <『譯語類解』(1690) 하:28>.

47) 棗驪馬 즈류말 <『漢清文鑑』(1748) 하:37>.

是白如乎，是白有亦，是白齊，是白乎乃，是白乎矣，是白乎則，是如，亦，右良，爲良如教，爲白去等，爲白良置，爲白如可，爲白如乎，爲白如乎，爲白有去乙，爲白齊，爲白乎等用良，爲白乎矣，乙仍于，-矣徒等亦，向前 등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麻浦氷夫位田結幕居生人安彦隣等上言內，所居家代氷夫位田，以開國初始化家間，多少結卜磨鍊，年年收稅，或三四升，或五六升，其中極多者，不過一斗，歲末收捧，子子孫孫流來恒規是白如乎。反正之初，回氷庫亦都案冊闔失是如，別坐改爲打營，或浦落處竝爲時犧，探以置簿，在前三四升稅則二三斗，五六升稅則四五斗，一斗稅則多至七八斗，刻徵爲白如可，過二年之後，則又創開新規，稅米一斗良中，供上氷二駄式，督令輸納爲白乎等用良，自麻田至西氷庫程道十里之地乙仍于，一駄雇馬價米一斗許給爲白良置，馬主不肯爲白去等，一斗二駄，以官威勒定，冤悶莫甚爲白齊。七八斗稅米則雇馬多至十六駄，從市直，一駄稅馬價米一斗至計，則多至十六斗是白沙餘良，加之以今年稅物三斗輸納，則又以引用於翌年之價，一年載氷兩年之條，加于刻骨痛憫爲白齊。大概元田稅則一結四斗，一結田則間數多至三百餘間，以此觀之，則雖曰江村愚氓，豈不冤悶是白齊。如此事情。呈備邊司入，啓下禮曹，禮曹回啓啓下兵曹，曹防啓爲白良置，傳教內本曹事勢，雖或如此，民怨亦不可不顧，先朝前例詳考處置事，啓下教是白乎矣。兵曹又防啓乙仍于，臣矣徒等亦，終不蒙天恩，以待上言之日爲白如乎，今如聖明之時，右良事情，備細分揀革新，依舊前例收稅事，曹回啓粘連啓下是白有亦，載氷之價，自本曹不可添給之意，前者啓達，非一二番矣。自前氷夫位田居生之人，能行此役，而位田猶在，其田不空，則所居之人，自當載氷是白去乙，向前安彦隣等是如，呈訴欲責價於本曹，亂後給價助役，亦是謬例，今不可因其所訴，輕開難繼之道，上言內辭緣受理安，何如？崇禎二年十二月十五日，右承旨臣尹次知。啓，所訴的實，則果似冤抑，前例相考處置爲良如教。曹啓目，粘連判下是白有亦，更爲相考爲白乎矣。祖宗朝所設立氷夫，又給位田，以爲運氷之地，與本曹絕不相干爲白如乎，經亂以後，氷夫散亡，只有位田，江上之民，或私自耕食，或作家居生爲白乎等用良，遂以氷夫之役，責諸江上之民。本非身役，而徒以位田之故，替行氷夫之事，其稱冤宜矣。但渠等實有難堪之苦，則撤而不居，舍而不耕，孰得以驅迫之哉？其不能然者，亦必有其故，似不可以自己呼訴之故，輕開費財之路乙仍于，今年夏間，因庫提調及禮曹啓辭，已爲再次回啓，量宜加給爲白有去乙，今又呈上言，煩瀆不已，事甚猥濫爲白齊。況於本曹既有逐月題給之例，而今年又爲加數給之，則初非專責於渠等者，而但以所給之數，比廢朝時，稍有所減。故渠等必欲還復廢朝時舊例，如是呼訴，似不當盡從其言，依近例施行，何如？崇禎二年十二月二十五日，右承旨臣尹次知。啓依允【已上兵曹膽錄】

<『承政院日記』 28책 인조 7년(崇禎2/1629) 12월 을축(15일)>.

『承政院日記』에는 조선시대에 일상적으로 논밭의 넓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

의 한자 차용 표기인, 石, 斗, 升, 合, 石落只・石落, 石零落只, 斗落只・斗落, 斗零落只, 合落只・合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국어 ‘오랑캐’에 대응하는 옛날은 ‘오랑개>오랑개’⁴⁸⁾로 쓰였는데, 한자 차용 표기로 쓰일 때는 兀良哈 또는 兀郎哈 등으로 쓰였다. 『承政院日記』 1902책 순조 5년(嘉慶10/1805) 10월 을사(26일) 조의 기사 “爽周曰, 兀良哈之良字, 或讀爲郎, 俗稱夷狄爲兀郎哈者, 亦以此也”에서 兀良哈와 兀郎哈를 확인할 수 있다.

甫十串은 ‘보십곶’ 또는 ‘보십고지’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명을 나타낸 것이다.

加時木과 枷時木, 加施木 등은 ‘가시나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箭竹은 ‘살대’, 火箭은 ‘화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4. 마무리

『承政院日記』는 『朝鮮王朝實錄』이나 『日省錄』 등과 같이 당시 政事와 그와 관련된 논의와 처리, 사건 등을 일기체 형식으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과 다른 문서와 같이 우리나라 固有語를 한자를 빌려 쓴 것들이 매우 많다.

그러한 한자 차용 표기는 본디의 말로 해독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현대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현대국어로 쓰이지 않거나, 그에 대응하는 말이 없더라도 당시 한자 차용 표기에 대응하는 고유어를 현대화하여 번역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번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번역한 것이 이외로 많이 있다.

木把子를 ‘나무를 묶은 파자(把子)’, 加文刺은 ‘문자(文刺)를 더한 것’과 같이 잘못 번역하거나 엉뚱하게 번역하는 일이 벌어졌다. 把子는 현대국어 ‘바자’에 대응하는 옛말 ‘바즈’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고, 木把子는 ‘나모 바즈’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그러므로 木把子는 ‘나무 바자’ 또는 ‘싸리로 만든 바자’로 번역해야 한다.

加文刺은 옛말 또는 현대국어 ‘더그레’에 대응하는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 ‘더그레’는 중세몽골어 degelei가 들어와서 쓰인 것으로, 『翻譯老乞大』 등에서 한자어 搭胡 또는 搭護에 대응하는 번역어 ‘더그레’로 쓰인 뒤에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加文刺을 ‘문자(文刺)를 더한 것’과 같이 엉뚱하게 번역해서 소개해서는 안 된다.

48) 혹 예놈이 와 침노하거나 오랑개를 왜거나 <『경민편언해』 중간본(1579) 2ㄱ>. 지물 의론하기를 오랑개의 道 | 라 <『小學諺解』(1588) 5:63 ㄱ>. 오랑개 호 胡 <『倭語類解』(1781-1787) 하:2ㄴ>. 오랑개 羌 <『韓佛字典』(1880) 56>.

裏衣는 ‘이의’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옛말은 솥옷)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옷감’을 뜻하는 ‘次’로 ‘차’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감’(옛말은 곶)으로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고유어의 한자 차용 표기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엉뚱하게 번역하여, 원 뜻을 상당히 왜곡하여 전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고문헌과 고문서를 번역할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데, 이외로 한자 차용 표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듯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번역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것은 분야가 다른 여러 번역자(특히 차자 표기에 대해 잘 알면서 한문 해독에 능한 사람들)의 윤독을 거쳐서 해소해야 하고, 그러한 것을 거친 뒤에 책자로 발간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오창명 외 3인(2000), 『吏讀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 오창명 외 3인(2005), “『西關營建都監儀軌』 翻譯과 차자 표기의 解讀 오류에 대하여 : 건축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3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오창명 외 3인(2007), “『文禧廟營建廳謄錄』의 借字 表記 研究(2): 材木類 語彙를 중심으로”, 『國際高麗學』 11권 1호, 國際高麗學會.
- 오창명(1987), “『備邊司謄錄』의 吏讀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오창명(1994), “中世國語時期 副詞類 吏讀의 研究 : 『科擧事目』과 『詳定科擧規式』을 중심으로”, 『백록어문』 10집, 백록어문학회.
- 오창명(1995), “奴婢賣買文記의 吏讀文과 吏讀 解讀”, 『백록어문』 11집, 백록어문학회.
- 오창명(1995), “조선 전기 吏讀의 국어사적 연구: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오창명(1997),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 表記 연구(1) : 조선 후기 服飾 어휘를 중심으로(1)”, 『한국복식』 15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오창명(2001), “物名의 借字表記 研究(1) : 『園辛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집, 영주어문학회.
- 오창명(2003),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의 借字表記 연구”, 『영주어문』 6집, 영주어문학회.
- 오창명(2004), “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 연구 : 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원.
- 오창명(2009), “조선시대 고유 음식 어휘 : 의궤의 차자표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회 제50차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한국어문학과 제주도).
- 오창명(2010), “『儀軌』에 나타나는 고유 服飾 어휘 : 17세기 儀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3집, 한국언어문학회.
- 오창명(2012), “조선시대 儀軌의 借字表記 연구: 固有語彙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NRF).
- 오창명(2016), “『韓國漢字語辭典』의 借字와 借字語, 吏讀와 吏讀語”, 『동양학』 6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오창명(2017), “조선시대 吏讀 學習書 개관”, 『구결연구』 39집, 구결학회.
- 오창명·손희하(2008), “<儀軌>류의 고건축 어휘 해독과 건축 용어 선정”, 『호남문화연구』 4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오창명·천득염·손희하(2007), “『西關營建都監儀軌』의 木材類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6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 오창명·천득염·손희하(2008), “『西關營建都監儀軌』의 鐵物類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7권 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의 종류와 특징

이강욱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번역자문위원 및 은대학당장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의 종류와 특징

이강욱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번역자문위원 및 은대학당장

목차

- I. 머리말
- II.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臣民의 上達文書
 - 1. 문서 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 2. 문서 내용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 III.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國王의 下達文書
 - 1. 문서 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 2. 문서 내용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 IV. 맺음말

I. 머리말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군신의 말과 글 및 동정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중 ‘군신의 말’은 ‘군신의 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왕과 신하가 한 자리에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군신의 글’은 ‘군신의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왕과 신하가 서로 주고받은 문서를 기록한 것이다. ‘군신의 대화’는 국왕과 신하가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입시한 승정원의 注書가 注書草冊에 기록하였다가 자리에서 물러 나와 『승정원일기』에 옮겨 적었고, ‘군신의 문서’는 승정원에서 매일 출납한 문서를 傳教軸으로 만들어 注書가 『승정원일기』에 차례로 옮겨 적었다.¹⁾

군신의 문서는 다시 臣民이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와 국왕이 臣民에게 내리던 문

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臣民의 上達文書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등에 수록된 신민의 상달문서로는 啓本, 啓目, 狀啓, 書啓, 草記, 啓辭, 單子, 別單, 上疏, 筭子, 呈辭, 上言, 擊錚原情, 箋文, 致詞 등 총 15종이 있었다.²⁾ 후자는 국왕의 下達文書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등에 수록된 국왕의 하달문서로는 下敎, 傳敎, 敎書, 敎旨, 傳旨, 諭書, 有旨, 諭旨, 綸音, 判付, 批答, 封書, 敎命, 冊文 등 총 14종이 있었다.³⁾

조선시대 신민의 상달문서와 국왕의 하달문서에 대한 연구는 개별 문서에 대한 연구와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중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에 대한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승정원일기』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임천환은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王命記錄을 冊文, 敎書, 敎旨, 內旨, 傳旨, 舉條로 나누고 그 특징을 서술하였다.⁵⁾ 이근호는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報告記錄의 유형을 ① 一般的 政務, ② 上疏 및 筭子, ③ 言官 啓辭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① 一般的 政務에서는 啓辭, 草記, 啓目, 牒呈, 書目, 狀啓를 하나로 묶어 서술하였고, ③ 言官 啓辭에서는 臺諫이 국왕에게 올린 啓辭에 대해 서술하였다.⁶⁾ 그러나 당시에는 개별 문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었다. 이후 『승정원일기』와 현존 문서를 활용한 개별 문서의 연구 성과들이 나오면서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들의 실체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신민의 상달문서와 국왕의 하달문서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 상황에서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들의 종류와 그 특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신민의 상달문서 15종과 국왕의 하달문서 14종이 모두 『승정원일기』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중에는 문서 내용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도 있고, 문서 내용을 상세하게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도 있다. 아래에서는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신민의 상달문서와 국

왕의 하달문서를 각각 기록된 형식에 따라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臣民의 上達文書

1. 문서 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1) 啓本

啓本은 중앙아문과 지방아문에서 관원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소속 관원의 실적 평가, 사건의 조사 결과, 定配할 죄수의 도착, 정배되어 있는 죄수의 석방 여부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계본을 사용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계본이 중요한 상달문서의 하나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계본의 용도가 제한적이었다. 매일 승정원을 통해 출납된 문서들은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었으나, 계본은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관찬사료에 자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더라도 앞에서 열거한 사안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계본은 그 용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褒貶啓本 또는 殿最啓本으로,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에서 소속 관원에 대해褒貶한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할 때 올리던 계본이다.⁷⁾ 둘째, 査覈啓本으로, 지방아문에서 어떤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할 때 올리던 계본이다.⁸⁾ 셋째, 放未放啓本으로, 각 도의 관찰사가 해당 지역에 정배된 죄수를 풀어줄 죄수와 풀어주지 않을 죄수 등으로 분류한 뒤에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계본이다.⁹⁾ 넷째, 到配啓本으로, 정배하도록 판결받은 죄인이 해당 道の 配所에 도착한 뒤 관찰사가 죄인의 도착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 작성해서 올리던 계본이다.¹⁰⁾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이들 계본의 특징은 그 내용이 수록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啓本’의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문서 내용을 간략하게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1) 명경일,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臚錄 체계」,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81~87쪽.

2)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臣民의 上達文書-, 은대사랑, 2021, 12~15쪽. 신민의 상달문서는 최승희의 고문서 분류 중에서 官府文書 중 ‘對國王’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5.

3)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하권-國王의 下達文書-, 은대사랑, 2021, 12~17쪽. 국왕의 하달문서는 최승희의 고문서 분류 중에서 國王文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승희, 위의 책.

4) 이근호, 「『승정원일기』를 활용한 한국학 연구 성과와 향후 전망」,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15년』, 국사편찬위원회, 2015, 226~229쪽.

5) 임천환, 「『承政院日記』 王命記錄의 特徵과 情報化 方案」, 『한국사론』 제37호, 국사편찬위원회, 2003, 108~128쪽.

6) 이근호, 「『承政院日記』 報告記錄의 特徵과 情報化 方案」, 『한국사론』 제37호, 국사편찬위원회, 2003, 152~169쪽.

7)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2월 28일, “李春躋啓曰:‘即伏見京畿監司趙最壽今秋冬等褒貶啓本, 則守令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推考, 何如?’”

8)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월 26일, “又啓曰:‘即伏見慶尙監司金在魯助羅浦前萬戶李萬晟等餉穀擅分査覈啓本, 則既已着署, 連幅處, 亦皆踏印, 而末端年月上, 獨不踏印. 此, 雖出於偶未照察之致, 而不可無警責之道, 推考, 何如?’”

9)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26일, “以義禁府忠淸監司放未放啓本回啓公事, 傳于徐景雨曰:‘李時昉等事, 如是回啓是耶? 承旨察啓.’”

10) 『승정원일기』 정조 5년 6월 6일, “以黃海監司罪人張宗得到配啓本, 傳于兪恒柱曰:‘尋常偏配, 既是啓下公事, 則決不敢許久逗留. ……’”

2) 狀啓

狀啓는 外官職의 관원과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이 지방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및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한 경우 도성에 남아 있는 신하가 行在所의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왕명의 수행 결과 등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 장계를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外官職과 權設職보다는 중앙의 관사와 관원이 장계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종 이후로는 외관직과 권설직 관원이 狀啓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장계를 올린 관원은 대부분 외관직이나 권설직 관원이었다. 다만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피난한 경우에는 도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京官職 관원도 장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계는 사용하는 관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장계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첫째, 外官職 관원의 장계로, 觀察使와 節度使 및 防禦使를 겸임한 수령 등이 농사 상황이나 비가 내린 상황 등을 보고할 때 장계를 사용하였다.¹¹⁾ 둘째, 權設職 관원의 장계로, 御史와 使臣 등이 지방이나 외국에서 왕명을 수행하는 도중에 지방 또는 외국에서 수행 결과를 보고할 때 장계를 사용하였다.¹²⁾ 셋째, 京官職 관원의 장계로, 권설직에 임명되지 않고 경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왕명을 받고 파견된 신하가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국왕에게 수행 결과를 보고할 때 및 국왕이 서울을 떠나 지방에 있는 상태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관원이 국왕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 장계를 사용하였다.¹³⁾ 『승정원일기』에는 장계의 내용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그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록하거나 대신 또는 비변사가 회계(回啓)하면서 장계 내용을 간접 인용한 형식으로 기록한 경우가 많다. 대신이나 비변사가 장계에 대해 회계할 때에는 장계에서 거론한 사안을 하나하나 ‘其一’로 기록하였다.¹⁴⁾

- 11) 『승정원일기』 정조 6년 6월 7일, “以黃海監司雨澤狀啓, 傳于徐有防曰:‘昨日之雨, 營下又如是其沛然云云。 列邑均霑與否, 勿拘常格, 隨聞陸續登聞, 雨後農形, 先從營下亦必仔細馳啓事, 回諭。’”; 『승정원일기』 정조 7년 8월 27일, “以洪忠監司農形狀啓, 傳于趙興鎮曰: ‘依狀請施行事, 令廟堂卽爲分付。 面里分等, 則取捨尤宜精詳, 另加惕念事, 亦爲申飭。’”
- 12)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5월 7일, “以全羅道賑恤御史狀啓, 傳曰:‘此人所爲, 殊極駭愕, 拿鞠定罪。’”
- 13)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2월 19일, “留院承旨南泰赫狀啓曰:‘闕內無事爲白乎旂, 兵曹今二月十八日一二所巡將各處各度行巡無事·烽燧單子、今十九日入直衛將·部將分更單子各一度, 守門將分門單子一度, 合五度監封上送爲白臥乎事是良旂, 銓次善啓向教是事。’”
- 14)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2월 14일, “寅明曰:‘此, 乃濟州牧使安慶運狀啓也。 備陳島中三邑農形災實後錄各條, 竝令廟堂, 稟處爲請矣。 其一, 舊還姑爲停捧而新還期於準捧事也。 其一, 寺奴婢身貢分三等捧上事也。 此兩條, 則一邊舉行, 今無可論。 其一, 軍兵操練, 今姑停止, 而鍊習之政, 亦難專廢, 差待日暖, 設行哨鍊司鍊事也。 其一, 各寺奴婢辛酉式年推刷, 待麥秋舉行事也。 其一, 推奴徵債各別痛禁事也。 軍兵鍊習事、推奴徵債禁斷事, 竝許施, 推刷事, 麥秋又當鋤役, 何可爲之! 使之待秋退行, 爲宜。 以此分付, 何如?’ 上曰:‘依爲之。’”

3) 單子

單子是 아문의 이름이나 신하 개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정형화된 형식에 따라 人名 또는 物名 등을 열거하거나 본문만 간략하게 적어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단자를 사용하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에는 下直單子, 謝恩單子, 六行單子, 問安單子, 祇受單子, 守令薦單子 등 총 6가지의 국왕에게 올리던 단자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단자들의 특징은 서두와 말미뿐만 아니라 본문까지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자는 그 내용이나 올리는 목적에 따라 ‘單子’ 앞에 제목을 붙여서 불렀으므로, 단자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銀臺便攷』에 나오는 다양한 단자의 이름으로 『승정원일기』에서 다시 검색하여 그중 100건 이상 검색되는 단자를 열거해 보면, ① 人名이나 物名 등을 열거하여 국왕의 落點을 받기 위해서 올리던 望單子,¹⁵⁾ ② 형조와 의금부에서 각각 당시 구속되어 있는 죄수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囚單子,¹⁶⁾ ③ 시험장에 입장한 응시생의 수를 적어서 보고하던 入門單子,¹⁷⁾ ④ 신하들이 국왕에게 肅拜할 때 올리던 肅拜單子,¹⁸⁾ ⑤ 국왕이 動駕하거나 殿座할 때 행사를 준비하고 시작할 시각을 마련하여 보고할 때 올리던 時刻單子,¹⁹⁾ ⑥ 행사나 회의 등이 있을 때 해당 관원이 참석하였는지의 여부를 보고할 때 올리던 進不進單子,²⁰⁾ ⑦ 각 관사가 坐起를 열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할 때 올리던 坐不坐單子,²¹⁾ ⑧ 행사나 회의에 참석한 관원의 명단인 座目을 작성하여 보고할 때 올리던 座目單子,²²⁾ ⑨ 祝文 및 쯔을 봉한 곳에 御押을 국왕이 직접 적을지 아니면 신하가 대신 적을지를 묻기 위해 올리던 受押單子,²³⁾ ⑩ 천거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할 때 올리던 薦舉單子,²⁴⁾ ⑪ 監軍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할 때 올리던

15)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20일, “以承旨望單子, 傳曰:‘襄陽府使蔡彭胤除授。’”

16)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12월 28일, “以閱百遠囚單子, 又傳于曰:‘開坐尙遠, 保放。’”

17)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3월 22일, “入門官進呈入門單子, 有聞讀奏儒生入門六萬四千五百八十一人, 命試官行禮。”

18)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10월 18일, “以知經筵徐命善肅拜單子, 傳于李普溫曰:‘藝文提學, 必陳疏而後, 始乃肅謝乎! 只謝經筵, 不謝提學, 此單子, 竝書提學, 使之謝恩, 若不竝謝, 開陽門, 勿爲下鑰。’”

19) 『승정원일기』 영조 2년 10월 19일, “以陵幸舉動時刻單子, 傳于金祖澤曰:‘三嚴, 以丑初初刻, 改磨鍊以入。’”

20) 『승정원일기』 영조 1년 8월 6일, “以備邊司坐起進不進單子, 傳于柳復明曰:‘明日來會實廳事, 分付。’”

21) 『승정원일기』 정조 8년 6월 30일, “以刑曹坐不坐單子, 傳于金履禧曰:‘判書出代間殺獄回啓, 竝令次堂舉行。’”

22) 『승정원일기』 순조 18년 9월 12일, “上曰:‘上番出去, 座目單子書入也。’ 嘉愚承命而出, 書入座目單子。”

23)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2월 14일, “以香室受押單子, 傳于金東弼曰:‘再虞, 當爲親押, 別單子書入。’”

監軍單子,²⁵⁾ ⑫ 사면 대상인 죄수의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할 때 올리던 赦單子,²⁶⁾ ⑬ 入番하는 將官·將校·軍兵 등의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할 때 올리던 番單子,²⁷⁾ ⑭ 국가나 왕실의 제향을 지낼 때 국왕 대신 제향을 지낼 獻官 및 初獻官인 국왕과 함께 제향을 지낼 亞獻官·終獻官의 후보자를 열거하여 보고할 때 올리던 獻官單子,²⁸⁾ ⑮ 이조와 병조가 각각 해마다 6월과 12월에 재직 중 징벌을 받은 관원의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할 때 올리던 歲抄單子,²⁹⁾ ⑯ 병조가 武官과 武士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科試의 시험 과목과 선발 규정을 작성해서 보고할 때 올리던 規矩單子³⁰⁾ 등 16가지나 된다. 『승정원일기』에는 대부분 이들 단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고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간단한 설명이 붙은 문서명만을 기록하였다.

4) 別單

別單은 아문의 이름이나 신하 개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다른 상달문서를 올리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별단을 사용하였다. 즉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草記나 書啓 등의 본문서를 올리면서 그 본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던 문서가 별단이었다. 이처럼 별단은 본문서와 관련하여 종속성과 독립성을 아울러 가진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사료에 신민의 상달문서로서의 별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부터이다.

『승정원일기』에는 별단의 내용이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서명만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일성록』에는 신하나 각 관사가 올린 별단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별단의 용도 및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조대의 『일성록』에 수록된 별단은 총 698건으로, 『정조실록』의 139건이나 정조대 『승정원일기』의 17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³¹⁾ 정조대의 『일성록』에 실린 총

698건의 별단을 그 용도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각 관사나 신하가 특정 대상을 선발한 뒤 그 명단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抄啓別單, 각 관사나 신하가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사람의 숫자 등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物目別單, 신하가 임무 수행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聞見別單, 각 관사나 신하가 節目이나 事目を 기록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節目事目別單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각 관사에서 별단을 작성해서 들인다고 보고하거나 국왕이 별단에 대해 判付한 사실 등만 기록되어 있고 별단 내용이 기록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³²⁾

5) 呈辭

呈辭는 관원과 종친이 국왕에게 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 사용하던 문서였다.³³⁾ 조선왕조실록에 呈辭라는 어휘가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정종실록』부터다. 이때 정사의 의미는 현직 관원이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바치다.’라는 의미였으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는 ‘辭狀’ 또는 ‘辭職狀’으로 표현되었다. 조선 초기에 현직 관원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장을 바쳐 허락을 받았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장을 돌려주었다. 종종 이후로는 ‘呈辭’가 기존처럼 ‘呈辭하다.’ 또는 ‘辭狀이나 辭職狀을 올리다.’라는 술어로 쓰이는 사례 이외에 ‘呈辭單子’, ‘○○呈辭’, ‘呈辭狀’처럼 명사로 쓰인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실은 종종 이후로는 呈辭가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종종 연간에 ‘呈辭’라는 독립적인 문서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사’와 ‘상소·차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광해군 때에 이르러서는 ‘정사’와 ‘상소·차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³⁴⁾

24) 『승정원일기』 정조 3년 2월 5일, “柳義養啓曰:‘今己亥年京外守令薦舉單子一百十七張、邊將薦舉單子四十九張, 依例捧入, 而應薦不薦人, 令該曹察推, 何如?’ 傳曰:‘允.’”

25) 『승정원일기』 영조 2년 5월 21일, “以監軍單子, 傳于李瑜曰:‘此後, 則兼別將, 勿爲書入事, 分付該曹.’”

26) 『승정원일기』 정조 9년 3월 17일, “以義禁府赦單子, 傳于李祖承曰:‘金載九、李元福, 兄弟之間, 猶與爲他人代射有異, 移送兵曹, 嚴棍放送.’”

27)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7월 14일, “以訓練都監番單子, 傳于朴天衡曰:‘把總中時帶輩士從事官者, 改差, 與局別將窠, 今日差代.’”

28)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월 4일, “以敬徽殿春享大祭獻官單子, 傳于金漣曰:‘以攝行磨鍊以入.’”

29) 『승정원일기』 영조 2년 10월 28일, “以吏、兵曹別歲抄單子, 傳于鄭亨益曰:‘今此兩銓歲抄中點下者, 則竝蕩滌.’”

30) 『승정원일기』 순조 10년 11월 16일, “以式年武科殿試時元榜人規矩單子, 傳于李永錫曰:‘依前式爲之.’”

31) 이강욱, 『『日省錄』別單의 형식 및 분류』, 『민족문화』 제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124쪽.

32)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12일, “洪國榮, 以追崇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眞宗大王諡狀製述官,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知道.’”;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3월 11일, “李晩秀, 以春秋館言啓曰:‘……本月二十二日, 始烟等復命進別單曰『世宗辛酉七月, 世子嬪權氏卒, 九月議政府請設嘉禮色, 從之。十二月, 親選處女于思政殿, 取判書雲觀事文敏、禮賓直長權格之女, 皆爲承徽。丙寅昭憲王后喪, 禮曹服制之啓, 只載承徽服制, 而嬪宮服制, 初不舉論。戊辰五月, 納尹氏于東宮, 封昭訓, 卽嬪之女也。』別單又曰『文宗庚午, 太監尹鳳等, 齎奉主上襲封誥命及中宮冠服出來, 儀註中, 有王后出迎賜物之語, 而僉議答以本無是例, 況今王后已薨云云。及至文宗昇遐後, 禮曹服制, 只論貴人、昭容、公主服制, 而亦無內殿服制之磨鍊。』別單又曰『端宗壬申, 姜孟卿等啓言〈內政至重, 而久無母后, 請以洪貴人摠內政。〉云。’ 癸酉光廟, 以首陽大君率百官啓曰〈殿下, 上無母后保護之力, 下無賢妃儆戒之助。〉云。’”;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22일, “鄭尙愚,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戊子年獻陵幸行時及今番幸行時本寺兩次隨駕員役, 草記事, 命下矣。謹依下教書入之意, 敢啓.’ 傳曰:‘依別單書下施行, 可也.’”

33) 유지영, 「조선시대 관원의 呈辭와 그 사례」, 『장서각』 제1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4, 2~4쪽.

34) 『광해군일기』 6년 7월 4일(갑인), 8년 3월 10일(경진), 12년 2월 22일(경오).

『典律通補』「別編」〈本朝文字式〉‘呈辭式’에는 총 11가지 정사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에 최소한 11가지 종류의 휴가가 있었고 각각의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서로 다른 형식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의미이다. 11가지의 정사란 관원과 종친 등이 병을 앓는 아버지를 문안하고 간호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親病呈辭 또는 病親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자신의 신병을 치료하거나 요양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身病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覲親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정기적으로 부모의 묘소를 살피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掃墳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부모의 묘소를 보수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加土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부모와 조상의 묘소 및 사당에 가서 追贈教旨를 바치고 추증교지의 寫本을 불사르기 위해서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焚黃呈辭,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부모의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榮墳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처나 처부모 등의 歸葬을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歸葬呈辭, 관원과 종친 등이 자식의 혼례를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成婚呈辭 또는 婚嫁呈辭, 관원과 종친이 침을 맞거나 땀을 뜨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鍼灸呈辭, 관원과 종친이 溫泉에서 목욕하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沐浴呈辭,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나라에서 아버지에게 베풀어주는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말미를 청할 때 올리던 榮親呈辭이다. 『經國大典』「吏典」〈給假〉와 『典律通補』「吏典」〈給暇〉에는 『전율통보』에 수록된 11가지의 呈辭 이외에 榮親呈辭도 보인다.

그중 身病呈辭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오래도록 직무를 폐기할 수 없으므로 체차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그래서 신병정사를 辭職單子 또는 辭單이라고도 불렀다. 신병정사는 원칙적으로 당상관 이상 및 현임 삼사의 관원만 올릴 수 있었다.³⁵⁾ 大臣 등이 사직하기 위해 신병정사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신병정사는 원래 신병 치료를 위한 휴가신청서였다. 정사는 형식은 물론 내용까지도 정형화되어 있어서 문서 형식으로는 單子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정사를 呈辭單子 또는 呈單이라고도 불렀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정사는 정사의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정사를 올린 관원과 무슨 명목으로 올린 정사인지를 나타내는 ‘○○呈辭’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⁶⁾

35) 『銀臺便攷』「吏房攷」〈呈辭〉.

36) 『승정원일기』영조 3년 2월 12일, “右議政趙道彬七十度呈辭, 傳于李重協曰:‘安心調理.’”; 『승정원일기』정조 10년 7월 4일, “以宣傳官金樂豐病親呈辭, 傳于朴天衡曰:‘給由. 在外宣傳官改差, 令該曹口傳差出.’”; 『승정원일기』순조 1년 9월 23일, “以領府事李秉模掃墳呈辭, 傳于徐有鍊曰:‘給由馬, 澆奠床備給.’”

6) 上言

上言은 백성이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조선 전기에는 上言이라는 어휘가 上疏 또는 上書와 엄격히 구별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도 혼용되었다. 그러나 태종 때 登聞鼓가 설치된 이후 시기가 뒤로 갈수록 점차 상언이 상소 및 상서와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무분별한 상언을 막기 위한 장치로 백성이 상언하는 절차를 정해 놓았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먼저 서울에서는 主掌官에게 신고하고 지방에서는 觀察使에게 신고하며, 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신고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申聞鼓를 울리고 상언을 바치도록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³⁷⁾ 『은대편고』에서는 국왕이 행차할 때 상언을 받으라는 명이 있으면 別監이 상언을 받아서 入啓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상언을 승정원에 내려주면 6방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승지들이 각각 四件事에 해당하는 상언인지 등을 살펴서 국왕에게 올릴 상언만 골라 뽑아서 다시 입계하였다.³⁸⁾

四件事란 백성이 국왕에게 上言을 올리거나 擊鼓·擊錚할 수 있도록 허용된 4가지 사안을 가리킨다. 사건사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사안(刑戮及身), 아버지와 아들의 분간에 관한 사안(父子分攄), 본부인과 첩의 분간에 관한 사안(嫡妾分攄), 良人과 賤民의 분간에 관한 사안(良賤分攄)을 말한다.³⁹⁾ 사건사가 법전에 반영된 것은 영조 대에 편찬된 『속대전』이 처음이었으나, 사건사가 성립된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선 성종 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속대전』에는 아들이나 손자가 아버지나 조부를 위해 청원한 사안(子孫爲父祖), 아내가 남편을 위해 청원한 사안(妻爲夫), 아우가 형을 위해 청원한 사안(弟爲兄), 노비가 주인을 위해 청원한 사안(奴爲主)도 신문고를 올릴 수 있는 사건사로 인정하였다.⁴⁰⁾

상언은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사의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상언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擊鼓上言과 駕前上言으로 나눌 수 있다. 격고상언은 백성이 신문고를 울리고서 올리는 상언을 가리킨다. 따라서 격고상언은 신문고가 설치된 때부터 백성이 합법적으로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신문고가 폐지된 이후로는 의금부의 當直廳에 상언을 바쳤으므로, 擊鼓上言을 대신하여 當直上言이라고 할 수 있다. 駕前上言은 행차하는 국왕의 어가 앞에서 바치던 상

37) 『經國大典』「刑典」〈訴冤〉.

38) 『銀臺便攷』「吏房攷」〈回啓〉.

39) 『續大典』「刑典」〈訴冤〉.

40) 『續大典』「刑典」〈訴冤〉. 한상권은 조선 전기에 성립된 사건사를 ‘四件事’, 조선 후기에 성립된 사건사를 ‘新四件事’라고 하여 구별하고, 양자의 차이를 전자는 訴冤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소원의 주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았다.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錚 研究-』, 일조각, 1996, 31~37쪽.

언을 가리킨다. 격고상언 또는 당직상언은 국왕이 께 안에 거처할 때 올리던 상언이었다면, 가전상언은 국왕이 께를 벗어나 거동할 때 올리던 상언이었다. 『儒胥必知』에서는 상언을 올리는 주체에 따라서는 士林이 올리는 상언과 子孫이 올리는 상언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상언의 내용이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문서명만 거론하거나 각 관사에서 회계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간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¹⁾

7) 擊錚原情

擊錚原情은 擊錚한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격쟁이란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징이나 팽과리 등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續大典』에서는 ‘원통함을 호소하려는 자에게 差備門 밖에서 쇠붙이를 쳐서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를 격쟁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전율통보』에서는 ‘動駕할 때 호위 구역 밖에서 쇠붙이를 쳐서 올리는 것을 격쟁이라 한다.’라고 하였다.⁴²⁾ 격쟁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상언과 달리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격쟁한 백성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原情은 죄인이 범죄 사실이나 사건 정황을 진술하는 것 또는 그 진술서를 가리킨다. 격쟁은 세조가 신문고를 철거한 이후로 보이기 시작하는 점으로 보아, 신문고를 폐지한 것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때 백성이 격쟁을 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격쟁은 불법이었지만 중종이 즉위한 이후로는 선별적으로 격쟁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에 격쟁은 상언과 함께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六典條例』에는 도성 안에서 동가할 때 격쟁할 수 있는 장소로 把子橋, 通雲橋, 惠政橋 3곳을 정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격쟁한 것은 받지 못한다고 수록되어 있다.⁴³⁾

백성이 격쟁할 수 있는 사안도 상언과 마찬가지로 四件事로 한정되었으며, 대체로 상언에 적용되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상언은 승정원이 四件事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서 빼버릴 것은 빼버리고서 入啓하였지만, 격쟁원정

41) 『승정원일기』 정조 1년 2월 14일, “李鎭衡啓曰:‘今此京外上言六十七度內, 五十七度, 係是猥濫, 拔去, 十度抄入之意, 敢啓.’”; 『승정원일기』 정조 3년 4월 15일, “傳于申應顯曰:‘今下上言, 限內回啓事, 分付.’”;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2월 29일, “沈豐之, 以禮曹言啓曰:‘觀此衿川幼學宋學孫上言, 則爲其亡父秀海孝行請旌褒事, 令該曹稟處矣. 取考臚錄, 則癸卯年京外孝烈入侍分等時, 入於置之中矣, 今不可以其子之更籲, 有所陳請, 依前置之, 何如?’”;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4월 6일, “又啓日粘:‘安東幼學李儒默上言內辭緣「矣身先祖溫寧君墓百步內儉葬無數。」王子墓限百步禁葬, 在載國典, 儉葬人等, 捧俵音掘移, 何如?’”

42) 『續大典』「刑典」〈訴冤〉; 『典律通補』「刑典」〈訴冤〉.

43) 『六典條例』「刑典」〈刑曹〉考律司 擊錚.

은 형조가 살펴본 뒤 국왕에게 물어서 처리하였다.⁴⁴⁾ 『儒胥必知』에는 내용에 따라 4가지의 격쟁원정의 문석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 첫째는 조상의 원통함을 씻기 위해서 올리는 격쟁원정이고, 둘째는 조상의 원통함을 씻은 뒤 官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리는 격쟁원정이며, 셋째는 친족의 아들을 後嗣로 삼기 위해서 올리는 격쟁원정이고, 넷째는 先塋의 山訟 사건 때문에 올리는 격쟁원정이다.

『승정원일기』에는 격쟁원정도 상언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하지는 않고 문서명만 거론하거나 각 관사에서 회계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간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⁵⁾

8) 箋文

箋文은 국가에 慶事나 衰事 등이 있어 신하가 하례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국왕·왕비·왕세자 등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短句와 長句를 섞어서 전문을 지었다. 전문은 우리나라 국왕이 중국의 황태자에게 올리던 외교 문서로서의 전문과 우리나라 신하가 국왕 등에게 올리던 상달문서로서의 전문이 있었다. 상달문서로서의 전문 중 하례하거나 위로하는 내용의 전문은 신하가 국왕에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왕세자가 국왕·왕비·왕대비 등에게 올리기도 하였고, 국왕이 왕대비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전문은 내용 및 용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賀箋은 명절, 탄일, 경사 등을 맞아 신하들이 하례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둘째, 慰箋은 國喪이나 궁궐의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하들이 위로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위전은 하전과 달리 지방의 관원만 올릴 의무가 있었다.⁴⁶⁾ 셋째, 謝箋은 국왕으로부터 술이나 약 등의 물품을 하사받는 등 국왕의 은덕을 입은 신하가 사례하

44) 『승정원일기』 순조 28년 9월 11일.

45)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2월 7일, “又啓曰:‘此, 乃慶尙道草溪幼學李興甲擊錚原情也. 與陝川文啓東爲山訟, 而興甲上年夏間擊錚之後, 自本府未及回啓, 興甲, 又於駕前訟冤, 故自上以事極猥越爲教, 特命‘還送本道, 令道臣嚴處.’ 此事, 已經處分, 而其原情, 則尙留本府, 故敢此持入矣.’ 上曰:‘其亦猥濫, 勿施.’”;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0월 18일, “李庚運, 以禮曹言啓曰:‘刑曹啓曰‘因學生安後良妻具氏擊錚原情判付內<除尋常詳查決給, 俾無齎冤呼訴之弊.>事, 判下矣. 取考原情, 更爲查實, 則乃是繼後事也, 此, 非臣曹所可決給者, 令禮曹決處, 何如?’ 傳曰‘允.’ 事, 命下矣. 考見具氏擊錚原情內辭緣, 則以爲「女矣身, 賦命奇薄, 年未二十, 奄爲孀婦, 天地間一罪人之外, 又遭綱常之變. ……天地之仁, 日月之明, 照臨在上, 安弼良之罪, 依律處斷, 安弼淳之子甲興, 自上判下, 以爲繼絕存亡之地。」事, 有此呼籲矣. 具氏爲其舅家之宗祀, 以安弼淳子甲興, 兩家同議, 定爲其夫後良之後, 而七年養育, 則倫紀已定, 於情於法, 俱爲得當. 依法典立爲後良之後事, 立案成給, 而安弼良沮戲宗家之立後, 欲奪宗祀之罪, 令該曹各別詳查, 依律嚴處, 何如?’ 傳曰:‘允.’”; 『승정원일기』 순조 9년 2월 18일, “刑曹啓曰:‘西部金忠國擊錚原情內「矣父景文, 推錢相訟, 歸於落科, 與李世文, 偕爲定配, 特爲放送。」事, 向前金忠國亦所供如此, 上裁, 何如?’ 判付啓:‘令該曹稟處.’ 爲良如教.”

46) 『典律通補』「別編」〈本朝文字式〉進箋式.

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넷째, 답箋은 국왕의 嘉禮를 행할 때 왕비로 간택된 집에서 敎書를 받은 뒤 회답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의 가례를 행할 때에는 여섯 가지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 納采·納徵·告期를 행할 때마다 국왕이 왕비로 간택된 집에 교서를 보냈고, 왕비로 간택된 집에서는 교서를 받은 뒤 그에 대한 회답 전문을 올렸다. 답箋은 예문관에서 교서와 함께 지어서 왕비로 간택된 집에 내려주어 그 집에서 이를 바치도록 하였다.⁴⁷⁾ 다섯째, 進書冊箋은 신하가 국왕의 명으로 서책의 편찬을 완료한 뒤에 국왕에게 올리던 전문이다. 조선시대 4차례 간행되었던 법전인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에도 각각 신하들이 법전의 간행을 완료한 뒤에 올린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대부분 箋文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신하들이 箋을 올린 사실이나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을 읽는 절차 등만 수록되어 있다.⁴⁸⁾ 다만 정조의 어머니인 惠慶宮 洪氏의 회갑을 맞은 날에는 昌慶宮의 正殿인 明政殿에서 정조가 직접 箋文과 致詞를 올리고 신하들도 15장의 전문과 1장의 치사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모두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다.⁴⁹⁾

9) 致詞

致詞는 국가에 경사가 있어 신하가 하례하기 위해서 국왕·왕비·왕세자 등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誕日·冬至·정월 초하루 등의 명절이나 즉위·冊封·上尊號 등 경하할 날을 맞아 하례할 때 신하들이 정해진 형식에 따라 치사를 작성하여 올렸다. 치사는 신하가 올렸을 뿐만 아니라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국왕과 왕비에게 올리기도 하였고 국왕이 왕대비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치사의 내용과 형식은 치사를 올리는 사람과 사안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다.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에는 신하들이 국왕·왕비·왕세자에게 각각 올리던 치사의 정형화된 글귀가 수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국왕에게 치사를 올리는 경

47) 『銀臺便攷』 「禮房攷」 <嘉禮>;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5월 22일.

48) 『승정원일기』 인조 6년 9월 14일, “兩功臣謝箋, 入啓, 傳曰:‘知道.’”;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5일, “又啓曰:‘即伏見咸鏡道陳慰箋文, 大王大妃殿, 皆以白色付籤, 有違規例, 不可無驚責之道, 竝推考, 何如?’ 傳曰:‘允.’”;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8월 17일, “展箋官, 以百官箋案入置於座前. 宣箋目官陞自西階, 入詣箋案南, 俯伏跪. 展箋官, 取箋目對展, 宣箋目官讀訖, 降復位. 宣箋官陞西階, 入詣案南俯伏. 展箋官取箋對展, 宗親、文武百官皆跪, 宣箋官讀箋文訖, 降復位. 宗親、文武百官皆四拜, 左通禮進座前, 跪啓禮畢. 上乘輿還內, 諸臣以次退出.”

49)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6월 18일, “乙卯六月十八日卯時, 上詣明政殿, 慈宮邸下周甲誕辰親傳致詞、箋文、表裏入侍時, ……讀箋女官讀箋曰:‘國王某, 恭遇乾隆六十年六月十八日, 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 慈化賁宣, 景祿鼎至, 寶齡聿回於周甲, 慶節載屆於誕辰. 此, 誠我東方莫大之慶, 不勝慶忭之至. 謹奉箋稱賀者, 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 伏以. 化洽萱闈, 方騰如岡之祝; 籌添海屋, 聿回載夙之期. ……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 藝文提學臣閔鍾顯製進. ……”

우는 正朝, 冬至, 誕日, 朔望, 親祭, 慶事, 冊封, 放榜, 上諡이고, 왕비에게 치사를 올리는 경우는 正朝, 冬至, 誕日, 納妃, 冊封이며, 왕세자에게 치사를 올리는 경우는 正朝, 冬至, 誕辰日이었다. 『세종실록』에 수록된 치사는 『國朝五禮儀』 「嘉禮」에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수록되었다.

『승정원일기』에는 대부분 致詞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신하들이 치사를 올린 사실, 치사를 짓기 위한 절차,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사를 읽는 절차 등만 수록되어 있다.⁵⁰⁾ 다만 정조의 어머니인 惠慶宮 洪氏의 회갑을 맞은 날에는 昌慶宮의 正殿인 明政殿에서 정조가 직접 올린 致詞와 의정부에서 올린 치사가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다.⁵¹⁾

2. 문서 내용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1) 草記

草記는 중앙아문에서 아문의 이름이나 관원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이 관할하는 사무 및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안 등에 대해 국왕에게 상달할 때 초기를 사용하였다. 초기는 문서 형식이 간단하여 작성하기가 편리하였으므로 조선 후기에는 啓辭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달문서가 되었다.⁵²⁾ 그러나 지방아문에서는 초기를 사용할 수 없고 중앙아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초기라는 이름의 문서가 맨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선조 7년(1574)이지만, 그보다 앞선 명종 중기나 말기부터는 초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50)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윤7월 28일, “禮曹啓曰:‘來八月十五日大殿誕日陳賀時, 王世子致詞陳賀等節目, 依例磨鍊乎? 敢稟.’ 傳曰:‘權停.’”; 『승정원일기』 영조 3년 3월 20일, “丁未三月二十日巳時, 上御仁政殿, 親臨受賀時, ……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 贊儀偃跪, 王世子跪. 代致詞官致詞云:‘王世子臣某云云.’ 賀訖俯伏興, 降復位. 贊儀唱俯伏興四拜興平身, 王世子俯伏興四拜興平身. 相禮引王世子出就次. 宗親、文武百官, 鞠躬四拜興平身. 代致詞官致詞云:‘議政具官臣某等云云.’ 賀訖, 俯伏興降復位.”; 『승정원일기』 순조 2년 7월 24일, “洪義浩, 以尊崇都監都提調意啓曰:‘大王大妃殿致詞一道、箋文一道, 王大妃殿致詞一道、箋文一道, 各書眞諺二本, 謹此封進之意, 敢啓.’ 傳曰:‘知道.’”

51)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6월 18일, “典言代致詞云:‘國王某, 恭遇乾隆六十年六月十八日, 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 歲回降乙, 節屆流虹, 嗣徽周室, 含飴漢宮, 猗茲邦慶, 我家初有, 樂哉今辰, 頌騰萬壽. 此, 誠我東方莫大之慶, 不勝慶忭之至.’ 藝文提學臣閔鍾顯製進. 賀訖, 俯伏興, 還復位. ……代致詞官進北向跪致詞云:‘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洪樂性等, 恭遇乾隆六十年六月十八日, 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 震邸配德, 京室嗣音, 含章履貞, 慈天光臨, 箕疇膺福, 寶籌彌隆, 花甲屆辰, 百祥和融, 慈德愈謙, 聖孝益彰, 於千萬年, 受祿無疆. 此, 誠我東方莫大之慶, 不勝慶忭之至.’ 內閣知製教臣李始源製進. 賀訖, 以致詞還置於函, 承文院官捧致詞函, 跪進于議政前, 議政受函, 以授尙傳, 尙傳進跪受函, 以授司謁.”

52) 이강옥,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 한국고전번역원, 2009, 330~333쪽.

보인다.⁵³⁾

초기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에는 都提調가 있는 衙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초기를 보면 그 외의 아문에서도 초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는 사용하는 아문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都提調가 首長인 都提調衙門의 초기이고,⁵⁴⁾ 둘째는 提調가 수장인 提調衙門의 초기이며,⁵⁵⁾ 셋째는 都提調와 提調가 아예 없는 아문인 非提調衙門의 초기이다.⁵⁶⁾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초기의 특징은 초기를 入啓한 승지의 성명과 ‘以’ 자를 초기의 서두 앞에 기록하고, 원래의 초기 서두에는 없는 ‘意’ 자나 ‘言’ 자를 ‘啓曰’ 앞에 추가로 기록한다는 점이다.

2) 啓辭

啓辭는 중앙아문에서 관원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이 관할하는 사무 및 국왕으로부터 재가 받은 사무에 대해 상달하거나 여러 관원이 연명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계사를 사용하였다. 啓辭는 草記 및 啓目과 함께 중앙아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조선 초기의 실록에 나타나는 啓辭는 ‘신하가 국왕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계사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간에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15년부터 臺諫의 啓辭를 글로 작성해서 아뢰도록 하면서부터는 계사가 상달문서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⁵⁷⁾

계사는 계사를 올리는 아문에 따라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로 나눌 수 있다. 아방계사는 都提調가 없는 중앙아문에서 首長이 직접 승정원의 兒房에 나아가서 국왕에게 올리던 계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아방계사가 별로 기록되

53) 이강욱, 위의 논문, 311~312쪽.

54) 『승정원일기』영조 35년 12월 21일, “又以承文院官員以都提調意啓曰: ‘龍川漂民出送事, 瀋陽禮部咨文出來, 而自前漂人出來, 則例有無方物謝表矣。今, 亦以待使行祇謝之意, 撰出回咨, 別定禁軍, 給馬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送瀋陽之地, 謝表, 亦令撰出付送於前頭使行, 何如?’ 傳曰: ‘允。’”

55) 『승정원일기』영조 2년 6월 3일, “李顯祿, 以司僕寺官員以一提調意啓曰: ‘本寺南廡及右邊馬廊等處, 通計數十餘間, 年久頽圯。自本寺料理物力, 或因舊修補, 或毀撤改建, 主簿李夏範, 以該掌郎廳, 專管董役矣, 昨日政, 移拜禁府都事。如此巨役, 不可付之生手, 李夏範, 限數朔畢役間, 姑爲仍任勿遷, 何如?’ 傳曰: ‘允。’”

56) 『승정원일기』정조 23년 8월 24일, “金義淳, 以吏曹言啓曰: ‘全羅道靈光金命喆上言內「其父辰雲, 今年爲八十七歲, 甲寅春, 以偕老陞資, 乙卯年曠世之恩, 俾陞嘉善。」事, 有「相考其時文蹟及帳籍草記。」之命矣。取考京兆帳籍, 則年甲、名字, 不無些少違錯, 而甲寅年特恩, 旣蒙陞資之典, 則未滿九十之前, 又此呼籲, 事係格外。且乙卯年無士庶老人加資之典, 則稱以漏落云者, 亦涉無據。上言內辭緣, 勿施, 何如?’ 傳曰: ‘允。’”

57) 이강욱,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128~132쪽;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45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116~118쪽.

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방계사를 올려야 하는 아문에서도 초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⁵⁸⁾ 비아방계사는 아문의 수장이 승정원의 兒房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 承旨와 承傳色을 청하여 해당 아문에서 직접 올리던 계사를 말한다. 『승정원일기』에 비아방계사를 올린 아문으로 기록된 곳은 承政院, 藥房, 兩司, 그리고 吏批와 兵批이다.⁵⁹⁾ 그 외에도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특별히 올리는 계사인 特定啓辭가 있었다. 대표적인 특정계사로는 庭請啓辭, 實廳啓辭, 院議啓辭 등이 있었으며, 이들도 모두 비아방계사의 일종이다.⁶⁰⁾ 『승정원일기』에는 원래 계사의 서두에 작성된 것처럼 계사를 올리는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관사명으로 바꾸어서 ‘司憲府啓曰’이나 ‘府啓曰’, ‘司諫院啓曰’이나 ‘院啓曰’, ‘藥房啓曰’, ‘政院啓曰’ 등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⁶¹⁾

58) 『승정원일기』에서 ‘兒房啓曰’로 검색하면 총 15건이 나온다. 『승정원일기』영조 즉위년 11월 19일, “水庫提調金演兒房啓曰: ‘本庫藏水方急, 而新除授西水庫別提姜澤, 時在慶尙道鎭海縣任所, 時月之內, 勢未及上來, 莫重藏水, 未免過時之弊。令該曹在京無故人口傳換差事, 分付之意, 惶恐敢啓。’ 傳曰: ‘依啓。’”

59) 『승정원일기』정조 23년 8월 22일, “藥房都提調李秉模、提調金文淳、行左承旨李祖承啓曰: ‘明禋載舉於謁陵, 聖孝克伸於拜園, 移蹕多日, 回鑾萬安, 伏未審夜間聖體, 若何? 寢睡、水刺之節, 何如? 臣等率諸御醫, 趁早入診, 詳察聖候爲宜。王大妃殿氣候, 何如? 惠慶宮氣候, 何如? 臣等不任區區伏慮,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승정원일기』정조 23년 8월 24일, “執義沈奎魯、掌令南惠寬啓曰: ‘臣等俱以無似, 忝叨見職, 一事緘默, 恒切愧慙。……請命遞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亦勿退待。’”; 『승정원일기』순조 18년 8월 16일, “又啓曰: ‘右副承旨李勉求, 今日不爲仕進, 卽爲牌招, 何如?’ 傳曰: ‘許遞, 前望單子入之。’ ○ 承旨前望單子入之, 李錫祐落點。”

60) 『승정원일기』영조 1년 6월 17일, “議政府左議政臣閔鎮遠、右議政李觀命、吏曹判書李宜顯、戶曹判書申思喆、工曹判書黃一夏、行護軍吳重周、刑曹參判張鵬翼、行護軍李鳳祥、兵曹參判黃龜河、漢城右尹李喬岳、慶尙左兵使崔鎮漢等詣實廳啓曰: ‘彝倫之變, 莫大於君誣之罔極, 而一日未辨, 則君不得爲君, 而受萬世之疑; 『春秋』之義, 莫嚴於天討之奉行, 而一日少緩, 則臣不得爲臣, 而被萬世之誅, 安有君不君臣不臣而綱常不滅者哉! 亦安有綱常數滅而其國不亡者哉! ……伏願聖上亟從三司之請, 使聖誣伸王法正而君臣之分大定, 幸甚。’ 答曰: ‘予意已諭, 須勿更煩焉。’”; 『승정원일기』정조 1년 11월 25일, “院議啓曰: ‘伏以。臣等卽伏承傳教下者, 有逆禮以三品禮安葬事, 分付於內需司之命矣。……伏願亟加三思特寢逆禮葬以三品之命焉。臣等職忝出納之地, 不敢終默, 謹此繳還。無任兢惶之至。’ 答曰: ‘喉院之以三品禮三字爭難, 亦無怪矣。此三字抹去, 原傳教, 卽爲頒布舉行。’”; 『승정원일기』정조 24년 1월 21일, “議政府領議政李秉模、左議政沈煥之、右議政李時秀率百官庭請啓曰: ‘殿下今日之聖慕, 臣等亦非木石, 豈敢不仰體! 而聖候諸節, 萬萬焦迫, 湯劑連進, 尚未承回鑾之命, 臣等庭籲, 安得少緩乎! 情急者, 言不暇長, 伏乞亟下還宮之教, 千萬顯祝, 惶恐敢啓。’ 答曰: ‘卿等退俟之, 則當引接矣。’”

61) 『승정원일기』영조 7년 3월 23일, “藥房啓曰: ‘今日入侍時, 醒心散十貼進御事, 定奪矣。諸御醫等皆以爲「元方中, 生地黃代, 以乾地黃、石菖蒲減半宜當。」云。此藥五貼, 先爲劑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영조 51년 12월 2일, “兩司合啓曰: ‘請黑山島荇棘罪人朴盛源, 拿鞠嚴問快正王法。’ 上曰: ‘已諭勿煩。’ 又啓曰: ‘請黑山島圍籬安置庶民罪人李迪輔, 亟令王府拿鞠嚴問快正王法。’ 上曰: ‘已諭勿煩。’ 府啓曰: ‘請還寢罪人梁成卜減一律島配之命。’ 上曰: ‘勿煩。’ 又啓曰: ‘請固城縣充軍罪人咸道亨, 依本律處斷。’ 上曰: ‘勿煩。’ 院啓曰: ‘請黑

3) 啓目

啓目は 중앙아문에서 아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의 사무와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안 및 다른 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안에 대한 해당 아문의 의견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계목을 사용하였다. 계목은 지방아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앙아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목이 공식적인 문서로 성립된 시기는 태종 12년(1412)으로, 그전에 消息으로 불리던 문서를 계목으로 고치면서부터였다.⁶²⁾ 계본과 계목은 같은 시기에 성립된 문서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서의 사용 빈도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를 보면, 계본은 드문드문 보이는 반면 계목은 빈번하게 보인다.

『典律通補』「本朝文字式」〈啓目式〉에 의하면, 계목의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원래의 문서를 계목에 첨부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원래의 문서 내용을 계목의 본론 앞에 요약하는 형식이다. 전자를 粘連啓目이라 하고 후자를 節呈啓目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원래의 문서’란 해당 계목을 올리는 관사에 국왕이 啓下한 문서 또는 屬衙門 등에서 보내온 문서를 가리킨다. 이것은 계목의 용도가 계하받은 사안에 대해 국왕에게 回啓하거나 속아문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4) 書啓

書啓는 왕명을 수행한 관원이 수행 결과를 서울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올리던 문서이다. 여기에서 ‘왕명을 수행한 관원’은 使臣과 御史처럼 왕명을 수행할 동안만 한시적으로 맡는 權設職에 제수되어 왕명을 수행하던 관원과 별도의 권설직에는 제수되지 않고 承旨와 注書처럼 본래의 관직 또는 軍職을 맡은 채 왕명을 수행하던 관원이 있었다. 이들이 왕명을 수행하고 서울에 돌아온 뒤 또는 서울에서 왕

명을 수행한 뒤 수행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할 때 올리던 문서가 서계였다. 따라서 서계를 올린 관원은 대부분 權設職과 京官職이었다. 서계의 본래 의미는 ‘글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다.’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書啓의 용례를 살펴보면 서계가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된 시기는 명종 중기 이후부터로 보인다.⁶⁴⁾

『승정원일기』보다 더 많은 서계가 수록되어 있는 정조대 『일성록』에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계가 802건인데, 이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⁶⁵⁾ 첫째, 傳諭書啓는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大臣과 山林 등에게 傳諭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던 서계이다. 傳諭란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敦諭·別諭·批答 등을 대신이나 산림 등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奉審摘奸書啓는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奉審하거나 摘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던 서계이다. 奉審은 陵·園·墓와 殿閣, 제사를 지낼 곳 등에 달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을 가리키고, 摘奸은 民情·農事·災害·植木의 상황, 獻官의 齋戒, 科試의 진행, 入直·巡行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御史書啓란 국왕의 명을 받은 御史가 수행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던 서계이다. 御史는 왕명을 받아 暗行, 按覈, 慰諭, 監賑, 試才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되던 관원으로, 堂下官일 경우에는 ‘御史’로 부르고 당상관일 경우에는 ‘使’ 또는 ‘御使’로 불렸다.⁶⁶⁾ 넷째, 看病書啓는 국왕의 명을 받은 醫官이 신하의 병세를 살펴보거나 치료한 뒤 수행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던 서계이다.⁶⁷⁾

『승정원일기』에는 위의 서계 중 傳諭書啓가 직접 인용 형식으로 다수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서계는 자주 보이지 않는다.⁶⁸⁾ 특히 御史書啓는 비변사가 回啓하거나 大臣이 입시하여 稟處할 때 서계의 사안별로 ‘其一’로 열거하였다.⁶⁹⁾

64) 이강욱, 「書啓에 대한 考察」, 『한국문화』 8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15~17쪽.

65) 위의 논문, 32~39쪽.

66) 『六典條例』「吏典」〈議政府〉總例, 〈吏曹〉文選司 總例.

67) 김병구는 간병서계를 醫官書啓라고 불렀다. 김병구, 「조선시대 醫官 書啓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56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68)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월 22일, “**醫官金光顯書啓**: ‘奉朝賀洪國榮病症看審, 則脈度與痰嗽, 比昨一樣, 所服湯藥, 限十貼連用之意, 言于主家, 而主家以爲‘今, 則諸症頗減, 而所餘咳嗽, 日寒稍解, 自可差愈, 王人久留, 心甚不安, 今日撤去, 以安病心.’云。臣不得已罷歸之意, 竝以詮次啓達.’ 傳曰: ‘姑爲仍留, 着實看病.’”;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9월 11일, “**宣傳官柳興源書啓**: ‘臣, 於當日辰時量, 伏奉聖教, 馳往漢江龍壇, **奉審摘奸**是白乎則, 壇上及紅箭門, 俱爲無頃是白乎矣, 四面壇垣, 則間多頽圯是白遣, 壇後松木, 僅爲十九株, 而十一株, 則自枯已久是白遣, 紅箭門外西邊十步許, 有一樵路, 顯有來往之痕, 故招致壇直輩及洞里任掌等, 另加禁斷之意, 嚴飭是白齊.’”;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4월 27일, “**右副承旨金翰東書啓**: ‘臣敬奉聖諭, 馳往傳諭于東部建德坊景慕宮二契議政府右議政李時秀所住處, 則以爲‘……’云矣, 敢啓.’”

69) 『승정원일기』 정조 1년 10월 29일, “尙詰曰: ‘此, **江原道慰諭御史沈豐之書啓也**. ……」尙詰曰: ‘**其一**, 麟蹄春牟六百二十五石及留庫穀八石, 水沈生芽, 故還捧次分給民間, 而民之受去者, 不得食, 未免空棄, 合有蕩滅事也. 兩邑漂失之穀, 雖因道臣狀請, 方有蕩滅之命,

山島充軍罪人黃宅仁, 依律處斷.’ 上曰: ‘勿煩.’ 又啓曰: ‘請固城縣充軍罪人咸道亨, 依本律處斷.’ 上曰: ‘勿煩.’”

62)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9~14쪽.

63) 『승정원일기』 효종 1년 5월 1일, “**忠勳府啓目**: ‘節呈故完城府院君崔鳴吉戶奴呈狀于本府曰‘……’ ……該邑守令, 從重推考, 謀奪奸民等乙良, 依法重治, 以杜後日之弊事, 本道監司處行移, 何如?’”; 『승정원일기』 정조 5년 윤5월 1일, “**備邊司啓目**: ‘粘連云云. 因各道監、兵、水使狀啓, 八道兵馬, 依親騎衛、別武士例, 每年秋成後, 分左、右道, 各設都試, 兵使主行, 無兵使處, 則監司主行, 優等一人, 則狀聞直赴, 而仍又以次陞遷於該邑軍任, 之次, 則限幾人, 亦以次陞遷, 似合事宜. 以此定式, 而合行節目, 更令道、帥臣相議酌定, 狀聞舉行, 何如.’”;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8월 5일, “**刑曹粘連啓目**: ‘慶尙道尙州牧丁得打殺僧有嘩獄事, 松峴路破笠之際, 斗發怒氣, 奉踢交加, 痕損狼藉, 翌朝致命, 順太立證, 而敢以昏夜顛仆之說, 一直抵賴, 萬萬兇獍, 加刑輸款, 何如?’”

5) 上疏

上疏는 전직·현직 관원 및 儒生 등이 時政에 대한 의견이나 개인적인 소회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였다. 상소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직 관원이 아닌 전직 관원과 유생들도 올릴 수 있는 문서였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上言과 擊錚原情처럼 일반 백성까지 상소를 올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상소는 공적인 사안을 상달할 때는 물론이고 사적인 사안을 상달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상달문서와 구별되는 상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상소가 보이기 시작하며, 조선 시대 내내 상달문서로 사용되었다.

상소는 올리는 사람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獨疏와 聯疏로 나눌 수 있다. 獨疏는 1명이 단독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키고, 聯疏는 2명 이상이 聯名으로 올리는 상소를 가리킨다. 상소의 내용에 따라서는 크게 私的인 상소와 公的인 상소로 나눌 수 있다.⁷⁰⁾ 사적인 상소로는 신하가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으로 올리던 辭職疏, 관원이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政界에서 은퇴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리던 致仕疏, 중앙관사의 관원이 시골에 있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고을 수령에 제수해줄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乞郡疏, 관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결문을 나가면서 올리던 徑出疏, 관원이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거나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관직을 맡을 수 없는 처지라는 내용으로 올리던 引嫌疏가 있었다. 공적인 상소로는 관원이 時事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言事疏, 전직·현직 관원 및 유생 등이 助言을 구하는 국왕의 뜻에 부응하여 올리던 應旨疏, 言官이 아닌 관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서 국왕에게 간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執藝疏가 있었다. 그 외에 유생들이 올리던 儒生疏, 草野에 있는 신하가 서두에 관직명 대신에 草莽臣이라고 적어서 올리던 草莽疏, 부모의 喪中에 있는 신하가 서두에 草土臣이라고 써서 올리던 草土疏, 죄를 짓거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또는 전직 관원이 서두에 관직명을 쓰지 않고 負罪臣이라고 써서 올리던 負罪疏, 지방에 있는 신하가 거주하고 있는 縣과 道를 통해서 올리던 縣道疏 또는 從縣道上疏가 있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상소는 직접 인용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경우와 간접 인용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⁷¹⁾ 간접 인용 형식으로

而此，則既已分給，則與全然漂失者有異，不可盡數蕩滅，待明年除耗捧上之意，分付，何如?’ 上曰:“麟蹄之民，視他災邑，其所矜恤，尤甚自別，一竝特爲蕩滅，可也。”

70) 이강욱, 「上疏와 筭자의 형식 및 분류」, 『한국문화』 8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145~148쪽.

71) 『승정원일기』 경종 1년 8월 22일, “延祔君上疏: ‘伏以. ……伏願聖明上念宗社下副臣民，亟稟慈聖，還收成命，不勝幸甚。 臣無任涕泣祈懇之至，謹昧死以聞。’”; 『승정원일기』 영조 5년 5월 21일, “副校理李宗城上疏, 大概‘臣情病交劇，積逋嚴命，分義都虧，罪合萬殞，重誅不加，除命復降。 而念臣踪地，終無冒出之理，動駕隔宵，未由陪扈，有臣如此，生不

기록할 경우에는 상소의 내용을 요약하여 ‘大概~事’라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적었다. 상소의 서두와 본론의 맺음말에는 일정한 투식어를 사용하였으나, 『승정원일기』에 상소를 수록할 때에는 이러한 투식어를 대부분 생략하였고, 말미에 적은 연호와 연월일 및 短衙 등도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6) 筭子

筭子は 大臣과 國舅 및 三司의 관원 등이 개인의 소견이나 관사의 통일된 의견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차자도 상소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사안과 사적인 사안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였으나, 차자의 문서 형식은 상소에 비해 간략하였고 문서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의 범위도 달랐다. 차자는 성종 4년(1473) 徐居正의 건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⁷²⁾ 차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다양한 관원들이 차자를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현직 관원 중에서도 일부의 관원만 제한적으로 차자를 사용할 수 있었다. 『公車類覽』에는 ‘차자는 大臣과 國舅 및 三司 이외에는 聯筭을 올릴 수가 없으며, 獨筭의 경우에는 옛날에 삼사도 더러 올리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대신 이외에는 그러한 예가 드물다.’라고 하였다.⁷³⁾ 이것은 연차와 독차를 올릴 수 있는 신하들의 범위에 대해 구분해서 말한 것이지만, 연차나 독차를 막론하고 차자를 올릴 수 있는 관원은 사실상 대신과 국구, 대간과 옥당으로 제한되었다는 말이다.

차자도 상소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올리는 獨筭와 연명으로 올리는 聯筭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자를 올리는 관원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차자를 올리는 관원의 신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大臣의 차자, 둘째는 玉堂의 차자, 셋째는 臺諫의 차자이다. 그 외에 國舅 및 예외적인 차자들이 있다.⁷⁴⁾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차자도 상소와 마찬가지로 직접 인용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경우와 간접 인용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⁷⁵⁾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차자의 내용을 요약하여 ‘大概~事’라고 간략하게

如死。 伏乞亟降鐫削，仍命重勘以肅朝綱以靖私分。’事，呈本院，還出給。”

72) 『성종실록』 4년 1월 21일(임자), 8월 4일(계해), 19년 12월 24일(계축).

73) 『公車類覽』 「疏書筭凡例」. 『弘文館志』에서는 玉堂이 避嫌한 臺諫을 處置할 때에는 獨筭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고, 『六典條例』에서는 대사헌과 대사간도 獨筭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弘文館志』 「館規」 <疏筭>; 『六典條例』 「吏典」 <司憲府> 臺體.

74) 이강욱, 「上疏와 筭자의 형식 및 분류」, 169~176쪽.

75) 『승정원일기』 경종 1년 8월 24일, “右議政趙泰壽筭: ‘伏以. 臣於病伏垂死中，卽伏見因司直柳鳳輝疏陳，至有設鞫之舉，何至於是耶! ……伏願聖明特加三思，亟收成命焉。 臣固知力微言疏無望於回天，而愚衷所激，敢有此妄發，亦願聖明澄省焉。 ’”; 『승정원일기』 경종 1년 10월 17일, “領議政金昌集、領府事李頤命、判府事趙泰采、左議政李健命筭子, 大概‘臣等累日庭籲，未蒙察納，伏地俟罪，鈇鉞是甘。 及承去夜批旨，驚違震怖，心膽俱墜，茲敢略貢愚忱，以備裁察。’事，入啓。”

요약하여 적었다. 『典律通補』 「本朝文字式」 〈筭子式〉에 의하면, 차자의 서두에는 單銜과 ‘臣’ 자 및 성명을 적고 본론을 서술한 뒤 ‘取進止’로 마무리하고, 말미에는 年號와 연월일을 적도록 하였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차자는 서두에 단함과 성명을 적은 뒤 ‘筭子’나 ‘筭’라고 적고서 본론을 기록하였고, 말미는 기록하지 않았다.

Ⅲ.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國王의 下達文書

1. 문서 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1) 教旨

教旨는 국왕이 신민에게 자격 및 권리 등을 증명하기 위해 御寶를 찍어 발급하던 하달문서이다. 교지는 그 발급사유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4품 이상의 관직에 제수된 관원 및 당상관의 아내에게 발급하는 告身, 文科 또는 武科에 及第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紅牌, 生員試 또는 進士試에 入格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白牌, 국왕이 신하에게 토지와 노비를 하사할 때 및 鄉吏의 身役을 면제해줄 때 발급하는 문서, 죽은 사람에게 관직이나 諡號를 追贈할 때 발급하는 문서 등이 모두 교지라는 이름으로 발급되었다.⁷⁶⁾

이러한 교지는 국왕이 발급하던 일종의 임명장이나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각 관사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왕과 신민이 주고받은 문서들을 기록하는 『승정원일기』에 수록될 성격의 문서가 아니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에는 교지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문서 안이나 대화 내용 안에서 교지라는 문서명만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⁷⁷⁾

2) 傳旨

傳旨의 본래 의미는 ‘旨를 전하다.’였다. 이때의 ‘旨’는 국왕의 명령이나 생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켰다. 따라서 전지는 곧 ‘국왕의 명

령이나 생각을 전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한편으로 傳旨는 국왕의 하달문서 일종이었다. 전지의 본래 의미인 ‘국왕의 명령이나 생각을 전하다.’에서 ‘국왕의 명령이나 생각을 전하는 문서’, ‘관사 또는 신하에게 전달한 국왕의 명령이나 생각’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지는 국왕의 명의로 발급되지 않고 승정원에서 발급하였다. 즉 승정원이 국왕의 명령이나 생각을 글로 작성하여 그것을 실행할 관사에 전해주는 문서가 전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지는 승정원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왕명을 전달하기 위한 하달문서였다.

정조는 전지를 流音傳旨와 下音傳旨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유음전지는 승정원의 승지가 국왕의 전교를 요약 정리하여 주서에게 주면 주서가 작은 글씨로 작성한 뒤 국왕의 재가를 받던 전지이고, 하음전지는 국왕의 재가를 받은 전지를 주서가 베끼고 승정원의 관인을 찍은 뒤 승지가 長銜을 적고 서명하여 담당 관사에 내려주던 전지이다.⁷⁸⁾

『승정원일기』에는 전지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대부분 전지의 내용을 대표하는 어휘를 붙여서 ‘○○傳旨’로 기록되었다. 이는 전지가 승정원의 문서라는 점과 전지의 내용이 투식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지의 내용은 관리에 대한 징벌과 시상이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지의 이름도 ‘推考傳旨’와 ‘罷職傳旨’ 등 징벌에 관한 전지와 ‘加資傳旨’와 ‘賜給傳旨’ 등 시상에 관한 전지가 주를 이루었다.⁷⁹⁾

3) 有旨

有旨는 승정원의 승지가 지방의 관원에게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작성하여 보내던 문서이다.⁸⁰⁾ 즉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지방의 관원에게 전달할 때 승정원에서 작성하여 보내던 왕명 전달문서로, 有旨書狀이라고도 불렸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서로서의 유지가 『문종실록』에 처음 보이고, 문종 이후로 유지가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인다.⁸¹⁾ 유지에는 국왕의 下諭 내용을 서술하고

76) 조선시대 관원의 임명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는 유지영의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 관련 教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제30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7)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7일, “吏批啓曰:‘前後口傳差出之官教, 今當下批, 而嗣位以前, 當書以令旨者, 今, 則皆以教旨書之之意, 敢啓.’”; 『승정원일기』 정조 5년 3월 29일, “上曰: ‘檢書官, 旣非實職, 則教旨實官銜下, 當書以兼奎章閣檢書官書之. 南行, 自古無兼職之例, 何以則爲好耶?’ 民始等曰: ‘聖教至當矣. 南行, 元無兼帶之法, 教旨中兼檢書官書之, 似不合矣.’”

78)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3월 22일, “傳于尹行任曰:‘禁府文書, 無非議讞, 所關至重. 時囚之一放一仍, 先有流音傳旨, 又有下府傳旨, 旣囚之後, 又有囚單, 法意何等嚴密乎! ……’”;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5월 12일, “判付啓:‘……爵賞、刑殺之下各司者, 傳教書出後, 承旨抄出, 書下堂后, 注書細書, 摺貼啓下, 謂之流音傳旨, 注書又膽草踏印, 承旨具銜, 下該司, 謂之下音傳旨.’”

79)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3월 24일, “傳于李景仁曰:‘癸酉年鄭鳳壽加資傳旨, 覓入.’”;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24일, “同副承旨趙遠命牌不進罷職傳旨, 傳于俞命凝曰:‘推考傳旨捧入.’”;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19일, “上命彥燮書副摠管洪處武處弓袋、筒箇賜給傳旨.”

80) 최승희는 有旨에 대해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접 작성 書寫하여 被命者에게 전달하는 王命書이다.’라고 하였다. 최승희, 앞의 책, 73쪽.

81) 『문종실록』 1년 9월 29일(갑자), “仲孫馳書于江原道監司曰:‘前者, 司憲府移文所推婦女上寺事干僧徒, 除刑問囚禁推鞠.’事, 有旨.” 노인환은 조선시대 승정원의 유지는 고려

마지막에 ‘~事有旨’로 마무리하였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이후로는 규장각이 지방에 있는 각신에게 국왕의 명을 전달할 때에도 직접 유지를 발급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지방 관원에게 下諭할 내용을 유지로 작성해서 보낸다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유지의 내용이 기록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⁸²⁾ 유지도 전지와 마찬가지로 승정원의 이름으로 작성한 하달문서라는 점과 유지의 내용이 투식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영조 4년(1728)에 李麟佐와 鄭希亮 등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영조가 경기를 비롯한 5도의 監司에게 내린 명령을 有旨로 작성하여 전달하였는데, 이때의 유지 내용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⁸³⁾

4) 封書

封書는 글자 그대로 ‘밀봉한 문서’ 또는 ‘밀봉한 서찰’을 가리킨다. 따라서 봉서는 문서명이라기보다는 문서 또는 서찰이 밀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봉서도 관원과 백성이 올린 봉서도 있고 국왕과 왕대비가 내린 봉서도 있어 봉서를 통일된 형식의 문서로 보기가 어렵다. 국왕이 내린 봉서 중 조선후기의 사료에도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는 국왕이 御史에게 내린 봉서였다.⁸⁴⁾ 국왕이 지방에 어사를 파견할 때 봉서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명종 때부터였다.⁸⁵⁾

어사도 파견 목적에 따라 暗行御史, 慰諭御史, 監賑御史, 試才御史, 按覈御史 등 다양하였다. 그중 국왕이 暗行御史에게 내려준 封書에는 어느 지역으로 파견하

시대 宣傳消息에서 기원하였고,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內傳消息으로 시행되었다가 세종 25년에 諭書와 有旨로 그 기능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았다.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규장각』 제51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407쪽.

82)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5일, “傳于金光炫曰:‘慈殿所進生鯁, 罔晝夜照氷上送事, 黃海監司處, 下諭。 此有旨, 禁軍給馬齎送。’”; 『승정원일기』 효종 7년 4월 24일, “以正言柳樞處下諭有旨, 傳曰:‘只上來事, 下諭, 勿爲乘駟事改入。’”

83) 『승정원일기』 영조 4년 3월 17일, “諭京畿監司曰:‘……卿其體予夙夜憂念元元不敢寧處之意, 卽日宣布此旨, 曉告民間, 亦令爲其守令, 別爲招徠安撫, 俾流散者, 刻期還集, 均分糴糶, 勸課耕桑, 俾不失時, 盡卿承流之責, 寬予宵旰之憂。’事, 有旨。’……淳曰:‘京畿, 旣已揭榜曉諭之意, 分付, 其餘忠淸、全羅、慶尙、江原等道, 亦爲一體書送諭旨, 何如?’上曰:‘依爲之。’諭四道監司曰:‘今此奸徒聚會, 實爲妖惡。 凡民中如有調察來告同力捕納者, 自有當施之勳功, 而初雖誤入賊黨者, 後能自新發告, 則亦當赦其罪而論其功。 以此意, 急急知委各道, 使之處處坊曲及通衢大路, 揭榜曉諭。’事, 有旨。【楊前下教。】淳曰:‘此有旨, 當急速下送, 而出使無數, 驛馬無待令者云, 無以別定以傳之, 招致各道界首官, 以傳何如?’上曰:‘依爲之。’”

84) 최승희는 封書에 대해 ‘국왕이 종친이나 근신에게 내리는 私書이다. 왕비가 친정에 보내는 사서도 봉서라 한다. 특히 봉서로서 중요한 것은 암행어사에게 내리는 것인데, 그 봉서의 끝에 도○○문외개탁(到○○門外開帙)이라 써서 ○○문 밖에서 개봉하도록 하였고, 즉시 대상 지방으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 최승희, 앞의 책, 103쪽.

85) 『명종실록』 2년 5월 13일(계해), 9년 7월 2일(경자)·10일(무신), 11년 4월 5일(계사).

는 어사로 삼는다는 것과 암행할 지역을 명기하고 암행하면서 살펴야 할 사항을 열거하였다. 그러한 내용은 비밀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에도 대부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왕이 어사를 파견할 때 봉서를 내려주는 기사와 어사가 復命하여 결과를 보고할 때 봉서를 언급한 사례가 많았다.⁸⁶⁾

2. 문서 내용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기록한 문서

1) 下教

敎는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敎는 舜임금이 契를 司徒로 삼으면서 ‘공경히 오교를 펼치라.[敬敷五敎]’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⁸⁷⁾ 敎는 윗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나 행동을 가리키며, 윗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그것을 본받는다는 뜻에서 ‘본받다[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⁸⁸⁾ 중국을 통일하여 秦나라를 세운 始皇帝가 황제의 명령이나 명령문을 制 또는 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후 漢나라에서도 이를 답습하면서 王과 諸侯의 명령이나 명령문은 敎라고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⁸⁹⁾

下敎의 원래 의미는 ‘敎를 내리다.’이다. 국왕의 말과 명령을 나타내는 ‘敎’를 내린다는 것이 하교의 본래 의미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도 찾을 수 있다.⁹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하교도 ‘교를 내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켰는데, ‘敎’의 의미가 국왕의 말인지 문서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느 시점부터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점차 국왕의 구두로 내린 명령은 下敎라고 부르고 서면으로 내린 명령은 傳敎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하교가 주로 국왕이 신하에게 구두로 내린 말이나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조는 筵席에 나아온 신하들이 직접 귀로 듣고서 물러나 거행하는 것을 ‘下敎’라고 하였고, 承傳色이 전달한 국왕의 말을 여섯 승지가 글로 옮겨 적은 것을 口

86)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6월 13일, “備忘記:‘昨觀江原道暗行御史沈壽賢書啓, 則封書中農事形止、搜訪人才兩條, 俱無舉論之事, 殊涉疎漏, 推考。’”;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3월 19일, “辛酉三月十九日酉時, 上御熙政堂。 御史牌招人林象元、尹得載引見時, ……上仍下封書二度曰:‘封書, 例於出城後拆見, 而今則有面諭事, 爾等出往戶外, 拆見後入來。’二人趨出拆見後, 還入侍。”; 『승정원일기』 정조 7년 11월 10일, “上曰:‘封書, 持來乎?’弘鎮曰:‘持來矣。’上命浩修讀封書, 命弘鎮讀書啓。”

87) 『書經集傳』 「虞書」 <舜典>.

88) 『說郛』 「滄浪詩話」 <詩辯>: 『太平御覽』 「文部」 <敎>.

89) 徐望之, 『公牘通論』, 檔案出版社, 1988, 9·13쪽.

90)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德王 4년 4월 미상, 神文王 1년 8월 16일; 『三國遺事』 「興法」 ‘難陀關濟’.

傳下敎라고 하였다.⁹¹⁾ 정조의 말에 의하면, 下敎는 입시한 신하들이 국왕의 면전에서 직접 받은 명령을 가리키고, 口傳下敎는 승전색이 승정원에 전달한 국왕의 명령을 가리킨다. 신하들이 입시한 상태에서 내린 국왕의 하교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국왕이 신하들과 주고받은 말들을 모두 가리키고, 또 하나는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의 말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가리킨다. 그중 후자를 櫛前下敎라고 하였다. 즉 국왕의 말 중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문서로 작성한 것은 榻前하교라고 하고 신하들이 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전색이나 사알을 통해 승정원에 전달한 하교는 口傳下敎라고 한 것이다.⁹²⁾

『승정원일기』에도 구전하교와 榻前하교가 그 내용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다.⁹³⁾ 그중 榻前하교는 승지가 입시한 상태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군신이 만나 대화하는 입시기가사 안에 수록되어 있고, 구전하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내리기 때문에 승정원이 출납한 문서들을 기록한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2) 傳敎

傳敎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史料에는 보이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 보이기 시작한다. 조선 전기의 實錄에 보이는 전교는 대부분 ‘敎를 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교’가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교도 ‘국왕의 말 또는 글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전교는 하교와 의미상의 차이를 사실상 찾을 수가 없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종 중반 이후에는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교를 전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국왕이 內官이나 관원 등을 시켜 전교하게 한 기록 및 국왕이 관원 등을 불러서 전교한 기록들이 성종 때부터 드물게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전교를 명사로 사용한 사

례는 세종 때 처음 보이기 시작하여 세조~성종 사이에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셋째, 전교를 문서로 볼 수 있는 ‘傳敎를 보았다.’라고 기록된 사례가 성종 중반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정조는 전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즉 어전에서 임금이 구두로 불러준 말을 입시한 승지가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과 사알을 통해 각 承旨房에 전달한 임금의 명을 각 해당 승지방에서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을 ‘傳敎’라고 한 것이다.⁹⁴⁾ 정조의 이 말은 전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나는 입시한 승지가 어전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받아 적은 전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승지가 승정원에서 사알이 전해준 국왕의 명령을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국왕의 전교를 가리킨다. 그중 전자를 櫛前傳敎라 불렀고 후자를 備忘記라 불렀다.⁹⁵⁾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傳敎도 두 가지로 기록되었다. 榻前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여 국왕과 신하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의 입시기사에 ‘주상이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불러주었다.[上命書傳敎曰]’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⁹⁶⁾ 반면에 비망기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이나 승전색을 통해 전해주었기 때문에 입시기사가 기록된 부분이 아니라, 승정원이 출납한 각종 문서들을 기록한 부분에 ‘傳于○○○曰’이나 ‘備忘記曰’ 등으로 기록하였다.⁹⁷⁾

91)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5월 12일, “登筵諸臣, 面承耳聆, 退而奉行, 謂之下敎。 又或承傳色奉口傳下敎而出, 則六承旨廳坐, 以文傳書, 書以承傳色口傳下敎, 書頒朝紙, 其體段, 亦與傳敎同。”

92) 이근호, 「조선 후기 口傳下敎의 下達 體系와 개편」, 『고문서연구』 제5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9, 213~215쪽; 이강욱, 『『승정원일기』 입시 기사와 대화 내용의 문서화』, 『고문서연구』 제57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14~20쪽.

93) 『승정원일기』 숙종 즉위년 11월 1일, “以承傳色口傳下敎曰: ‘當初附托他論, 罪首相, 今此行狀中, 以失對, 罪首相云者, 誠甚未妥, 使之改入。’”; 『승정원일기』 숙종 5년 7월 14일, “以司謁口傳下敎曰: ‘李后平拿鞠傳旨, 速爲捧入。’”;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0월 10일, “乙巳十月初十日巳時, 上御進修堂。藥房入診入侍時, ……行氣香蘇散三貼進服。’事及星州牧使李喜聃, 今姑許遞, 珍島郡守洪禹龜, 給馬發送, 前高山縣監李道顯, 分揀放送。’事, 櫛前下敎。”;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13일, “丁未七月十三日午時, 上御熙政堂。 召對入侍時, ……命恒曰: ‘嘉禮迫近, 儀仗、服物及工役所入, 皆自戶曹差下, 而即今戶曹三堂上, 無一行公之員, 不得舉行。 新除授判書李台佐, 元無可辭之義, 而時在鄉, 尙不趨命, 使之催促上來, 何如?’ 上曰: ‘依爲之。’【櫛前下敎。】”

94)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5월 12일, “承旨於櫛前, 以呼寫之口諭, 承書頒布與或以司謁之傳于各房者, 各該房, 以文字書頒, 謂之傳敎。”

95) 이강욱, 『『승정원일기』 입시 기사와 대화 내용의 문서화』, 4~14쪽. 이근호는 성종대 이래 16세기에 公論政治가 활성화되자 臺諫 등 공론을 주도하는 관원에 대해 국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 대응 수단으로서 중종이 비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이근호, 「조선시대 국왕의 備忘記 연구」,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7쪽.

96)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6월 22일, “上命書傳敎曰: ‘二十八日, 當爲親傳香, 傳香處, 依月初例舉行, 只親傳香, 分付儀曹。’ 又命書之曰: ‘于今神耗, 莫若臨政下問。 今番都目, 當親政, 以二十五日進定。’”;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6일, “上命國榮書傳敎曰: ‘判義禁, 方帶內局許遞, 其代, 口傳備擬, 其令進參推鞠。’ 又命書傳敎曰: ‘江西縣令, 首望金履安爲之。’”

97)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1일, “傳于徐浩修曰: ‘武藝別監輩, 皆是宿衛待令, 所持軍物修補以給事, 分付軍器寺。’ ○ 傳于洪國榮曰: ‘副提調持加減心腎湯入侍。’ ○ 又傳曰: ‘京畿監司入侍。’”; 『승정원일기』 정조 5년 5월 5일, “備忘記曰: ‘命召傳授, 不容遲緩, 平安兵使李昌運移拜御將之代, 即令廟堂擬薦, 待下批, 明日辭朝。’”

3) 敎書

敎書는 국왕이 백성에게 널리 알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어 多衆에게 반포하기 위해 발급하거나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발급하던 문서이다. 따라서 교서는 수취자가 다중이나 개인이나에 따라 다중에게 반포하는 교서와 개인에게 발급하는 교서로 나눌 수 있다.⁹⁸⁾ 多衆에게 내리는 교서로는 국왕이 즉위할 때 전국의 신민에게 반포하던 卽位敎書, 국왕이 王位를 世子에게 물려주면서 반포하던 傳位敎書, 국왕이 世子나 世孫 등의 東宮에게 代理聽政을 시킬 때 내리던 聽政敎書, 世子·世孫·王妃·世子嬪·世孫嬪 등을 책봉할 때 내리던 冊封敎書, 국왕이나 왕비 등에게 尊號를 올릴 때 전국에 반포하던 上號敎書, 국왕이 신하들에게 直言을 구할 때 내리던 求言敎書, 역적을 토벌한 뒤 전국에 반포하던 討逆敎書, 나라에 경사가 있어 赦免令을 내릴 때 반포하던 赦免敎書 등이 있었다. 個人에게 내리는 敎書로는 開國·討逆·反正·戰亂 등 국가적인 사건이 있을 때 공로를 세운 錄勳功臣에게 내리던 錄勳功臣敎書, 각 왕의 재위 기간에 공로가 많았던 신하로 선발되어 宗廟의 해당 국왕 神室에 配享된 宗廟配享功臣에게 내리던 宗廟配享功臣敎書, 儒學의 학문적 수준과 도덕적 수양이 뛰어난 선비로서 文廟에 從祀된 文廟從祀功臣에게 내리던 文廟從祀功臣敎書, 觀察使·留守·地方軍營의 使 등에 제수된 사람에게 발급하던 除授敎書, 국왕이 신하에게 几杖을 하사할 때 발급하던 賜几杖敎書, 국왕이 嘉禮를 행할 때 왕비의 집에 발급하던 嘉禮敎書 등이 있었다.

교서의 문서 형식은 서두·본론·말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서두에는 ‘敎’자와 ‘書’자 사이에 교서의 수취자를 밝혔는데, 다중에게 반포하는 교서는 ‘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처럼 교서를 받을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개인에게 발급하는 교서는 資級·職名·姓名을 기록하였다. 본론은 ‘王若曰’로 시작하여 ‘故茲敎示想宜知悉’로 마무리하였다. 말미에는 年號와 연월일을 기록하고 施命之寶를 찍었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교서는 원본 교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가 많았다. 다만 말미의 연호와 연월일은 생략하고, 국왕을 대신하여 해당 교서를 지은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교서의 말미에 기록하였다.⁹⁹⁾

98) 노인환은 교서를 임명 관련 교서, 褒賞 관련 교서, 儀禮 관련 교서, 中外頒布 관련 교서, 기타 교서로 나누었다. 노인환,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55~195쪽.

99) 『승정원일기』 순조 7년 11월 25일, “敎嘉善大夫公忠道觀察使鄭晩錫書:‘王若曰。方伯乃旬宣之官, 在上惟簡; 湖西即要衝之地, 往汝其欽! ……卿其勉哉! 予且召矣。故茲敎示, 想宜知悉。’知製敎臣李鼎秉製進。”; 『승정원일기』 고종 12년 4월 12일,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王若曰。龍德御天, 寶座升於宸北; 鳳詔御命, 華蓋臨於海東。……於戲! 紫泥十行, 偏荷東漸之教, 青邱八域, 深切北拱之誠。故茲敎示, 想宜知悉。’藝文館提學臣許傳製進。”

4) 諭書

諭書는 세종 25년(1443)에 중앙과 지방에 왕명을 전달하는 용도의 문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지방에 왕명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內傳消息을 諭書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면서 유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⁰⁰⁾ 이처럼 유서는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왕명을 전달할 때 御寶인 諭書之寶를 찍어서 발급하던 국왕의 하달문서였다. 이후로 유서는 국왕이 관원 개인에게 密付를 내려주거나 褒賞할 때 및 多衆에게 訓諭할 때 등에도 사용하였다. 유서의 발급 대상은 敎書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와 다중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¹⁰¹⁾ 개인에게 발급하던 유서로는 국왕이 지방의 관원에게 권유·훈계·당부·명령하는 내용 등으로 발급하던 下諭諭書, 국왕이 지방에 있는 大臣이나 山林 등에게 관리를 별도로 보내 왕명을 전달할 때 발급하던 傳諭諭書, 국왕이 密符를 받는 관원에게 발급하던 密符諭書, 공로가 있는 관원에게 褒賞할 때 발급하던 褒賞諭書 등이 있었다. 다중에게 발급하던 유서로는 국왕이 다중에게 훈계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등으로 발급하던 訓諭諭書가 있었다.

유서의 문서 형식도 서두·본론·말미로 나눌 수 있다. 서두에는 ‘諭’자와 ‘書’자 사이 또는 ‘書’자는 적지 않고 ‘諭’자 아래에 수취자의 자급·직명·성명을 기록하였다. 본론은 ‘王若曰’로 시작하거나 ‘王若曰’을 생략한 채 서술한 뒤 ‘故諭’로 마무리하였다. 말미에는 연호와 연월일을 기록하고 諭書之寶를 찍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수록되어 있는 유서가 많지 않고 수록되어 있는 유서도 혼유유서가 대부분이다.¹⁰²⁾ 정조 이후로는 혼유유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서의 용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하유유서를 대신하여 有旨를 사용하고, 전유유서를 대신하여 諭旨를 사용하며, 혼유유서를 대신하여 綸音을 사용하면서 유서의 용도가 밀부유서와 포상유서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¹⁰³⁾ 밀부유서는 『典律通補』「

100) 김경숙, 「消息의 의미와 文書名」, 『고문서연구』 제25호, 한국고문서학회, 2004, 298~301쪽;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16쪽.

101) 노인환은 유서를 密符 諭書, 褒賞 諭書, 訓諭 諭書, 관원을 부르는 諭書로 나누었다. 노인환, 위의 논문, 26~97쪽.

102)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0월 4일,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王若曰。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壬寅之鏡虎, 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 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 明聽予言, 其各自勉, 同寅協恭, 輔我邦家。故茲敎示, 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승정원일기』 순조 12년 6월 2일, “諭釜津府使柳和源書:‘予惟去年之歉, 西路爲甚, 而釜津一邑, 以濱海斥鹵之地, 遇水旱非常, 倍切艱食之虞。況賊警繹騷, 民情遑急, 耿予一念, 丙枕靡安。凡其賑濟之策、撫恤之政, 與予分此憂者, 其惟良二千石。爾能不負, 求牧之義, 寔體如傷之仁, 捐廩補賑, 殫力哺飢; 使我殿屎之民, 瘡痍者蘇, 流離者安。繡衣獎之, 道臣褒之, 其第最善, 宜有嘉賞。特賜以表裏一襲, 爾其領受。故諭。’行左承旨金蒼根製進。”

103) 이강옥, 「왕명 전달 문서 諭書의 용도 및 분화」, 『장서각』 제4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別編」〈本朝文字式〉‘諭書式’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었고, 璽書라고도 불렸던 포상유서도 공로를 치하하는 틀에 박힌 내용이었으므로 일일이 『승정원일기』에 수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綸音

綸音은 국왕의 말과 글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 및 국왕이 발급하는 하달문서의 일종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중 윤음의 본래 의미는 일반적인 국왕의 말과 글을 가리킨다. 윤음의 이러한 의미는 『禮記』「緇衣」의 ‘제왕의 말은 처음에는 누에고치실처럼 가느다랗지만 발설되고 나면 나중에는 인끈처럼 굵어지고, 제왕의 말은 처음에는 인끈처럼 가느다랗지만 발설되고 나면 나중에는 널을 끌어당기는 큰 줄처럼 굵어진다.[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紼。]’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綸音’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영조 이전까지는 국왕의 말과 글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던 윤음이 영조 때부터는 국왕의 하달문서 일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윤음은 訓諭諭書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조가 처음 윤음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는 윤음에도 諭書之寶를 찍었는데, 정조가 奎章閣을 설치한 이후로는 윤음에 奎章之寶를 찍도록 하여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하였다.¹⁰⁴⁾

윤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새로운 제도를 정하거나 옛 제도를 개정할 때 내리던 定制綸音, 신하 또는 관사에 훈계를 내리거나 재해를 입은 지역의 백성을 위로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리던 訓諭綸音, 국왕이 監司와 留守 및 守令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도록 힘쓸 것을 훈계하면서 내리던 勸農綸音, 災異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국왕이 신하들에게 直言을 구하면서 내리던 求言綸音 등이 있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윤음 중 권농윤음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¹⁰⁵⁾

6) 諭旨

諭旨는 원래 국왕의 명령 또는 생각을 뜻하는 어휘로,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킨다.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국왕이 大臣과 山林 등에게 별도의 관원을 보내 전달하는 것을 傳諭라고 하였으며, 전유할 때 가지고 간 국왕의 하달문서를 敦諭, 別諭, 聖諭, 諭旨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하달문서는 諭書와는 구별되는 별도

의 문서였으므로, 이를 諭書와 구별할 경우에 가장 포괄적인 어휘로는 諭旨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의 하달문서로서의 諭旨는 국왕이 議政이나 山林을 초빙하기 위해 별도로 관원을 보내 전달하던 문서였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조선 후기의 사료에는 국왕이 議政이나 山林을 초빙하기 위해 별도로 관원을 보내 유서 또는 諭旨를 전달하게 한 기사가 빈번하게 보인다. 이것은 광해군이 의정과 산림을 부를 때 諭書를 작성해서 보내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⁶⁾

諭旨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傳諭諭旨이다. 傳諭란 국왕이 議政과 山林 등 예우해야 할 신하에게 侍從 등을 별도로 보내 국왕의 말과 글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때 신하에게 전달하는 유지를 傳諭諭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유유지는 국왕이 의정과 산림 등에게 시종 등을 별도로 보내 전달하던 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에서는 돈유와 별유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宣讀諭旨이다. 宣讀이란 글을 읽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선독유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발급하는 諭旨가 아니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둔 국왕의 당부 사항을 下直하는 지방 관원에게 읽어주던 諭旨를 가리킨다. 『승정원일기』에는 전유유지가 다수 수록되어 있고, 전유유지를 전달한 관원이 결과를 보고하면서 올린 書啓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¹⁰⁷⁾ 선독유지는 승정원에서 미리 작성해두었다가 지방 관원이 하직할 경우에 읽어주었기 때문에 입시기사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¹⁰⁸⁾ 현재 남아있는 『判付規式』에는 외관직에 제수된 관원에게 읽어주었던 선유와 별유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¹⁰⁹⁾

106) 『광해군일기』 즉위년 4월 24일(경진).

107) 『승정원일기』 정조 2년 6월 10일, “左議政鄭存謙處敦諭曰:‘卿筭再上, 陳情益切, 在予體下之道, 豈不知卿之衷懇! 而顧今國事, 無一可恃。 今之財成輔相者, 實藉卿等, 而卿若解相職, 則在卿遂人子之至願, 而於國事如之何哉! 此, 所以左右思惟不忍捨卿者也。 予不多誥, 卿須體此心, 勿復煩控焉。’ 仍傳曰:‘此敦諭, 左副承旨傳諭于左議政。’”;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2월 15일, “別諭左議政李性源, 傳于洪仁浩曰:‘日前史官之回, 見書啓, 意者埃間造朝。 今又有日而尙稽幡然, 豈勝虛佇之思! 更遣承宣諭予至意, 卿須安心勿辭, 隨承宣造朝, 聽予面諭。’事, 承旨傳諭于左議政, 與之偕入。’”

108) 『승정원일기』 영조 1년 8월 11일, “上曰:‘守令與邊將別諭, 異矣。’ 李箕鎮曰:‘密陽府使、長湍府使, 同爲別諭乎?’ 上曰:‘同爲之。’ 箕鎮讀宣諭曰:‘守令之職, 自有七事, 而近年以來, 連值大侵, 饑饉癘疫, 生靈殆盡。 赴任之後, 專意撫摩, 安集流亡, 期於蘇復, 使民戮力本業, 俾有儲蓄, 法外橫斂, 無或因循, 私行乞簡, 一切禁斷, 朝廷命令之下, 劃即奉行, 以副自上慎簡之意。’ 又讀別諭曰:‘農者, 天下之大本, 雖在常年, 固當申飭勸課。 況此連歲大侵之時, 尤不可不別樣檢飭, <+到任>之後, 常加留意, 躬審田野。 種糧之絕乏者, 料理覓給; 農功之懶惰者, 勸諭警責, 俾得耕耘不愆, 收穫以時。 堤堰、灌溉等事, 亦勿拋棄, 另行修築, 以爲救災蒙利之地事, 竝爲着悉奉行, 無負朝家別諭之意。’ ……上曰:‘邊將別諭, 於前席, 仍爲之可也。’ 箕鎮宣別諭曰:‘邊將之任, 鎮守關防, 管下兵卒常加撫恤, 毋或托公營私, 毋或放軍收布, 防備諸事悉心措置, 以副朝廷差遣之意。’”

109) 『判付規式』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 : //kyudb.snu.ac.kr) 史部-政法類-刑獄-詞訟-刑政一般-判付規式(가람古349.102-P19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http : //archive.hist ory.go.kr) 사료열람-국내-서울-서울시 지역 수집 고서 고

장서각 2020, 103~141쪽.

104) 위의 논문, 134~139쪽.

105)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9월 22일, “諭諸道道臣綸音:‘綸音若曰。 今朝, 卽予誕彌之辰也。 ……民之不飢, 是予之飽, 民之不寒, 亦予之暖, 民之不飢不寒, 是之謂上瑞。 朝將承安於殿宮, 整衣待曙, 先敷十行於卿等。’”; 『승정원일기』 순조 19년 1월 2일, “勸農綸音:‘王若曰。 咨爾! 八路·四都方伯、居留暨列邑守牧之臣, 咸聽予諭。 ……咨爾! 方伯、居留、守牧之臣, 其欽哉!’”

7) 判付

判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처결하거나 답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셋째,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啓字印을 찍어 처결한 것 중에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만을 가리킨다. 판부의 첫째 의미에는 批答을 포함하지만, 둘째 의미에는 批答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판부는 둘째의 의미이다. 이때의 판부에는 본래의 상달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국왕의 재가 과정에서 추가된 계자인, 판부 시기, 상달문서를 入啓한 승지의 職名과 姓,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부는 신하 또는 관사가 올린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啓字印을 찍고 내용을 적었는데,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을 적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를 적기 시작할 때 서두에 ‘奉敎’를 적는 奉敎判付, ‘啓’를 적는 啓判付, ‘落點’을 적는 落點判付가 그것이다.¹¹⁰⁾ 『승정원일기』에서는 奉敎判付와 啓判付는 다수 확인할 수 있으나, 落點判付는 확인하기가 어렵다.¹¹¹⁾

8) 批答

批答은 신민이 올린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글로 답변하는 것 또는 그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批答은 唐나라 때 황제가 신하의 上疏에 대해 답변하던 글을 批 또는 批答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¹¹²⁾ 批答은 上疏와 劄子에 대해 국왕이 답변한 글뿐만 아니라 草記·啓辭·書啓·呈辭 등에 대해 국왕이 답변한 글도 批答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왕이 어떤 상달문서에 대해 내린 批答이나에 따라 批答은 上疏批答, 劄子批答, 呈辭批答, 草記批答, 啓辭批答, 書啓批答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문서-判付規式(자료철 DSE006_14_00K0001), 『喉院笏記』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고서-기타|정치/행정-명령|사부-직관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0) 이강욱, 「조선 후기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국왕의 判付 방식」, 『고문서연구』 제56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5~30쪽.

111) 『승정원일기』 현종 3년 4월 17일, “假注書望:○魚震說、李宇鼎、曹憲卿。”;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12월 4일, “禮曹, ‘今十二月十四日, 行宗廟臘享大祭親傳香, 取稟。’ 奉敎:‘敬依。’”;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9월 1일, “吏曹啓曰:‘粘連。觀此漢城府右尹沈晉賢上疏, 則以爲「新除授判尹具廩, 有從娣妹應避之嫌, 亟令選部遞臣本職, 以存公格。」亦爲臥平所。相避之法, 在下當遞, 似當許遞是白乎矣, 宰臣所帶遞仍當否, 臣曹不敢擅便, 上裁, 何如?’ 啓:‘依回啓施行。’爲良如敎。” 『승정원일기』 현종 3년 4월 17일 기사에서 假注書의 望單子에 기록된 3명의 이름 중 魚震說 앞에 표시된 ‘○’가 낙점을 의미한다.

112) 徐望之, 앞의 책, 20~21쪽. 『殿閣詞林記』 「擬旨」.

리고 批答은 그 글을 상달문서와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느냐 상달문서의 말미에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別紙批答, 후자를 餘紙批答으로 나눌 수 있다.¹¹³⁾ 상소·차자·정사에 대한 批答은 별지비답으로 내렸고, 초기·계사·서계에 대한 批答은 여지비답으로 내렸다.¹¹⁴⁾

별지비답 중 상소에 대한 批答의 본론은 ‘省疏具悉’로 시작하였고, 차자에 대한 批答의 본론은 ‘省劄具悉’로 시작하였다.¹¹⁵⁾ 그리고 상소와 차자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과 자급에 따라 ‘성소구실’과 ‘성차구실’ 앞에 ‘答曰’ 2자를 적거나 적지 않았으며, ‘성차구실’과 ‘성차구실’ 뒤에 ‘卿懇’이나 ‘爾懇’ 2자를 적거나 적지 않았다.¹¹⁶⁾ 呈辭에 대한 批答은 일반적인 批答일 경우에는 서두에 ‘答曰’ 2자를 적고 본론을 간략하게 적었으나, 不允批答의 경우에는 知製敎가 敎書의 형식에 맞추어 짓고 注書가 정서하였으며, 『승정원일기』에는 불윤비답을 지은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말미에 기록하였다.¹¹⁷⁾ 여지비답은 상달문서의 말미에 批答을 적는다는 점에서는 判付와 동일하였지만, 批答을 적을 때 啓字印을 찍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여지비답 중에는 계자판부를 병용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승정원일기』에는 草記, 啓辭, 書啓에 대한 여지비답의 서두를 ‘答曰’로 기록하기도 하고 ‘傳曰’로 기록하기도 하였다.¹¹⁸⁾

113) 심재권은 批答을 不允批答, 依允批答, 無批答으로 나누었다. 노인환은 批答을 신하가 상달한 문서에 대해 국왕이 답하는 批答과 중앙아문에서 상달한 문서에 대해 국왕이 답하는 批答으로 나누었으며, 전자는 다시 不允批答, 批答有旨, 批答諭書, 疏劄批答으로 나누었고 후자는 다시 草記批答, 啓辭批答, 問安批答으로 나누었다. 심재권, 「국왕 문서 ‘批答’의 연구」, 『고문서연구』 제32호, 한국고문서학회, 2008, 72쪽; 노인환, 「조선시대 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고문서연구』 제4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5, 28~29쪽.

114) 이강욱, 「조선 후기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국왕의 判付 방식」, 31~45쪽.

115) 『승정원일기』 숙종 9년 5월 5일, “前參議尹拯上疏, 大概‘臣違命之罪, 在法難赦, 來伏江郊之外, 請蒙鈇鉞之罪。’事, 答曰:‘省疏具悉爾懇。’ 纔諭至意於近侍傳諭之批矣, 復何多詰! 自當面諭於筵席, 安意勿待罪, 從速偕來, 以副至望。’ 仍傳曰:‘遣史官傳諭。’”;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1일, “右議政柳鳳輝劄曰:‘伏以。臣既已祇謝相職, 所兼北漢主管、尚衣院、校書館、惠民署、平市署提調等任, 不可仍帶。伏乞聖明令該曹照例處置焉。’ 答曰:‘省劄具悉卿懇。劄辭, 令該曹稟處。’ 仍傳曰:‘遣史官傳諭。’”

116)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117)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윤5월 29일, “以左議政李性源再度呈辭, 傳于洪秀輔:‘不允批答。’ ‘王若曰。溫諭已宣, 謂退心之可挽; 巽牘申至, 愧淺誠之未孚。須思幡然改之圖, 是豈辭以疾之日! 惟卿楨榦美器, 圭璋令姿, 風範端凝, 將見雅望之矜俗; 智慮綜密, 寔賴宏猷之贊治。自先朝而受知也深, 歷試殆遍; 逮寡躬而枚卜惟吉, 眷遇渥隆。云胡注意方篤之辰, 遽有奉身以退之懇! 天時載屆於敲磨, 雖或榮衛之少偕; 予心政切於倚毗, 豈合擔負之遽釋! 顧茲朝象之靡定, 政須坐而鎮之風; 況值首席之久空, 宜體倚爲重之念。須回丐身之請, 勉卒鞠躬之誠。於戲! 若涉水無津涯, 必待老成之篤棗; 當與國同休戚, 寧容去就之自由! 亟斷來章, 庸副至意。所辭宜不允。 <古→故>茲敎示, 想宜知悉。’ 知製敎臣徐配修製進。”

118) 『승정원일기』 영조 5년 3월 3일, “假注書金宗台書啓曰:‘臣承命馳往于龍山江村領議政李光佐所住處, 傳授命召, 則以爲「命召, 不容一日留在荒村, 而史官, 今至五次臨授, 震惶之極, 罔知所措。嚴命下降, 自底收回, 只得泯伏而敬埃。」云矣, 敢啓。’ 答曰:‘知道。’”;

9) 敎命

敎命은 국왕이 왕비와 후궁, 왕세자·왕세손·왕세제 및 그 嬪 등을 책봉할 때 내리던 임명장이다. 국왕이 관직에 제수할 사람에게 敎旨를 발급하듯이 왕비와 일부 후궁,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손과 왕세손빈, 왕세제와 왕세제빈 등을 책봉하면서 발급하는 국왕의 하달문서가 교명이었다. 교명을 발급할 때에는 玉冊이나 竹冊 등의 冊文도 함께 발급하였다. 교명을 임명장이라고 한다면, 책문은 국왕이 상대의 덕을 칭찬하고 앞으로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訓諭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명을 敎書에 건주고 책문을 諭書에 건주기도 하였다.¹¹⁹⁾

교명은 단순히 종이에 적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으로 織造하고 장식한 敎命軸에 적어서 발급하였으므로 교명을 제작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았다. 교명축이 완성되면 敎命文製述官이 지은 교명문을 교명축에 敎命文書寫官이 옮겨 적었다. 교명축에 교명문을 옮겨 적고 난 뒤에는 施命之寶를 찍어 대내에 보관하였다가 책봉하는 의식을 행하는 날에 대내에서 받들고 나와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 안치해 두었다가 차례가 되면 당사자에게 전해주었다.

나라에 책봉 의식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교명문도 많지 않다. 『승정원일기』에는 정조가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내린 교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명을 지은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말미에 기록하였다.¹²⁰⁾ 순조 이후로도 몇 건의 교명이 더 수록되어 있다.

10) 冊文

冊文은 국왕과 왕비·대비 등에게 尊號를 올릴 때와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옥이나 대나무 등에 새겨서 발급하던 문서를 가리킨다.¹²¹⁾ 책문을 발급할 때에는 당사자의 尊號·諡號·位號 등의 名號를 새긴 寶나 印을 함께 제작하여 발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료 중에는 『고려사』에 책문이 보이기 시작한다.¹²²⁾ 조선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윤5월 29일, “洪文泳, 以備邊司言啓曰: ‘今日賓廳日次, 而左議政李性源呈辭, 右議政蔡濟恭身病, 不得來會云矣, 敢啓.’” 傳曰: ‘知道.’; ○ 洪文泳啓曰: ‘大司憲李垺, 疏批未下, 執義李身晦、掌令高益擎·閔彝顯、持平姜碩龜·李升運俱在外, 監察茶時之意, 敢啓.’” 傳曰: ‘知道.’”

119)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3월 2일.

120)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2월 2일, “王世子敎命文: ‘王若曰. 周儲冊而一日三朝, 黃離元吉; 唐禮冠於中春二月, 朱芾斯煌. ……於戲! 尊聖學而振文教, 自是我家大度; 遵王道而斂箕福, 蓋亦列朝宏謨. 故茲教示, 想宜知悉.’” 大提學洪良浩製進.”

121) 장을연은 ‘冊文은 왕으로 상징되는 왕실의 최고권력자층에 대하여 號를 정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라고 하였다. 장을연, 「朝鮮時代 冊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쪽.

122) 『高麗史』 「世家」 文宗 8년 2월 9일(계묘), 宣宗 4년 5월 16일(정묘)·21일(임신), 毅宗 3년 1월 20일(계묘).

왕조실록에서는 태조가 4대조를 왕으로 追尊하면서 올린 책문이 가장 먼저 보인다.¹²³⁾

책문도 종이에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옥이나 대나무 등에 새겨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명과 마찬가지로 제작하는 데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책문은 冊의 재질에 따라 玉冊, 竹冊, 金冊으로 분류할 수 있다. 玉冊은 국왕과 왕비, 先王과 왕대비 등에게 발급하였고, 竹冊은 왕세자·왕세손 및 그 嬪에게 발급하였으며, 金冊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뒤 황제와 황후 등에게 발급하였다. 책문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발급하던 封冊文, 승하한 국왕과 왕비를 포함하여 국왕과 왕비 및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제작하여 발급하던 尊號冊文, 국왕이나 왕비 등이 승하한 경우에 생전의 덕행과 업적에 걸맞는 諡號를 정해서 올릴 때 발급하던 諡冊文, 국왕과 왕비 등이 승하하였을 때 생전의 덕행과 업적을 서술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지어 발급하던 哀冊文 등이 있다.¹²⁴⁾

책문은 교명과 달리 책봉할 때 이외에 諡號·尊號를 올릴 때에도 발급하였기 때문에 교명에 비해서는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사례가 더 많았으나, 그러한 의식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 『승정원일기』에는 정조가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내린 죽책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죽책문을 지은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말미에 기록하였다.¹²⁵⁾

IV. 맺음말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문서는 신민의 상달문서와 국왕의 하달문서로 대별할 수 있다. 조선시대 신민의 상달문서는 총 15종으로, 그중 啓本, 狀啓, 單子, 別單, 呈辭, 上言, 擊錚原情, 箋文, 致詞 9가지는 문서명만 기록되거나 문서의 요점만 간략하게 기록되었고, 草記, 啓辭, 啓目, 書啓, 上疏, 筭子 6가지는 문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국왕의 하달문서는 총 14종으로, 그중 敎旨, 傳旨, 有旨, 封書 4가지는 문서명만 기록되거나 요점만 간략하게 기록되었고, 下敎, 傳敎, 敎書, 諭書, 綸音, 諭旨, 判付, 批答, 敎命, 冊文 10가지는 문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123) 『태조실록』 1년 11월 6일(계미).

124) 장을연은 책문을 책의 재질에 따라 玉冊, 竹冊, 金冊으로 분류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封冊, 尊號冊, 諡冊, 徽號冊, 哀冊, 祝冊으로 분류하였다. 장을연, 앞의 논문, 61~77쪽.

125)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2월 2일, “王世子竹冊文: ‘維歲次庚申二月甲申朔初二日乙酉, 王若曰. 壽祿無疆, 寅修三加之禮; 宗祧有托, 申鞏萬年之圖. ……遇事則誨, 縱自愧於身教, 順志爲心, 尙克欽哉面命. 故茲教示, 想宜知悉.’” 領議政李秉模製進.”

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군신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의 특징을 나누어보면,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문서의 형식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축약하거나 변형한 것이다. 초기의 서두에 入啓한 승지의 성명을 기록한 점, 계사를 올린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관사의 이름으로 바꾸어 기록하기도 한 점, 상소와 차자의 서두에 오는 투식어를 생략하고 관원의 職名+姓名+上疏/劄子로 바꾸어 기록한 점 등이다. 둘째, 정형화된 문서 및 승정원의 이름으로 발급한 문서는 수록하지 않은 것이다. 단자, 별단, 정사, 전문, 치사, 교지 등은 내용이 정형화된 경우이고, 전지와 有旨는 왕명을 전달하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승정원의 이름으로 발급한 문서였다. 셋째, 문서의 내용을 수록한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에 비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같은 문서라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에는 문서의 내용을 축약하여 기록하였는데, 『승정원일기』에는 투식어나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축약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고 마무리 하려고 한다. 『승정원일기』에는 王世子·王世弟·王世孫 등 東宮이 代理聽政하던 시기에 동궁과 신민이 주고받은 문서도 수록되어 있다.¹²⁶⁾ 동궁이 신민에게 내리던 문서와 신민이 동궁에게 올리던 문서는 문서명 및 일부 어휘를 바꾸어 사용하기만 하고 형식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어 狀啓는 狀達로, 啓辭는 達辭로, 啓目은 申目으로, 書啓는 書達로, 上疏는 上書로, 下敎는 下令으로, 傳敎는 令敎로, 敎書는 令書로, 傳旨는 徽旨로, 批答은 下答으로 바꾸어 불렀다. 上疏의 서두에 적는 ‘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를 上書의 서두에는 ‘誠惶誠恐頓首頓首謹再拜上書于王世子低下’로 바꾸어 적었고, 상소에 대한 批答의 서두에 적는 ‘省疏具悉’을 上書에 대한 下答의 서두에는 ‘覽書具悉’이라고 적었다.

『승정원일기』에는 군신의 문서뿐만 아니라 군신의 대화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군신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신의 모임이 필요하였다. 군신의 모임은 次對, 輪對, 朝參, 常參, 經筵, 入診처럼 정기적인 모임도 있었고, 引見, 請對, 親鞫, 迎勅처럼 비정기적인 모임도 있었다. 이러한 모임에서 국왕과 신하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도 주서에 의해 『승정원일기』에 상세히 수록되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내용을 다른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 및 『일성록』과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군신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 및 대화의 내용으로 『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것은 다른 관찬사료와 비교할 수 없이 양적으로 방대하다. 그만큼 『승정원일기』에는 문서의 내용과 대화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찬사료에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史官의 평, 국왕의 行狀, 신하의 卒記 등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성록』에는 『승정원일기』에 상세히 수록되지 않은 狀啓, 別單, 上言, 擊錚原情 등의 내용이 다수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柳本藝는 『日省錄凡例』에서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지 않고 『일성록』에만 기록된 기사로, 禮曹의 儀註, 道臣의 狀啓, 당사자에게 되돌려준 上疏, 義禁府와 刑曹의 죄수 진술·살인 사건·上言·擊錚原情, 事大와 交隣 등 외교 문서, 使行의 聞見別單 등을 거론하였다.¹²⁷⁾ 반면에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에는 같은 기사라도 축약되어 기록된 경우가 많아 『승정원일기』에 비해 상세한 면에서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26) 조미은은 왕세자문서를 ‘왕세자와 국왕간의 문서 유형’과 ‘왕세자와 신하간의 문서 유형’으로 나눈 뒤 전자는 다시 ‘국왕이 왕세자에게 내리는 문서’와 ‘왕세자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나누었고, 후자는 다시 ‘왕세자가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와 ‘신하가 왕세자에게 올리는 문서’로 나누었다.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목차.

127) 『日省錄凡例』「序」, “如春官之儀註、道臣之狀啓、還給之上疏、金吾秋曹之囚供及殺獄案·上言·鳴錚之啓、事大·交隣文字、使行聞見別單, 則『政院日記』中所不載, 而獨載於『日省錄』, 必書姓名, 採其事實, 入於挾注。筵說, 則事尤秘焉, 注書所記, 閣臣親自刪折以上, 其詳且備, 有如此者。”

참고 문헌

원전 자료

-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三國史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三國遺事』,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日省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經國大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 『續大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 『儒胥必知』,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六典條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 『銀臺便攷』,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 『典律通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 『弘文館志』,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2.
- 未 詳, 『公車類覽』,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柳本藝, 『日省錄凡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判付規式』,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
- 蔡 忱, 『書經集傳』, 학민문화사, 1990.
- 陶宗儀, 『說郛』,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2.
- 廖道南, 『殿閣詞林記』,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2.
- 李 昉 등, 『太平御覽』,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2.
- ### 연구 자료
- 김경숙, 「消息의 의미와 文書名」, 『고문서연구』 제25호, 한국고문서학회, 2004.
- 김병구, 「조선시대 醫官 書啓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56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노인환, 「朝鮮時代 敎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노인환, 「조선시대 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고문서연구』 제4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5.
-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규장각』 제51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명경일,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 徐望之, 『公牘通論』, 檔案出版社, 1988.
- 심재권, 「국왕 문서 ‘批答’의 연구」, 『고문서연구』 제32호, 한국고문서학회, 2008.
- 유지영, 「조선시대 관원의 呈辭와 그 사례」, 『장서각』 제1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4.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제30호, 한국고문서학회, 2007.
-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강욱,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 한국고전번역원, 2009.
- 이강욱,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37호, 한국고문서학회, 2010.
- 이강욱,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제45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 이강욱, 「『日省錄』 別單의 형식 및 분류」, 『민족문화』 제4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 이강욱, 「書啓에 대한 考察」, 『한국문화』 8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 이강욱, 「上疏와 劄子の 형식 및 분류」, 『한국문화』 8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이강욱, 「조선 후기 臣民의 上達文書에 대한 국왕의 判付 방식」, 『고문서연구』 제56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 이강욱, 「『승정원일기』 입시 기사와 대화 내용의 문서화」, 『고문서연구』 제57호, 한국고문서학회, 2020.
- 이강욱, 「왕명 전달 문서 諭書의 용도 및 분화」, 『장서각』 제4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0.
-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臣民의 上達文書-, 은대사랑, 2021.
-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하권-國王의 下達文書-, 은대사랑, 2021.
- 이근호, 「『承政院日記』 報告記錄의 特徵과 情報化 方案」, 『한국사론』 제37호,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이근호, 「조선시대 국왕의 備忘記 연구」, 『고문서연구』 제4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4.
- 이근호, 「『승정원일기』를 활용한 한국학 연구 성과와 향후 전망」,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15년』, 국사편찬위원회, 2015.

이근호, 「조선 후기 口傳下敎의 下達 體系와 개편」, 『고문서연구』 제5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9.

임천환, 「『承政院日記』 王命記錄의 特徵과 情報化 方案」, 『한국사론』 제37호, 국사편찬위원회, 2003.

장을연, 「朝鮮時代 冊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5.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錚 研究-』, 일조각, 1996.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경과와 서비스 현황

김영두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경과와 서비스 현황

김영두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목차

1. 머리말
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사업
3.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내용
4.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서비스 현황
5. 맺음말

1. 머리말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 출납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국왕의 일상과 정치 행위 등을 기록한 업무 일지이자 편년체 역사 기록이다. 『승정원일기』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은 임진왜란 등으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288년간의 기록만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기록의 밀도와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승정원일기』는 국보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를 위한 각종 사료의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1946년 국사관으로 시작하여

1949년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승정원일기』와 관련하여 1960년부터 1977년까지 『승정원일기』를 탈초·영인하여, 141책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승정원일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웹에서 서비스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승정원일기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특히 2015년에 마무리된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¹⁾

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사업

1) 승정원일기 간행사업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간행사업’은 1960~1977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이 141책으로 간행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과 이괄(李适)의 난으로 이전의 일기는 모두 소실되었고, 인조 원년(1623)부터 융희 4년(1910)까지 일기 원본 3,245권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는 유일본의 국보이므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없었고, 그 내용이 난해한 한자 난초(亂草)로 되어 있어 극소수의 전문가 외에는 해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난해함과 희귀성을 해소시켜 모든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이에 재정상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1960년에 승정원일기 간행을 위한 선행 작업을 시도하였다. 즉 승정원일기 원본의 난초(亂草)를 해서(楷書)로 정서하고 교열을 거쳐, 구두점을 찍는 작업도 병행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고(典故)와 초서 그리고 모필(毛筆)에 능한 한학자들을 초빙 또는 선발하여 모두 70인에 달하는 한학자들이 필사 및 교열 작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원본 자체가 결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권의 크기와 분량이 동일치 않고, 또한 글씨체의 굵기가 상이하여 원본 자체를 등사하기 이전에는 총권수를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등사에 있어서는 원본의 순서대로 등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영조시대에

개수한 인조 원년부터 경종 원년까지 99년간의 일기 548권 중에는 단편적 기사를 되는 대로 기록하여 전후의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게다가 또 제본의 부주의로 순서가 바뀌어 문장이 일치되지 않는 것과 숙종시대의 기사가 인조시대 기록이 혼입된 것도 있어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교열작업은 노력과 시간이 배가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책장(冊張)의 순서가 바뀐 것이 확실한 것은 원본의 순서를 무시하고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찾아서 등사하였고 인조시대에 혼입된 숙종시대의 기사는 숙종시대의 일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원본 중에 인명·지명·관명 등을 바로 쓰지 못하고 취사하여 여러 가지로 표시한 것은 가능한 바른 문자로 정정하였다. 더욱이 원본 중에는 해독할 수 없는 초서가 희귀한 인명·지명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원형대로 그려 넣은 후에 엄정한 교정을 가하였다.

이 책은 완간하는데 무려 18년이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필사된 원고가 38만여 매, 소요 예산이 2억여 원이었다. 원래 승정원일기 간행사업은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인 신석호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김규성, 이현종, 윤병석, 신지현의 책임 하에 권태익, 박재원, 김후경이 담당하였다. 또한 등사와 교열에는 김철희, 강두식, 정지상 등의 많은 한학자들이 참여하였다.²⁾

2)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홈페이지에서 사업 소개가 제시되어 있다.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압축적이고 정확한 자료이므로 이 자료를 통해 사업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사업 소개

정보화사업 개요 :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 2015년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196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탈초 영인한 승정원일기 총 141책의 전문을 입력하고, 교정을 거친 후 현대적 문장 부호인 표점을 부가하였으며, 기사별 핵심내용을 요약한 기사제목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화 및 웹서비스 :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승정원일기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그 중 1책~34책(인조 원년 3월~영조 3년 7월)에 대해서는 현대적 문장부호와 인명, 지명, 서명 등 핵심어에 대한 마크업과 기사별 제목까지 부여하였으며, 35책~141책(영조 3년 8월~융희(순종) 4년 8월)은 현대적 문장부호와 인명, 지명, 서명 등 핵심어에 대한 마크업까지만 부가한 내용이다.

1) 국사편찬위원회는 승정원일기 탈초영인본 간행사업과 정보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책자를 간행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77년에 발간한 『승정원일기 간행사업개요』와 2015년에 펴낸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15년(2001-2015)』이 그것이다. 이 글은 주로 이 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2)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국사편찬위원회, 2012) 154~155쪽.

[표 1] 승정원일기 간행사업 사업 현황 (『승정원일기간행사업개요』)

년도	예산(원)	등사매수	간행권수	참여인원	
				등사원	교열원
1960	2,160,000	20,679		15	4
1961	2,834,000	7,092	8권(1~8권)	4	2
1962	3,100,000	5,999	9권(9~17권)	11	4
1963	2,450,000	13,553	6권(18~23권)	11	4
1964	1,380,000	3,678	3권(24~26권)	12	1
1965	1,240,000	4,559	2권(27~28권)	25	5
1966	4,526,000	23,216	5권(29~33권)	38	7
1967	12,880,000	49,647	5권(고순증편1~5권)	33	10
1968	24,200,000	48,317	10권(고순증편6~15권)	52	7
		35,787	10권(34~43권)		
1969	23,874,000	54,332	20권(44~63권)	42	10
1970	24,080,000	41,822	14권(64~77권)	36	6
1971	25,867,000	42,411	12권(78~89권)	32	6
1972	23,134,000	30,862	10권(90~99권)	41	7
1973	11,616,000	등사완료	7권(100~106권)		
1974	8,842,000		6권(107~112권)		
1975	14,355,000		6권(113~118권)		
1976	12,145,000		5권(119~123권)		
1977	13,920,000		3권(124~126권)		
총계	212,603,000	381,954	141권	352	73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승정원일기의 웹서비스는 자료의 방대함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의 본 예산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진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특별히 추가 경정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승정원일기DB)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5년간 약 2,30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5년에는 승정원일기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자료를 웹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웹페이지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개선하고, 검색기능을 향상시키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사용자들이 좀 더 새롭고 편하게 승정원일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연도별 DB구축 입력완료 물량

연도	영인본 책수	기 간	구축 글자수
2000	1-7	인조 원년 3월 ~ 효종 7년 12월	11,631,183
2001	8-17	효종 8년 1월 ~ 숙종 15년 12월	17,053,237
2002	18-28	숙종 16년 1월 ~ 영조 5년 7월	16,564,218
2003	28-37	영조 5년 윤7월 ~ 영조 39년 12월	16,999,360
2003~4추경	38~68		54,498,946
2004	69-72	영조 40년 1월 ~ 영조 46년 5월	7,514,024
2005	73-76	영조 46년 5월 ~ 영조 52년 1월	7,383,089
2006	77-81	영조 52년 2월 ~ 정조 6년 1월	10,709,258
	127	고종 원년 1월 ~ 고종 2년 12월	
2007	82-86	정조 6년 2월 ~ 정조 11년 7월	10,849,492
	128	고종 3년 1월 ~ 고종 5년 8월	
2008	87-96	정조 11년 8월 ~ 순조 즉위년 8월	18,028,986
2009	97-103	순조 즉위년 9월 ~ 순조 9년 6월	14,633,280
	129	고종 5년 9월 ~ 고종 8년 12월	
2010	104-111	순조 9년 7월 ~ 순조 25년 1월	14,763,910
2011	112-117	순조 25년 2월 ~ 헌종 5년 5월	14,633,489
	130-131	고종 9년 정월 ~ 고종 14년 5월	
2012	118-121	헌종 5년 6월 ~ 철종 원년 1월	11,157,657
	132-133	고종 14년 6월 ~ 고종 19년 5월	
2013	122-123	철종 원년 2월 ~ 철종 6년 2월	11,023,128
	134-137	고종 19년 6월 ~ 고종 27년 1월	
2014	124-125	철종 6년 3월 ~ 철종 12년 2월	9,247,917
	138-140	고종 27년 2월 ~ 광무 7년 7월	
2015	126	철종 12년 3월 ~ 철종 14년 12월	3,801,949
	141	광무 7년 8월 ~ 융희 4년 8월	
계	141		250,493,123

유관기관 및 관련자료 연계 :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축된 자료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초서원본이미지와의 일자별 연계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종대 국역본과 기사별 연계와 조선왕조실록과 일자

별 연계, 2007년부터 규장각(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원본이미지와 기사별 연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비변사등록과의 일자별 연계를 추가하였다. 현재 원본 이미지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역문(인조, 영조, 고종 대 일부)은 한국고전번역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고 있다.

3.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내용

1) 구축 범례

❶ 『승정원일기』 온라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기 서비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초서 원본 3,245책과 이를 196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탈초·영인한 탈초본 141책을 기본 데이터로 하고 있다.

❷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원문을 가공·편집하였다.

본래 초서(草書)로 되어 있는 원본을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이를 위해 원본의 세로쓰기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로쓰기로 바꾸었다. ○(동그라미)로 구분된 기사 가운데 더러는 통일성 없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원형을 크게 흠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구현하기로 했다. 날짜별 기사목록 상단에는 좌목을 표시하여 당일 근무자 및 기록자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연호와 연월 순으로 되어 있는 원본의 간지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조선의 왕력(王曆), 서기년도도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날짜별, 기사별로 원본의 면수와 국사편찬위원회 탈초본의 면수도 적어 넣었다. 인명, 지명, 부기 등의 색인을 발췌하여 별도의 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❸ 본 사이트에서는 해당 기사와 연계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계 자료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국역 승정원일기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2) 초서원본이미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3) 실록 및 비변사등록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❹ 본 사이트는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명, 지명 등의 주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특성에 따라 별색 처리를 했다. 같은 크기의 글자로 적혀있지만 본문이 아닌 주석의 성격에 해당하는 글자나 문단은 글자크기도 달리하였다.

❺ 원본의 내용 및 형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교정하되 교정부분은 반드시 교감 부호로 표시해 두었다. 사용된 부호는 교감([]), 탈자(< >), 연문(()), 판독불능(◆) 등 총 4종이다. 교감의 경우 앞에 표시를 더해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한문으로 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식 문장부호(표점)도 부가했다. 사용된 문장부호는 쉼표(.), 마침표(。), 물음표(?), 중간점(•) 등 총 4종이다.

본 서비스는 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니코드(Unicode) 3.1 입력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작업 공정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작업 공정은 크게 입력/교정, 색인어 발췌, 교열/교감, 초서원본대조 교감, 기사제목 작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15년 동안 변함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사업 시작 전에 사업 대상인 『승정원일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 공정에 대한 치밀한 설계를 진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정보화 및 사업에 대한 역량이 증대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사업 초기부터 2007년까지 작업 공정에 ‘표점 및 기사제목’ 공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8년부터 이 공정의 작업은 중단되었다. 기사제목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이용자가 기사의 전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하지만 기사제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사를 읽고 기사의 문서 형식과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했다.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는 높고 비용과 속도에서 다른 공정과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 결국 예정된 일정에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기사제목 작성은 차후 별도의 작업을 기약하기로 하고 중단하였다. 이후 이 단계에서 진행하던 표점과 인명 정보의 대표명칭 부가 작업은 다른 공정에서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초서원본대조 공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는 없었는데, 사업 3년차부터 추가되었다. 따라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서 초서원본대조 공정 단계는 이전에 이미 구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2007년을 기점으로 교열/교감 공정의 저본이 바뀌었다. 애초에 입력/교정, 교열/교감, 색인어 발췌 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탈초·영인본을 사용하고, 초서원본대조 단계에서만 원본을 복사해서 대조해 왔다. 그런데 정초대부터는 원본 자체에 비교적 난초가 적어서 영조 대까지만(영인본 기준으로 77책까지) 초서원본대조를 시행하고, 이후 신규 구축 물량에 대해서는 교열/교감 단계에서부터 원본을 사용하였다.

[표 3]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연도별 투입 인력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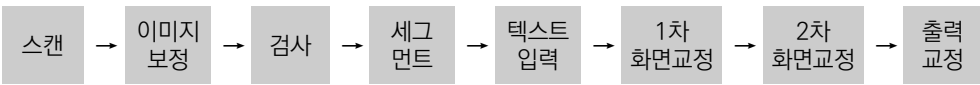
연도	입력	교정	교열교감	색인어발체	초서원본대조	기사제목	웹검수	자문	감리	기관	사업자	합계
2001	20	16	11	-	-	7	-	9	5	12	8	88
2002	38	17	23	-	2	16	-	8	11	4	26	145
2003	11	10	16	-	27	12	2	11	14	3	15	121
2003 추경	27	18	76	52	33	21	1	8	16	4	13	269
2004	18	18	24	11	23	17	1	9	11	4	14	150
2005	10	18	24	9	21	16	1	8	11	6	13	137
2006	27	18	25	12	23	15	1	4	12	6	12	155
2007	19	13	24	10	22	15	1	4	9	8	10	135
2008	22	18	33	18	22	-	1	8	8	6	10	146
2009	20	15	34	16	26	-	1	3	8	6	10	139
2010	28	12	32	16	24	-	2	-	7	6	11	138
2011	29	17	33	16	23	-	1	-	8	6	11	144
2012	21	17	31	16	17	-	1	4	7	6	9	129
2013	24	17	28	17	15	-	1	7	7	6	9	131
2014	31	19	33	17	20	-	1	3	7	7	9	147
2015	24	11	23	12	15	14	1	-	9	7	17	133
소계	369	254	470	222	313	133	16	86	150	97	197	2,307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작업은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작업 대상과 공정이 구분되는데, 1년을 기준으로 작업 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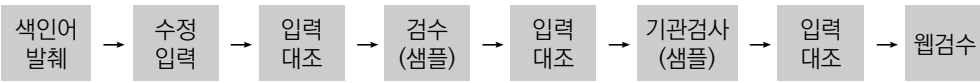
작업 공정은 먼저 신규구축분과 기구축분에 대한 가공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규 구축물량은 아래 세 과정을 거친다.

- 1. 준비/입력(스캔·세그먼트·교정_8단계)
 - 2. 색인어발체(인명·지명·서명 추출_8단계)
 - 3. 교열교감(표점·오자·탈자·연문 가공_9단계)
- 이처럼 완성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모두 25단계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교열교감과 초서원본대조 공정에서는 순도율 99.9%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색인어 발체 공정은 인명, 지명, 서명 등에서 형식적 단어의 발체가 아닌, 문맥 의미상의 내용 추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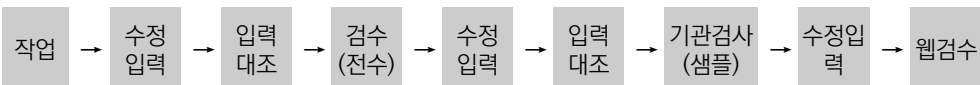
(1) 준비/입력단계 공정



(2) 색인어발체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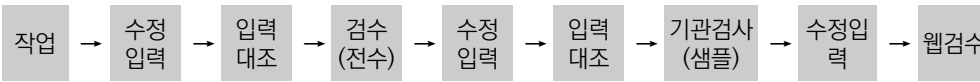


(3) 교열교감 공정



한편, 기구축 물량인 영조대 이전 자료는 이미 이전 연도 작업으로 색인어 발체와 영인본 대조를 마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시기 자료는 해독이 어려운 초서가 많아 원본 대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3년부터 4. 초서원본대조 공정을 수립하였다. 이 공정에는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4) 초서원본대조 공정



앞서 말했다시피 승정원일기 정보화 사업은 사업 초기 각 공정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 사업 담당자들과 참여자들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 및 검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간 단위로 회의를 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매년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여 업무편람(지침편)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문서들과 부속서류 및 산출물도 업무편람(행정편)으로 정리하였다. 해마다 2종류의 업무편람이 간행되었고, 이는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추진된 사업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후에 추진된 유사한 사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5년도 사업의 지침은 현재 승정원일기 웹사이트 승정원마당 자료실에 올라 있어서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작업 공정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작업 공정별 내용

작업 공정	작업 공정 설명	비고
이미지 스캔	승정원일기 원문 입력에 사용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승정원일기 탈초영인본을 이미지 파일로 제작 영인본 1면을 6개 파일로 분할(고종대 자료는 1면을 9개 파일로 분할)	
보정	스캔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원문에 손상이 없도록 중앙정렬, 기울기 보정, 노이즈 제거 작업을 진행	
입력	승정원일기 탈초영인본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그먼트를 하고 유사도 군집화를 통한 일괄 입력 방식으로 원문 입력 이체자는 정자로 바꾸어 입력한다. 방점, 간점, 격자, 결자, 공백 처리	입력지침
교정	화면 교정과 출력 교정으로 단계를 나누어 진행 초서원본과 작업지를 축자 대조하여 누락 및 오류사항 확인(초서원본 기준)	교정지침
XML 변환	입력교정 공정을 완료한 TXT파일에 간략 태그를 삽입한 뒤 XML파일로 변환한다.	
색인어 발체	승정원일기 내의 인명, 지명, 서명, 세주에 태그를 붙인다. (태그는 이칭도 포함하여 붙인다.)	
교열 교감	교정과 색인어 발체를 거친 후, 오자, 탈자, 연문, 판독불능 등의 교감을 하고 표점을 부가하는 작업 초서원본을 기준으로 하여 탈초 영인본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일 단위 정보와 좌목 확인, 결자 점검도 이 단계에서 작업한다. 표점 작업은 심표, 마침표, 물음표, 중간점의 네 가지 부호를 사용하며, 탈초영인본을 기본으로 작업한다. 근무현황, 결자, 개수전거, 부연설명, 개수자, 찬자 등에 대한 태그 작업을 한다.	교열지침
초서원본 대조교감	초서원본과 탈초영인본, 교정지를 축자대조하여 누락 또는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초서원본을 기본으로 한다. 기사 분할 부분 확인, 본명 정보 확인	초서원본 대조지침
기사제목 작성	승정원일기의 기사 중 啓·草記류와 傳敎류 기사에 대한 기사제목을 작성한다. 기분류된 기사와 표준문형을 대조한 뒤 해당 기사에서 핵심어를 추출하여 기사제목을 완성한다.	기사제목 지침
후속 공정	교감자 검증 : 데이터 구축 완료 후 교감의 적절성과 원본의 정확성 재확인 본명정보 부가 : 인명과 서명에 대표 명칭 부가 규장각 초서원본 이미지 일자/기사별 연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일자/기사별 연계 조선왕조실록 일자별 연계 비변사등록 일자별 연계 색인어 발체 누락 검증 : PMS 추출 기능 신출자 변환 기타(부전지 목록, 용어색인, 검색용 사전테이블)	

3) 사업의 성과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한국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규모를 숫자로 평가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7,385,469,000원으로 이 가운데 656,175,000원이 개발 및 장비 구입비로 소요되었다. 15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연인원은 2,305명이며, 이들 중 중복 인원을 뺀 순수 참여자는 523명이었다. 전문 공정 중 10년 이상 참여한 인원도 85명에 달하였다. 출생 연도로 볼 때 가장 연령이 높으셨던 분이 1922년생이었고, 가장 어린 참여자는 1993년생이었다.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승정원일기 원문 자수는 226,495,969자이고, 원문 외에 부가 정보까지 포함하면 총 구축 자수는 250,493,123자였다. 승정원일기는 총 104,032일, 1,792,366건의 기사로 구성되었다. 104,032일은 약 285년에 해당되는 데, 망실 및 누락 일자 등이 있어서 전체 기간인 288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총 42,541,824개의 표점을 사용하였고, 12,463,802개의 태그 정보를 추출하였다. 태그 정보에는 인명, 지명, 서명과 세주 자료를 포함하는데, 좌목 인명까지 포함하면 승정원일기에서 추출한 총 인명은 9,979,343건이다. 승정원일기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오자, 탈자 등이 많았다. 이 사업에서 4개의 교감 부호를 사용하여 오기 등을 바로잡았는데, 총 교감 건수는 183,667건이었다.³⁾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무엇보다도 60~70년대 진행되었던 ‘승정원일기 간행사업’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그때 이루어진 탈초 및 영인본 간행사업이 없었다면 정보화사업은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사업 15년을 진행하면서 승정원일기 원본, 탈초·영인본, 전산입력본에 대한 대조 및 교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탈초·영인본 간행사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검증 작업 또한 함께 진행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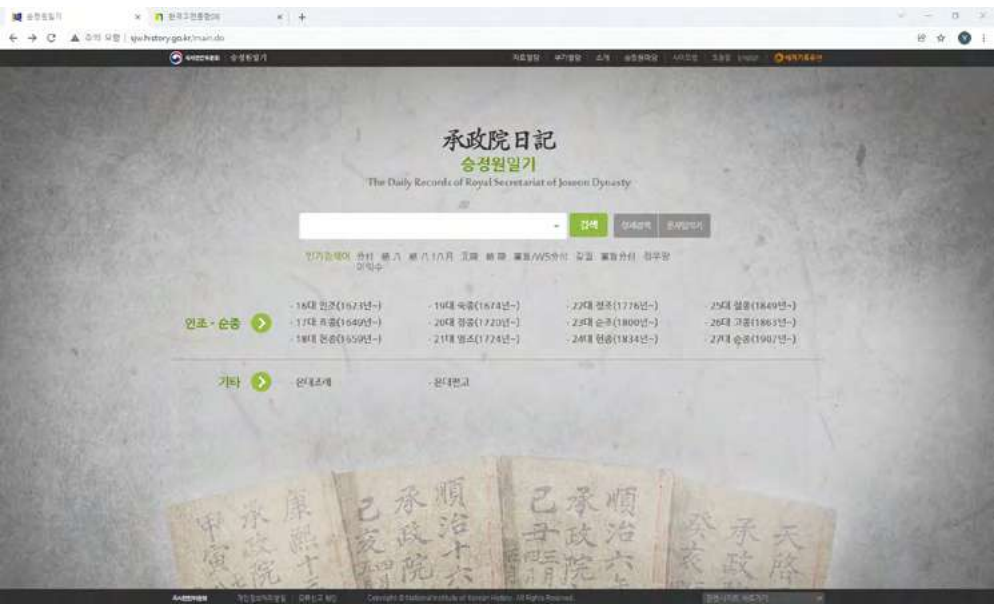
4.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서비스 현황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웹서비스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하위 페이지로 독립해서 서비스되고 있다.(sjw.history.go.kr) 승정원일기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서는 중앙 상단에 검색 창을 두어 원하는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고,

3) 김영민,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사업 경과」,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15년(2001-2015)』 (국사편찬위원회, 2015) 146~147쪽.

하단에 왕대별로 구분하여 원하는 일자의 기사를 찾아서 갈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승정원의 업무 지침과 편람인 은대조례와 은대편고의 원문을 확인할 수도 있다.⁴⁾ 화면 상단 오른쪽에는 자료열람 외에도 부가열람, 소개, 승정원마당 등의 메뉴가 제공되고 있다. 각각의 서비스를 자료열람, 자료검색, 연계, 부가열람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 1]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웹서비스 메인 페이지



1) 자료열람

자료열람은 메인 페이지 상단 자료열람 메뉴나 중앙 하단의 왕대별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다. 각 왕대의 해당 월을 클릭하면 해당 월의 첫째 날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것이 일자별 열람 페이지이다. 일자별 열람 페이지에는 해당 일의 기사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별 열람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처럼 승정원일기 자료열람 페이지는 크게 일자별 열람과 기사별 열람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자별 열람 페이지를 보면 화면 왼쪽의 화살표를 이용해 바로가기를 여닫을 수 있다. 바로가기는 왕대별 열람과 책별 열람 두 종류의 트리 구조를 통해 가고 싶은 날짜의 일자별 열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바로가기 책별 열람

4) 은대조례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은 규장각 소장 원본 책수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화면 오른쪽에는 전날과 다음날로 이동하는 이동 버튼이 있는데 각 날짜별 3개 기사는 기사별 열람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다. 또한 규장각 소장 원문 이미지, 국편 제공 조선왕조실록 및 비변사등록(원문/국역),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승정원일기 번역과 연계하는 버튼이 있다. 다만 각 날짜별로 연계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날짜 열람 페이지에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기사별 열람 페이지를 보면 기사 제목 아래 본문이 제시되어 있다. 기사에 따라서는 제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사제목 부분이 비어 있다. 기사별 열람 페이지 오른쪽에는 이전 이후 기사 및 일자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고, 화면 확대 및 축소, 인쇄, 기사ID 및 URL 복사, 기사 본문 색상 on/off, 오류신고 버튼이 있다. 기사ID 및 URL 복사 버튼은 해당 기사를 인용할 때 전거를 달기 위해 이용하고 기사 본문 색상 끄고 켜기는 컬러 인쇄를 원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오류신고는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신고하는 화면으로 연결하는데, 오류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면 승정원마당 오류신고 게시판에 등록이 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열람 페이지를 『승정원일기』 원본의 정보와 비교해보자. 현전하는 조선 후기 원본 『승정원일기』를 보면, 하루 단위로 정리되어 있고 한 달에 한 책 또는 두 책으로 묶여 있다. 매일의 일기는 크게 일일기(日日記)와 입시일기(入侍日記)로 나뉜다. 일일기는 일자와 날씨, 승지와 주서의 좌목을 기재한 부분과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베껴 놓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일기의 첫 줄은 연호, 연대, 연대간지, 월, 일, 일간지, 날씨로 구성된다. 연호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둘째 줄부터 좌목이 시작되는데, 좌목은 행을 상하로 나누어 상행에는 승지, 하행에는 주서의 근무 여부를 기록한다. 일일기의 뒷부분은 국왕의 위치와 경연, 상참의 시행 여부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뒤에 실재 출납 문서를 등재한 부분이 나온다.

입시일기는 연석(筵席)이 있을 때 주서가 입시하여 작성한 기록이다. 일일기와 다른 면에서 새로 시작한다. 날짜, 시간, 장소, 연석의 성격을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행동과 대화인 ‘연설(筵說)’을 서술한다. 입시일기는 같은 날에 연석이 여러 번 있었을 때에도 각각 다른 지면에 구분하여 기재된다. 그것은 각각의 연설을 서술하는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⁵⁾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일자별 열람 페이지의 일자 표기를 원본의 일자 표기와 비교하면 연대 간지가 빠져 있고 대신 원본 및 탈초본 책수, 국왕 재위년, 서기년이

5) 명경일, 『조선후기 승정원일기의 구성과 편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71~73쪽. 여기서 설명하는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일상 업무 중에 정상적으로 생산된 승정원일기를 말한다. 승정원일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수본은 구성이 다르다.

추가되어 있다. 날씨는 좌목 바로 위에 붉은 글씨로 따로 표시되어 있다. 좌기는 원본이 승지와 주서를 상하로 구분하여 2단으로 표시한 것과 달리 한 줄로 표시되어 있다. 좌목 아래는 일일기의 시작인 국왕의 위치와 경연, 상참의 시행 여부와 실재 출납 문서, 그리고 입시일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권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사로 표현하고 있다. 입시일기는 앞부분 일일기와 달리 새로운 면에서 시작하고 형식도 달리 갖추고 있는데도 일자별 열람 페이지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2) 검색

검색은 첫 화면의 검색창 외에 상세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상세검색은 인명, 지명, 서명, 세주, 기사제목, 좌목, 날씨로 한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 인명, 지명 등은 모두 색인어 발췌 공정을 거쳐 태깅이 되어 있으므로 검색엔진이 구별할 수 있다. 예컨대 지명에서 ‘정의(旌義)’나 ‘대정(大靜)’을 검색하면 지명 태깅이 되어 있는 ‘정의’와 ‘대정’만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므로,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 기간의 제한해서 검색할 수도 있는데, 왕대, 서기, 중국연호, 책수 단위로 한정할 수 있다. 검색 결과를 좁히기 위해 검색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검색 조건은 인명, 지명 등 상세검색 대상 사이에서도 한정할 수 있다. 검색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도움말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원하는 검색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 문자입력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인명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벽자(僻字)여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입력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 문자입력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신출한자 입력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모든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표 5] 상세검색 도움말

기능	연산자	사용자 질의어	검색방법
AND 연산	&	영의정 & 도승지	'영의정'과 '도승지'가 동시에 포함된 자료를 찾아줍니다.
OR 연산		영의정 도승지	'영의정' 또는 '도승지'가 포함된 자료를 찾아 줍니다.
NOT 연산	!	영의정 ! 도승지	'영의정'이 나온 후 '도승지'가 나오지 않는 자료를 찾아 줍니다.
NEAR 연산	/N 또는 /n	영의정 /n3 도승지	영의정과 '도승지'가 순서와 상관없이 3 단어 이내에 인접한 자료를 찾아 줍니다.
WITHIN 연산	/W 또는 /w	영의정 /w3 도승지	'영의정'과 '도승지'가 순차적으로 3단어 이내에 인접한 자료를 찾아 줍니다.

3) 연계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웹서비스는 규장각 제공 원본 이미지,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승정원일기 국역,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비변사등록 원본 및 번역본, 조선왕조실록과 연계된다. 서울대 규장각은 소장 고서, 고문서 등의 원문검색서비스(<http://kyudb.snu.ac.kr/>)를 제공하고 있는데 승정원일기는 하위 편년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규장각은 소장 『승정원일기』 전체에 대해 원문 이미지 DB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일자별 열람 페이지에서는 규장각 해당 일자 이미지의 첫 번째 페이지, 곧 일자와 좌목이 있는 페이지와 연계된다. 또한 기사별 열람 페이지에서는 해당 기사의 시작 부분이 포함된 페이지와 연계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1993년부터 『승정원일기』의 번역을 시작했다. 번역은 고종대 『승정원일기』부터 시작했는데, 조선왕조실록 번역 이후 일제가 편찬한 고·순종실록의 번역 대신 같은 시대 『승정원일기』 번역에 착수했던 것이다. 순종대 『승정원일기』는 같은 시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추진했는데 1994년 7권으로 완간되었다. 고종대 『승정원일기』 번역은 2004년 210권으로 완간되었다. 그 사이 번역원은 2002년부터 인조대 『승정원일기』 번역에 착수하여 2010년 76권 간행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 2007년부터는 영조대 『승정원일기』 번역이 시작되어 2012년까지 40권이 간행되었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인조, 영조, 고·순종대 승정원일기가 서비스되고 있다.(<http://db.itkc.or.kr>) 인조대와 고·순종대는 전체가 번역되어 서비스되고 있고, 영조대는 영조 13년 8월 23일까지 번역이 제공되고 있다.

[표 6]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 현황(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 국역 소개)

구분	왕대	번역계획	발간실적	DB구축	구축률	비고
번역서	인조	76책	76책	76책	100%	
	효종	33책	-	-	-	
	현종	81책	-	-	-	
	숙종	190책	-	-	-	
	경종	33책	-	-	-	
	영조	745책	83책	69책	83%	
	정조	250책	-	-	-	
	순조	243책	-	-	-	
	헌종	70책	-	-	-	
	철종	69책	-	-	-	
	고종	210책	210책	210책	100%	
	순종	6책	6책	6책	100%	
교감표점서	인조	-	41책	23책	56%	서비스 중단
	영조	-	6책	-	-	서비스 중단
계		2,006책	375책	361책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웹서비스에서는 현재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되고 있는 승정원일기 국역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일자별 열람 및 기사별 열람 페이지에서 각각 국역 웹서비스의 일자별 열람 및 기사별 열람 화면과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데이터베이스 중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을 승정원일기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생산된 자료이지만, 동시대의 역사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또한 두 자료 모두 일자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를 기준으로 세 자료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DB는 일자별 기사 목록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승정원일기 웹서비스의 일자별 열람 페이지와 연계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 DB는 원본 및 번역본의 두 종류로 구축되어 있는데, 일자별로 1개 이상의 기사를 가지고 있고 승정원일기에서 기사 단위로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승정원일기 일자별 열람 페이지에서 해당일의 비변사등록 기사목록을 선택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비변사등록은 왕대 및 연도별로 빠진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일자별 열람 페이지의 연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참고로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가 담고 있는 연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 수록 연대 비교

왕대	비변사등록 수록 연대		승정원일기 수록 연대
광해군	8~10년		
인조	2년	12, 16, 19~20, 22~27년	3~11, 13~15, 17~18, 21년
효종		즉위~1, 3~5, 7~8년	2, 6, 9~10년
현종		1~6, 8~12년	즉위, 7, 13~15년
숙종	21년	1~5, 8~20, 25~26, 28~34, 36~46년	즉위, 6~7, 22~24, 27, 35년
경종		즉위, 3~4년	1~2년
영조		즉위~19, 21~23, 25~47, 50~51년	20, 24, 48~49, 52년
정조		1~6, 8, 10~18, 20~24년	즉위, 7, 9, 19년
순조		즉위~7, 9~14, 16~20, 22~24년	8, 15, 21년
헌종		1~7, 9~15년	즉위, 8년
철종		즉위~13년	14년
고종		즉위, 3, 7~10, 12~29년	1~2, 4~6, 11, 30~44년
순종			1~4년

4) 부가열람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웹서비스 첫 화면의 상단 오른쪽에는 부가열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고 이동하면 인명 열람, 지명 열람, 서명 열람, 개수자 열람, 개수전거 열람, 찬자 열람, 한의학용어 열람의 세부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부가열람은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추진 공정에 포함된 데이터 구조화 및 색인어 발췌 작업의 성과물이다. 데이터 구조 정보 및 발췌된 색인어는 XML 파일을 작성할 때 태깅으로 표시된다. 이는 기사별 열람 페이지에서 별색 처리에 활용되고 이후 모두 추출하여 가공한 다음 부가열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표 8] 승정원일기 부가열람별 항목수

부가열람 항목	항목 수
인명 열람	70,263
지명 열람	9,137
서명 열람	4,223
개수자 열람	180
개수전거 열람	508
찬자 열람	1,290
한의학 용어 열람	1,351

그 가운데 인명과 서명은 『승정원일기』에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대표명칭을 정하고 해당 인명이나 서명이 이칭으로 등장하는 경우 대표명칭을 부가하였다. 그 결과 인명 열람과 서명 열람에서는 대표명칭과 관련명칭을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개수자 및 개수전거 열람은 『승정원일기』의 개수(改修)와 관련된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이 설치된 조선 초기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인조 대부터이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후대에 새롭게 작성된 개수본이다. 승정원일기 전체 3,243책 중 원본은 72.5%인 2,352책이고 전체의 27.5%인 891책이 개수본이다.

사실 조선시대 『승정원일기』는 여러 차례 개수를 거듭하였다.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탈 때 모두 소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작성된 『승정원일기』는 인조 2년 이괄의 난 때 또다시 불탔다. 난을 진압한 이후 광해군에서 인조 2년에 걸친 『승정원일기』는 보수 작업을 거쳤고 인조 2년 이후로 『승정원일기』가 다시 작성되어 보존되었다. 그런데 영조 20년 10월 승정원의 화재로 경종 원년까지의 『승정원일기』가 다시 불타고 말았다. 영조는 22년 일기청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원을 배치하여 『승정원일기』의 대대적인 개수를 추진하여 23년 11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때 선조에서 광해군까지는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복구를 못 하였고, 인조 원년(1623)에서 경종 원년(1721)까지 99년간의 일기를 개수하였다. 이때 애초에 1,796책에 이르던 이 시기의 『승정원일기』는 548책으로 개수되었다. 그 뒤 고종 25년(1888)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철종 2년 정월부터 고종 25년 2월 까지 37년분 480권이 화재에 노출되었다. 그 중 100여 권은 구출하였지만 361권은 소실되고 말았다. 이때의 『승정원일기』는 『비변사등록』, 『일성록』, 각사등록, 조보 등을 참조하여 개수하였다.

[표 9] 승정원일기 현존본의 구성(원본과 개수본) (신승운, 2008, 56쪽)

왕대	재위기간	원본책수	개수본책수	계	비고
인조	27년(1623.3.~1649.5.)	0	105	105	
효종	10년(1649.5.~1659.5.)	0	51	51	
현종	15년(1659.5.~1674.8.)	0	85	85	
숙종	46년(1674.8.~1720.6.)	3	279	282	
경종	4년(1720.6.~1724.8.)	37	12	49	
영조	52년(1724.8.~1776.3.)	806	0	806	
정조	24년(1776.3.~1800.6.)	445	0	445	
순조	34년(1800.6.~1834.11.)	473	0	473	
헌종	15년(1834.11.~1849.6.)	191	0	191	
철종	14년(1849.6.~1863.12.)	56	129	185	
고종	31년(1863.12.~1894.6.)	143	230	373	
	13년(1894.7.~1907.6.)	165	0	165	승선원, 궁내부, 비서관, 비서원, 규장각으로 명칭변경
순종	4년(1907.7.~1910.8.)	33	0	33	
계	288년	2,352 (72.5%)	891 (27.5%)	3,243	

개수된 『승정원일기』에는 타고 남은 부분을 그대로 존치한 신여(燼餘)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 부분을 개수 당시에는 관련 자료와 대조를 통해서 보충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승정원일기』를 원래대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나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실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고 남은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에서도 이견이 많아 결정이 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일부가 소실된 부분까지도 조보와 각사등

록으로 새롭게 개수하고, 타고 남은 부분은 신여로 처리하여 말미에 첨부하는 고식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개수본은 이중적 구성을 갖게 되었다.⁶⁾ 신여 부분의 결자 현황 등 현존 승정원일기의 훼손 부분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 승정원일기 결자 등 현황

왕대	도삭 (刀削)	묵삭 (墨削)	결 (缺)	자결 (字缺)	행결 (行缺)	장결 (張缺)	후결 (朽缺)	기타 결	합계
인조	0	0	15,563	29,829	3,528	11	35	506	49,472
효종	0	0	3,622	8,585	1,073	13	0	76	13,369
현종	0	0	12,218	17,740	2,009	12	39	390	32,408
숙종	0	0	15,529	24,330	5,213	19	2	657	45,750
경종	2	0	304	893	56	1	0	19	1,275
영조	484	0	180	207	21	2	644	39	1,577
정조	2,343	6	27	108	9	1	1	9	2,504
순조	1,545	0	10	40	5	0	1	0	1,601
헌종	511	0	2	6	1	0	0	0	520
철종	3	0	690	708	2	0	0	70	1,473
고종	10	0	2,940	2,980	46	0	0	122	6,098
순종	0	0	0	0	0	0	0	0	0
합계	4,898	6	51,085	85,426	11,907	59	722	1,888	156,0047

묵삭 : 묵삭, 도묵(塗墨) 등
결 : 단순 결로 표현
자결 : 1행 미만
행결 : 1행~1장 미만
장결 : 1장 이상
후결 : 오염, 부란(腐爛), 서파(鼠破) 등
기타결 : 차본결(筴本缺), 비답결(批答缺), 사관결(史官缺), 원소결(原疏缺) 등

개수본은 개수된 기사의 전거를 기사 끝에 세주로 제시하고 각권의 끝에 일기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었다. 부가열람의 개수자 열람과 개수전거 열람은 이것을 모아서 목록으로 제시한 것이다.

찬자열람은 승정원일기 기사 끝에 보이는 지제교(知製敎)의 제진(製進) 기록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국왕이 내리는 교서는 ‘王若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

6) 신승운, 「승정원일기의 번역과 정본화 문제」, 『민족문화』31, 2008. 59쪽

체로 문신이 제진하여 왕의 열람을 거친 후 내리게 된다.⁷⁾ 찬자열람은 교서를 제진한 지제교의 명단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용어 열람이 있다. 승정원일기는 임금의 동정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임금의 건강이나 환후를 자세히 기록해 두었고 임금의 병에 대한 진단이 어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⁸⁾ 이에 따라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의사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⁹⁾ 한의학용어 열람은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한의학용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특정한 한의학 용어가 승정원일기에 얼마나 등장하는지 한의학용어 열람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승정원일기 웹서비스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이 시작되었던 2000년은 한국학 자료의 정보화사업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승정원일기에 대한 연구도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15년간의 노력 끝에 2015년 본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이 완료되고 6년이 흘렀다. 2020년 기준으로 승정원일기 웹페이지의 방문수는 1,104,634건, 페이지뷰수는 37,554,671건이다. 2014년 새로운 승정원일기 홈페이지가 개통된 이후 승정원마당의 오류신고 게시판에는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총 881건의 오류신고가 올라와 있다. 웹서비스의 장점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교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승정원일기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후속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류신고 등을 통한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참고 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간행사업개요』, (국사편찬위원회, 1977)
정만조 외, 『한국사론37: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방안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03)
정만조 외, 『승정원일기 번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연구보고서, 201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국사편찬위원회, 201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15년(2001-2015)』 (국사편찬위원회, 2015)

- 정만조,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한국학논총』24, 2001.
서정문, 「승정원일기 국역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24, 2001.
이근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31, 2004.
오향녕, 「조선후기 승정원일기개수 연구」, 『태동고전연구』22, 2006.
강성득, 「전거를 통해 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의 성격」, 『사학연구』88, 2007.
신승운, 「승정원일기의 번역과 정본화 문제」, 『민족문화』31, 2008.
이강욱, 「승정원일기 입시 기사와 대화 내용의 문서화」, 『고문서연구』57, 2020.
명경일, 『조선후기 승정원일기의 구성과 편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7) 임천환, 「승정원일기 왕명기록의 특징과 정보화 방안」, 『한국사론』37, 2003. 109쪽.

8) 정만조,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한국사론』37, 2003. 33쪽.

9) 이근호, 「승정원일기를 활용한 한국학 연구 성과와 향후 전망」,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15년(2001-2015)』 (국사편찬위원회, 2015) 233~239쪽.

2021 제주학연구센터 학술세미나

『승정원일기』, 제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발 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시 동광로 51, 3층
064-726-5623

제 작

디자인이야기
제주시 아연로 534-12 2층
064-753-1023

비매품

*이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